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제24차 위원회 -

2025. 3. 18.



제24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1. 개요

- 일 시 : '25. 03. 18.(화), 14시~17시
- 장 소 : aT센터 창조룸 I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 참석대상 : 위원장, 본위원, 언론사, 사무국 직원 등 70여명
- 심의 및 보고안건
 - (심의) ①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 체계 개선(안), ②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 ③전통식품 품질인증 개선방안, ④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 서비스 민간 참여 확대방안, ⑤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
 - (보고) ①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②2025년 농어업위 주요업무계획

2. 세부 일정(안)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 안내 및 국민의례	
14:05~14:15 (10')	○ 참석자 소개 및 성원보고	총괄기획팀장
14:15~14:20 (5')	○ 전차 회의 결과 보고	
14:20~14:25 (5')	○ 위원장 인사말씀 및 개회선언	위원장
14:25~14:50 (25')	○ 주제발표(침단식품산업 및 <가칭>바이오 펩' 특화전략)	이상훈 자문위원
14:50~16:50 (120')	○ 안전 심의·의결 7건	분과및특위장
16:50~17:00 (10')	○ 기타 사항 논의 및 폐회 - 논의 정리, 차기 본회의 일정 등	위원장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	태	평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최	상	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	미	령
	해양수산부장관	강	도	형
	국무조정실장	방	기	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	유	경
	농협중앙회장	강	호	동
	산림조합중앙회장	최	창	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최	홍	식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	승	호
	前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이	숙	원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노	만	호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김	태	훈
	한국수산회 회장	정	영	훈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안	창	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박	정	희
	前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	김	기	명
	前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	박	다	정
	건국대 상허생명과학대학 학장	김	민	경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	용	하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김	종	덕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김	창	길
	전남대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	김	태	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	한	호
	前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류	방	란
	보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문	병	완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우	수	영
	서울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	이	기	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장	판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한	두	봉

목 차

○ 전 차 회의 결과 보고 1

<주제 발표>

○ 첨단식품산업 및 <가칭> ‘바이오 팜’ 특화전략 .. 5

<심의 안건>

○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 17

○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 .. 41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 75

○ 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방안 103

○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 131

<보고 안건>

○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141

○ 2025년 농어업위 주요업무계획 157

제 24 차 위 원 회

**전 차 회의
결과 보고**

회의명	제23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관기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일시	2024년 12월 18일(수) 14:00 ~ 17:00
개최방식	서울 중구 을지로 16,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 / 대면회의
참석명단	위원장 : 재직 1명, <u>참석 1명</u> 당연직위원 : 재직 5명, <u>참석 2명</u> 위촉직위원 : 재직 24명, <u>참석 19명</u> (참고) 참석자 명단

진행순서

1. 전 차 회의 결과 보고(서면)
2. 농어업위 위원장 표창장 수여식
3. 특별 주제 발표("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방안")
4. 안건 심의 및 보고
5. 폐회

상정안건

1. (심의)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
2. (심의)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
3. (심의)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4. (심의) 수입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
5. (보고) 농업정책 고도화를 위한 농업소득정보 체계 구축 방안
6. (보고) 대한민국 축산업 생산성 혁신사례 선정
7. (보고) 농림해양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8. (보고) 2024년 농어업위 규제정비 요청과제

< 결정사항 >

1. (심의)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 : **원안 의결**
2. (심의)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 : **원안 의결**
3. (심의)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 **원안 의결**
4. (심의)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 : **수정 의결**
5. (보고) 농업정책 고도화를 위한 농업소득정보 체계 구축 방안 : **원안 접수**
6. (보고) 대한민국 축산업 생산성 혁신사례 선정 : **원안 접수**
7. (보고) 농림해양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 **원안 접수**
8. (보고) 2024년 농어업위 규제정비 요청과제 : **원안 접수**

제 24 차 위 원 회

주 제 발 표

첨단식품산업 및

〈가칭〉 ‘바이오 팍’ 특화전략

바이오경제 특별위원회

첨단식품산업 및 가칭 바이오팜 특화전략

2025. 03. 18.

바이오경제 특별위원회

이상훈 자문위원

(한국식품연구원, UST)



대통령소속
농어임·농어촌특별위원회

CONTENTS

01

바이오경제 육성의 필요성

02

농축수산분야 바이오파운드리:
바이오팜

03

농축수산 바이오팜 정의 및 범위

04

농축수산 바이오팜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1

1. 바이오경제 육성의 필요성

글로벌 메가트렌드 및 주요미래기술



1. 바이오경제 육성의 필요성

농축수산분야 현안과 바이오경제

- 1. 기후 변화**
 - 이상기후(가뭄, 홍수, 폭염, 한파 등)로 인해 생산량 감소
 -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어장 변화
 -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지 이동 및 병충해 증가
- 2. 환경 오염**
 - 농약 및 화학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 축산업의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 어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 오염(폐어구, 미세플라스틱 등)
- 3. 질병 및 전염병 확산**
 - 직물 병해충 증가(예: 바밀구, 흰가루병 등)
 - 가축 전염병(구제역, AI, ASF 등)
 - 어류 질병(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등)
- 4. 생산 비용 증가**
 - 사료, 비료, 농기계 가격 상승
 -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
 -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 5.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
 - 젊은 층의 농어촌 이탈
 - 농·축·수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 상승
 - 인력난으로 인해 생산량 감소 및 운영 비용 증가
- 6. 자원 고갈 문제**
 - 농지 감소 및 토양 황폐화
 - 어족 자원의 남획 및 감소
 - 가축 사육을 위한 사료 작물의 과도한 경작
- 7. 유통 및 가격 변동성**
 - 유통 구조의 복잡성으로 생산자 수익 감소
 - 국제 곡물 및 수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 생산 과잉 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폭락
- 8. 국제 무역 및 시장 경쟁**
 - 낮은 외국산 농·축·수산물과의 경쟁 심화
 -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수입 개방 확대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증가
- 9. 정부 규제 및 정책 변화**
 - 환경 보호 및 동물 복지 규제로 인한 운영 부담 증가
 - 농·축·수산업 보조금 및 지원 정책의 불확실성
 -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 도입 요구 증가
- 10. 소비 트렌드 변화 및 대체 식품 증가**
 - 건강 및 친환경, 고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확산
 - 배양육, 식물성 대체육, 해조류 기반 식품 부상
 - 전통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바이오경제 중요성 증대



1. 바이오경제 육성의 필요성

바이오경제의 정의

바이오 경제(Bioeconomy)는 생명과학기술(Biotechnology)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동을 의미함. 생물학적 자원(예: 식물, 동물, 미생물 등)과 생명과학 연구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

- **바이오매스 기반 경제:** 화석 연료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바이오매스(식물, 동물, 미생물 등) 및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경제 모델을 지향함.
- **지속가능성:** 기후 변화 대응, 환경 보호, 자원 재생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이면서 지속가능을 강조
- **기술 융합:** 생명공학(BT)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인공지능(AI) 등과 결합하여 혁신을 창출
- **적용분야의 다양성:** 바이오연료, 바이오의약품(백신, 단백질 치료제 등), 농업, 축산업, 수산업, 바이오 소재(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 섬유 등)

새로운 혁신 성장동력

• 세계 바이오경제 年 10% 내외 성장

• '30년 반도체산업 규모의 2~3배

바이오 2~4도 분야

기후변화, 질병, 식량난 해결 솔루션

• 바이오 기반 탈탄소 제품 부상

• 질병 및 식량난 극복 대안

바이오경제 주도권 경쟁 본격화

-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허브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22)
- EU: '바이오경제 전략, 수평' (18)
- 일본: '바이오 전략 2019' (19.6)
- 중국: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 (22)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산업통상자원부, '23)

〈 그린바이오 허브 중점 추진계획(안) 〉

분야	거점	주요 기능
①종자	K-Seed valley (전북 김제)	• 종자기업의 체중디지털육종 가속 검증 기반 조성 * 기업 응용 센터(김제) 등 차세대 등 유산 구역(23-26, 128억원)
②동물용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 센터 (전북 익산)	• 효능안전성 평가 제품생산 및 국제 컨퍼런스 등 지원 *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 센터 구역(20-23, 250억원)
③미생물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동 (전북 정읍, 기구읍 운영 중)	• 바이오 농약비료사료첨가제 등 실증·해외진출 지원
④곤충	곤충산업 거점단지 (경북 예천 등)	• 스마트 사육시설 소재 생산 시제품 등 지원 * 곤충거점단지 구역(22-24, 200억원, 23년 1개소 추가공모 예정)
⑤천연물	천연물소재 허브 (1개소 공모 예정)	• 의약품·기능성식품 등 용도의 소재화 지원 * 천연물 소재 허브 구역(23-27, 300억원)
⑥식품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북 익산 기구읍 운영 중)	• 식품소재 기능성평가 소재 판로마케팅 등 상품화 지원

그린바이오 육성법 중점추진분야 (25년 시행)

1. 바이오경제 육성의 필요성

바이오경제 글로벌 정책동향

미국 🇺🇸

- '22 '국가 생명공학·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대통령 행정명령
- 약물 개발/제조 및 인공지능/기계학습 관련 논의 강화
- 10년내 기존 제조업의 1/3 대체 예상(30조 달러; 한화 4경원)

일본/중국 🇯🇵 🇨🇳

- '23 바이오제조 국가과학기술 우선 분야 설정 : 바이오 제조 관련 프로젝트 예산 4,700억엔(한화 4조3천억원) 배정
- '24 바이오경제 전략으로 바이오 제조 거점 구축
- '22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 수립(조단위 투자)
- 바이오맵 산업생태계 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추진

영국 🇬🇧

- '12 세계 최초 국가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 전략 로드맵 수립
- 합성생물학 관련 기술 성장세 급속
- '24 과학기술 강국 도약 프레임워크 발표 및 10년 20억 파운드(한화 3조6천억) 투자 → 공학생물학 국가 비전 발표로 합성생물학 유럽 네트워크 허브 기능 전망(The Science Times, '24.05.30)

한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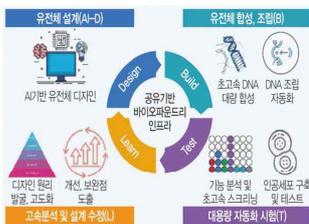
- '24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 바이오 제조 역량 확보 추진
- '24 '바이오파우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예타 완료 및 5년간 1,263억 투입 결정
- 예산 축소로 선도국 대비 경쟁력 손실 우려(조선일보, '24.09.28)
-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발의(최수진 의원, '24.09.10)

- 시사점**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및 유럽 등 주요국들은 바이오기술 혁신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목적으로 바이오경제 전략, 법제도 정비 및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파우드리 및 바이오맵 관련 산업을 중점 육성

2. 농축수산분야 바이오파운드리: 바이오팜

바이오파운드리(Bio foundry)

- **개념:** Bio foundry는 대규모로 생물학적 실험 및 공정을 자동화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로봇공학, 자동화,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여 합성 생물학 연구에서 반복적인 실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 **목적:** 주로 대량의 실험을 빠르게 수행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생물학적 설계나 대사 경로를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대규모 데이터 생성, 분석, 그리고 피드백 루프를 통해 생물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 **주요 기능:** 고속 DNA 합성, 유전자 조합, 대사 경로 최적화, 실험 자동화 등이 포함됩니다.



- 바이오폴리머
- 기능성 효소
- 바이오연료
- 항생제
- 기능성 단백질
- 단백질 신약
- 기능성 미생물
- 바이오섬유
- 대체육 소재
- 유전자 치료제

6

2. 농축수산분야 바이오파운드리: 바이오팜

바이오경제특위 바이오파운드리 정의

- (바이오파운드리 재정의 필요성)
 -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중심의 과기부 및 산업부에서 바이오파운드리 사업을 추진중
 - 생산을 통해 농축수산 분야 산업육성으로 이어지는 바이오파운드리 재정의 및 명칭에 관한 사항 검토 필요
- (농축수산 바이오팜 정의)
 - 바이오팜에 대한 정의로 '로봇과 AI 기술을 융합한 바이오 첨단기술로서 바이오 자원을 대상으로 생명공학 기술과 과정을 순환과정으로 농축수산 소재를 생산하는 기술'로 명시



바이오파운드리에
대한 명칭은 잠정
'농축수산 바이오팜'
으로 정의

바이오 자원 범위	기술 범위	생산소재 범위	워크 플로우 정립	사업범위
농축수산 분야 작물, 동물, 수산물, 임산물 등에 한정하는 방안 (인체유래물 제외)	모든 생명공학 기술 (생명공학백서 6개 산업분야 13개 세부기술 포함)	그린바이오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레드바이오	바이오파운드리의 "설계-제작-검증-학습" 과정에 "생산"을 추가	기존 바이오파운드리 사업과 연계 및 농축수산분야 생물자원DB · 종자 · 생산 설비 등 확대

7

3. 농축수산 바이오팩 정의 및 범위

농축수산 바이오팩의 정의

바이오팩 (BioFab)

- 생명공학, 생명정보, 정보통신기술 및 공학과의 기술적 융합을 통해 **농축수산 또는 바이오 제조의 모든 과정**을 디자인 및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함으로써 다양한 생물학적 솔루션, 구성요소 및 제품을 설계·제작·합성하는 신속·순환 생산공정 시스템 또는 인프라
-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따라 BioFab 용어 여러 국가에서 사용



3. 농축수산 바이오팩 정의 및 범위

바이오팩 차별화 전략

- 바이오 파운드리와 달리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상업 생산과 현장 테스트를 통해 실질적인 농축수산 제품을 시장에 신속히 공급
-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적극 도입하여, 농업과 수산업의 특수한 요구에 맞춘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등 생산 솔루션을 함께 제공.
- 연구와 다양한 연계산업을 연결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차별화된 전략 구현.

구분	바이오 파운드리	농축수산 바이오 팩
목적의 차이	연구와 프로토타입 개발에 중점	대규모 생산과 상업화에 집중 농축수산 분야 응용 및 제품 생산 목표
프로세스의 확장성	DBTL(Design-Build-Test-Learn) 사이클로 반복적 학습에 중점	DBTLP(DBTL-Produce)로 상업적 생산 통합 및 현장 테스트 강화
산업별 응용	제약, 화학, 합성 생물학 등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에 적용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특수 조건(환경, 계절성, 폐기물 활용)에 적합한 솔루션 제공
지속 가능성 및 순환 경제	환경적 영향 간접적 고려	CO ₂ 재활용과 유기성 폐기물 처리로 순환 경제 모델 적극 도입
사례	제약과 유전자 연구 중심 시설 (예: Bio Base Europe Pilot Plant)	농축수산업 스마트팜 및 대체 단백질 생산 응용 (예: b.fab, BIOCON-CO2)

3. 농축수산 바이오패프 정의 및 범위

농축수산 바이오패프 범위 - 사회문제 대응

<p>7</p> <p>경제위기 초격차·첨단·전략 기술/산업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육종 : 데이터 기반 바이오자원 육종 • 첨단육종 : 유전체편집 기반 바이오자원 육종(자연돌연변이) • 자원정보 구축 : 농수축산 생물자원 DB library 고도화 • 디지털푸드 : 성분강화 바이오소재(유/육 제품, 작물 등) • 첨단농업기술 : 첨단생명공학기술 기반 바이오자원/소재 합성 	<p>2</p> <p>인구위기 지능화·자동화·무인화 기술/산업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융합형 스마트팜 : 데이터 통합·환류 기반 의사결정 • 합성생물학 기반 농생명 바이오 신소재 생산 플랫폼 • 유용미생물 및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소재 • AI-로보틱스 기반 무인화 스마트팜 : 시공간 초월형 스마트팜 • 기후대응형 육상양식 플랫폼 : 유용 해조류 및 기능성 다당소재 • 미세조류 파운드리 : 유용 미세조류 및 고부가 기능성 소재
<p>3</p> <p>기후위기 탄소중립·환경적응 기술/산업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저항 : 질병저항성 바이오자원 개발 • 환경적응 : 환경적응형(김 내수화) 및 온도저항성 바이오자원 개발 • 탄소저감 : 탄소배출 최소화 바이오자원 개발(소, 곡물 등) • 자원대체 : 인공육, 배양육, 대체육 개발 • 연료자원 : 바이오연료 등 	<p>4</p> <p>소통위기 국민체감 프로그램 및 규제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플랫폼 : 공공 포럼, 세미나 등 직접 대화 촉진 • 온라인 플랫폼 : SNS 등 활용 정보, 의견 공유의 장 제공 • 교육프로그램 : 학교, 지역사회 과학기술 교육 및 워크숍 확대 • 홍보 : 인플루언서, 커뮤니티어, 전시회, 박람회 등 적극 활용 • 정책협의체 : 정부, 시민, 전문가 등 다분야 참여 협의체 구성

10

4. 농축수산 바이오패프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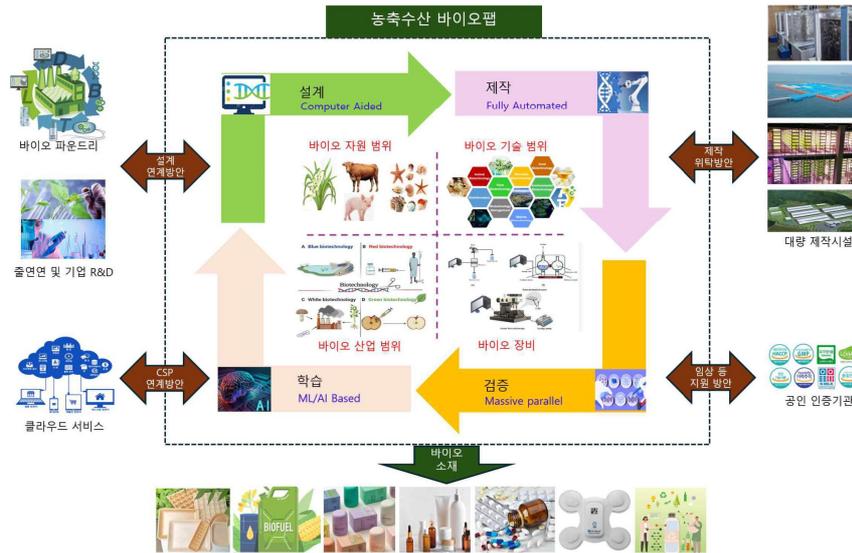
농축산분야 바이오패프 발전 방향

소비자	기업	농축수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 및 위기 해결 기후변화 대응형 작물, 슈퍼작물 • 지속가능한 단백질 공급 식물성 대체육, 배양육, 차세대 유제품 • 친환경 및 고기능성 제품 수요 충족 영양소 강화 작물, 바이오 발효기반 식품 첨가물, 중금속/미세플라스틱 프리식품 • 개인맞춤형 식품산업 활성화 개인맞춤형 식품, 특수용도식품, 스마트 푸드, 분자식품 등 •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Si기반 개인맞춤형 식이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식품시장 신성장 동력 확보 배양육, 배양어육, 대체육, 지방대체제, 대체유제품, 프로바이오틱스, 감미료, 분자식품, 개인맞춤형 식품 등 • 디지털 제조공정 혁신 AI/big data 기반 디지털 팩토리, 디지털 트윈, • 수입의존도 감소 및 신규 수출시장 확보 고부가 수입식품첨가물 대체제, K-food 제품 다변화 및 활성화 등 • 브랜드가치 상승 • ESG 경영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농축수산물 생산성 유지 기후변화 대응 육종, 대체사료, 기능성 사료, 동물용 미생물제제, 동물용 항생제, 탄소/메탄 저감 미생물, 바이오비료, 바이오 농약 • 농축수산물 부가가치 증대 바이오파운드리 원료공급, 디지털 육종, 스마트팜 기반 기능성 소재, • 농수축산업 디지털 전환 Si기반 스마트양식, 무인 스마트팜, 스마트 수직농장, 기후대응형 스마트 육상양식, 미세조류 파운드리(양식) • 부산물 재활용 확대 • 정부지원 및 투자 확대

11

4. 농축수산 바이오팩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농축수산 바이오팩 추진전략(안)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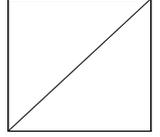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24 차 위 원 회

심 의 안 건
(5 건)

공 개



의안번호	제2025 - 1호	의 결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5. 03. 18. (제 24 회)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출 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농어업분과위원회 위원장)	김 한 호
제출 연월일	2025. 3 18.	

1. 의결주문

-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에 대한 의결

2. 제안 이유

- 가축의 구입비 상승과 사료비 부담 가중 등 축산 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민원의 증가와 분뇨의 처리에 관한 환경규제 강화로 축산농가의 부담 가중
- 축산 환경규제 대응과 생산비 절감의 대안으로 경축순환 농업확대를 위한 농가불편 해소, 인프라 확충, 제도개선 필요

3. 주요내용

- (정책협약체 추진) 화학비료와 액비의 관리기준 일관성 확보, 환경 부담 경감을 위한 비료 사용량, 액비 살포 기준, 부속도 정의 등
- (퇴액비 품질 제고 및 이용성 증진) 퇴액비 품질 기준 강화, 퇴액비 활용기술 다양화, 경종농가 시설·장비 지원, 전담조직 활성화 등

4. 참고사항(관계부처 협의 등)

- 농어업위 농어업분과 축산TF 회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2023.10.~2025.2./ 회의 8회, 간담회 2회)
 - 연구용역 추진(2024.5.27. ~ 11.29.) / 사) 한국축산경제연구원
 - 『대한민국 축산 생산성 혁신사례』 선정(7대 부문, '24.12.4)
 - * ① 한우, ② 젓소, ③ 한돈, ④ 경축순환, ⑤ 조사료 생산, ⑥ 축산물 품질, ⑦ 스마트팜 기술
 - 관계부처 의견수렴 · 협의(2025.2.18. ~ 2.19.)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서면 검토
 -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회 검토 및 의결(2025.2.25.)
 - 분과위원회 검토의견 반영 및 관련부처 의견수렴(2025.2.27. ~ 3.4.)
 - 제4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검토(2025.3.5.)
- ※ 본 의안 의결 이후 해당 부처 및 기관과 이행계획 등을 위한 협의 예정

5. 첨부

-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 요약 1부
-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 전문 1부

심의 안건①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

2025. 3.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

- (추진배경)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축산환경정책 개선 방안 모색
 - 가축 구입비 상승과 수입 사료비 부담으로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악취민원 증가 및 환경규제* 강화로 분뇨처리 부담 증가
 - * 해양투기 금지('12) → 무허가축사 적법화('17) → 부속도검사 의무화('21) → 퇴비·액비 자원화시설 암모니아 배출규제('29)

- (필요성) 환경규제 대응과 생산비 절감의 대안으로서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농가불편, 인프라 미비 및 제도적 한계 해소 필요
 - 기존 경축순환 활성화 정책은 가축분뇨 발생자인 축산농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실사용자인 경종 및 시설농가에 대한 지원 부족
 - 퇴액비의 경우 성분 등 품질의 균일성이 낮고, 살포를 위해 추가적인 시설과 장비가 요구되어 경종농가의 물리적·경제적 부담 가중
 - * 가축분 퇴액비는 무기질 비료와 비교하여 이동, 보관, 살포 곤란

- (주요내용)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 마련
 - (정책협약체 추진) 화학비료와 액비의 관리기준 일관성 확보, 환경 부담 경감을 위한 비료 사용량, 액비 살포 기준, 부속도 정의 등
 - (퇴액비 품질 제고 및 이용성 증진) 퇴액비 품질 기준 강화, 퇴액비 활용기술 다양화, 경종농가 시설·장비 지원, 전담조직 활성화 등

☐☐ 목 차 ☐☐

I. 추진 배경 및 경과	27
II. 퇴액비 생산-이용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 ..	28
III.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 ..	29
IV. 향후 검토 과제	33
V. 기대효과	33

[참고자료]

1. 대한민국 축산 생산성 혁신사례 선정결과 (요약) 34
2. 일본 「환경부하 경감형 지속적 생산지원 사업」 사례 ... 35
3. 일본 「논활용 직접지불제도」 사례

I. 추진 배경 및 경과

- (배경)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축산환경정책 개선 방안 모색
 - '24년 축산업 생산액은 가금류 생산액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 가축 구입비 상승과 수입 사료비 부담 지속으로 경영 환경 불안정 심화 전망
 - 악취민원 증가 및 강화된 환경규제*로 분뇨처리 부담 증가
 - * 해양투기 금지('12) → 무허가축사 적법화('17) → 부속도검사 의무화('21) → 퇴비·액비 자원화시설 암모니아 배출규제('29)
 - 환경규제 대응과 생산비 절감의 대안으로서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농가불편, 인프라 미비 및 제도적 한계 해소 필요
- (경과) 농어업분과위원회 축산 TF 운영 및 성과
 - 농어업분과위원회 산하 축산 TF 운영 현황
 - (구성) TF 위원(총 15명) * 단장: 김민경 본위원(건국대학교)
 - (운영) 총 8회, ('23. 11월 ~ 현재)
 - (주요의제) 축산 ①생산성 혁신과 ②축산환경정책 개선 방안
 - *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병행
 - 『대한민국 축산 생산성 혁신사례』 선정(7대 부문, '24.12.4)
 - * ① 한우, ② 젓소, ③ 한돈, ④ 경축순환, ⑤ 조사료 생산, ⑥ 축산물 품질, ⑦ 스마트팜 기술



Ⅱ. 퇴액비 생산-이용 지원 체계 개선 필요성

- 발생자 중심의 경축순환 정책과 생산-이용 지원의 불균형
 - 기존 경축순환 활성화 정책이 퇴액비를 이용하는 작물재배 농가 보다는 가축분뇨 발생자인 축산농가 중심으로 설계됨
 - * 가축분뇨처리 지원정책은 '가축분뇨법'과 같은 법적 규제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을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관리와 악취 제어 능력을 강조
 - ☞ 축산악취 개선, 악취측정 장비 지원,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등

- 가축분뇨 퇴액비의 지속적 품질향상으로 경종농가의 토양개량 목적의 사용량 증가
 - 액비생산량: ('22) 596만 4,000톤 → ('23) 602만 2,000톤

 - 퇴액비 실제 사용자인 경종 및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경종농가에서 퇴액비 사용 확대 곤란
 - * 퇴액비 이용 경종 및 시설 농가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퇴액비의 수요 부족, 유통 체계 미흡 및 지원 정책 한계 등 노출
- 경종농가의 퇴액비 사용 기피 및 시비처방에 따른 살포량 제한
 - 퇴액비의 경우 성분 등 품질의 균일성이 낮고, 살포를 위해 추가적인 시설과 장비가 요구되어 경종농가의 물리적·경제적 부담 가중
 - * 가축분 퇴액비는 무기질 비료와 비교하여 이동, 보관, 살포 곤란
 - 비포장 또는 적정 기준 초과 포장비료는 1000m²당 최대 3,750kg 사용이 가능(비료관리법 시행규칙)하나 액비는 작물별 시비처방서에 따라 살포량이 정해짐(가축분뇨법 시행규칙)
 - * 액비는 비포장 상태로 공급되므로 과다 살포에 따른 토양 오염 및 악취발생을 방지하고자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급·사용량을 작물 시비처방에 따라 제한하고 있음

□ 쌀 생산조정, 곡물자급률 향상 등 정책적으로 사료용쌀 재배 검토 필요

- 사료용벼는 다비재배(질소 18kg/10a, 인산 9, 칼륨 11)*하여, 타작물에 비해 칼륨의 요구량**이 많고, 규모화가 쉬워 곡물사료 대체 가능성 높음

* (참고문헌) 중부 평야지에서 사료용 벼와 주요 동계사료작물 이모작 시 생산성 (2019, 한국작물학회)

** 액비는 상대적으로 칼륨 함량이 높아 사료용벼 재배 시 1,000m²당 사용 확대 가능

- 쌀 생산조정(밥쌀용 벼 재배면적 감축), 곡물자급률 향상,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등 정책적으로 논 대체 작물로 사료용쌀 재배 검토 필요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이용의 지원체계의 균형감 회복** 필요

- 액비에 대한 살포 기준 일관화를 통한 토양 살포 기준 형평성 제고
- 퇴액비 품질 및 활용 편의성 제고를 통한 경농농가 수요 확대
-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간의 연계 강화로 상호 이익 극대화

Ⅲ.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

□ 화학비료와 액비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정책협의체 운영 필요

퇴액비 관리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비료사용으로 인한 환경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하여 관련 부처간 정책협의체 운영 필요

- 화학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를 동일 법령으로 관리하여 관리기준의 일관성 확보 방안 검토

- 부숙 전 가축분뇨는 축산폐기물로서 「가축분뇨법」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명확하나, 부숙에 의해 퇴비 또는 액비화하여 부숙유기질비료가 되면 「비료관리법」으로 일관성 있는 관리기준 필요

○ 환경부담 경감을 위한 1,000m²당 비료 사용관련 정책협의 필요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상 비포장 또는 적정 기준 초과 포장비료에 대해 1,000m²당 연간 최대 비료 사용량을 3,750kg(또는 L)으로 규정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은 1,000제곱미터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한다
- 환경오염 문제로 비료의 최대사용량을 규제하고 있으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보통비료의 경우, 허용량을 모두 살포 시 환경오염이 우려됨으로 대책 마련 필요
- 포장되어 있는 비료와 퇴비는 사용에 제한이 없어, 잠재적인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오남용 방지 대책 필요

○ 액비의 1,000m²당 연간 최대 살포 기준 검토 필요

- 액비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상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정 사용량과 최대 사용량 간 논란이 있으므로 최대 사용량에 대한 기준 검토 필요
-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별표 5] 제4호 액비는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

○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필요사항

- 고시 내용 중 부숙도의 정의와 본문 내용간 차이가 있어 개정필요

<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필요사항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숙도(腐熟度)"란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치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숙(腐熟)"이란 ----- ----- ----- -----, <개정> 2. "부숙도(腐熟度)"란 부숙이 진행되는 정도를 말한다. <신설>

□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 기준 강화 및 활용기술 다양화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향상, 활용기술 다양화 및 이용 편의성 증진을 통한 퇴액비 우선 사용 유도 필요

○ 실사용자 맞춤형 퇴액비 품질 관리 강화

- (품질인증제 도입)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양화*하고 제품별 품질기준 설정·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품질검사·인증 공인기관 운영
- * (바이오차) 경종농가를 위한 가축분 바이오차 포장·판매 지원, (정제액비) 시설 농업 등을 위한 고품질 액비 제공, (고체연료) 발전소 등의 원료로 활용
- (퇴액비 품질관리) 정기적인 품질검사(부숙도, 성분 함량 등)를 통한 작물 및 용도(노지살포, 관주 등)별 적정 품질 및 활용 기준을 마련
- (퇴액비 적합성 평가기관 일원화) 퇴액비화 적합 기준과 관련된 분석을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고, 분석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지원 필요
- * 퇴액비화 기준 분석 항목: 부숙도,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등

○ 퇴액비 수요 확대를 위한 활용 기술 다양화

- (작목다양화) 고구마, 감자, 참외, 오이, 수박 등 1,000m²당 칼륨 표준시비량이 높은 작물*에 대한 활용 기술 및 지침 제공
- * 작물별 비료사용처방 칼륨 함량(22, 농진청): 고구마 15.6kg/10a, 감자(봄) 13.0, 참외(노지) 16.0, 오이(노지) 23.8, 수박(노지) 12.8
- (재배유형별 적합기술) 노지재배,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친환경, 유기농 등 재배유형별 퇴액비 중점 활용 지침 제공
- (처리시기별) 과종(이식) 전, 영양생장기, 등숙기 등 사용시기 다양화
- (용도다양화) 토양 물리·이화학성 개선, 작물의 품질 및 생산성 증진, 저온, 한발 등 재해저항성 증진 등 다양한 활용기술 관련 지침 제공

○ 경종농가 퇴액비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시설·장비지원) 경종농가 맞춤형 고품질 퇴액비 생산을 확대하고, 퇴액비 살포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지원책* 마련
- * 퇴액비 저장·정제, 살포 장비·차량 등 관련 시설·장비 지원 및 임대사업 확대

○ 퇴액비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담조직 활성화

- (공동처리시설 확충) 축협과 자원화조직체* 중심으로 퇴액비 생산비 절감, 품질 제고, 공급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대규모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 지원

* 자원화조직체: 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 유통·살포 전문조직

< 자원화 조직체 운영현황 >

연도	공동자원화 시설					액비유통 전문조직	퇴비유통 전문조직 (‘22년)	살포 외 전문조직* (‘23년)
	합계	퇴액비화	에너지화	바이오차	준비			
2024	100	78	10	2	11	160	144	7

※ 살포 외 전문조직(7개소): 고체연료(2), 퇴비수출(4), 바이오차(1, 개인운영)

- (생산시설 현대화) 퇴액비 생산 효율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조·저장 시설 확충 및 자동화 장비 지원

- (공동시설 정제액비* 사용확대) 정제액비 사용확대로 악취와 부유물 문제를 해결하고, 화학비료와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활용성 제고**

* 개별농가에서 활용하기에는 경제적·기술적 부담이 커 공동시설에서 생산확대 필요

** 지중점적, 관비, 스프링클러 등 호스 또는 노즐을 이용한 시비 가능

혁신사례 ◀ 시설원에 작목 『맞춤형 정제 액비』 공급을 통한 비료비용 절감 사례

- 대한민국 축산 생산성 혁신사례 경축순환 부문 : 여주한돈협회
- 시설원에 농가에 저장탱크를 제공 ⇒ 농가 요청 시 정제 액비 공급
⇒ 작목 상태에 맞춰 적정비율의 화학비료 첨가하여 시비

* 정제 목적: 여과처리로 액비 내 부유물을 제거하여 관로 및 노즐 막힘 예방



- (살포비 지원체계 개선) 살포비 지원 기준을 기존 살포 면적에서 물량으로 변경*하고, 전자인계관리시스템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일괄처리 체계 구축**

* 살포면적은 작물별 시비처방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같은 면적에 재배 하더라도 작물별 살포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형평성 고려 필요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액비살포면적을 기준으로 살포비를 지원하나,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배출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하여 상호 관리기준이 다름

IV. 향후 검토 과제

- 주곡생산기반 보전 및 경축순환 확대를 위한 사료용쌀(가칭) 재배 검토 필요
 - 사료용쌀* 재배 적합성 및 재배농가 소득안정 방안 검토
 - 재배 적합성 검토, 재배농가 소득안정 및 예산확보 방안 등
 - * 사료용쌀: 조사료가 아니라, 이삭을 수확하여 급여하는 곡물사료를 의미함
 - 사료용쌀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부정유통 방지 대책 수립 필요
 - 품종적 차별화, 가공시설관리, 유통이력관리, 홍보·교육 방안 등
 - * '16년 사료용 현미 25톤을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업체에 판매사례 적발
 - 쌀의 사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책지원, 활용확대 등

V. 기대효과

- (환경적)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 확대를 통한 화학비료 사용 감축, 토양·수질 오염 방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경제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 절감과 경종농가의 비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 수익성 제고
- (사회적)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과 퇴액비 유통 활성화로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고령 농가의 노동 부담을 줄이며, 경축순환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를 구축

참고 1

대한민국 축산 생산성 혁신사례 선정결과 (요약)

부문	혁신사례
한우 (중우농장, 전북 고창)	한우 단기 비육 최적화로 회전율 제고 및 수익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대비 7개월 짧은 23.9개월령 출하 (1*이상 출현율 78.6%) * '23 전국 평균: 출하일령 31.1개월, 1*이상 출현율 69.1% ■ 전국 최초 민간 한우보증씨수소 선발
젖소 (장원목장, 경기 가평)	능력검정 데이터 기반 젖소 관리로 우유 생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검정 자료 활용 산유량 증대: ('21) 10.8톤/년 → ('23) 11.6 ■ 분만간격 단축유지: ('21) 384일 → ('23) 383 일 (※ '23 전국평균 447.7)
한돈 (돈트리움, 경남 함양)	건강하고 우수한 한돈과 경제사료 활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돈관리 강화를 통한 PSY 향상: ('21) 27.6두 → ('22) 29.7 → ('23) 31.6 * '23년 기준 MSY 28.7두 (전국평균 22두) ■ 국내 축산업 최초 ISO4001(품질경영) 및 ISO14001(환경경영) 인증 획득
경축순환농업 (여주한돈협회 영농조합법인, 경기 여주)	다양한 맞춤형액비 공급으로 이용농가 생산성 향상 및 화학비료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목 맞춤형 제품 다양화로 액비 공급 확대 ('21) 5,148톤 → ('23) 7,785 ■ 액비이용 효과 현장검증 및 이용 확대: 화학비료 이용 감축
조사료 생산 (신용안영농조합법인, 전북 익산)	생산확대 및 품질향상으로 조사료 국산화 및 자급률 향상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풍 건조기술 도입을 통한 조사료 품질 향상 ■ 국산 조사료 보급대상 확대 (기준) 한우젖소 → (확대) 한우젖소 + 말
축산물 품질 차별화 (부경양돈농협, 경남 김해)	생산자와 함께하는 소비자 선호 돼지고기 생산 및 제품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고기 육질개선을 위한 근내지방도 우수 종돈 도입 및 생산 ■ 소비수요 변화 대응 간편식 등 다양한 육가공 제품 출시 * 돼지고기 판매량 '23년 대비 10.3% 증가
축산 스마트팜 기술 (㈜엠트리센)	농가 사용자 지향적 인공지능 기반 모돈 관리 기술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기반 돼지 산자수 자동기록 등 핵심기술 확보 ■ AI기반 모돈 관리 제품 판매 확대 * ('21) 7농가(644대) → ('24. 8월) 27(2,208)

□ 사업 개요

- (목적) 육우·젓소 사육 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지속 가능한 경영 지원
- (지원 대상) 아래의 4가지 주요 실천 방안 이행 농가

- ① 수입 사료에서 자급 사료로 전환
 - * 수입 사료 사용을 줄이고, 벼농사를 활용한 자급 사료 생산을 장려
 - * 수입 옥수수 사료 대신 청예 옥수수, 목초 등의 국내 생산 사료로 대체
 - * 다년간 계약을 통해 국내 농가와 협력하여 사료 공급망 구축
- ② 사료 생산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절감
 - * 방목 사육 확대: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
 - * 불경운(不耕起) 재배: 토양 경작을 최소화하여 탄소 배출 억제
 - * 메탄 발효 부산물(소화액) 활용: 퇴비 사용을 늘려 화학비료 사용 절감
 - * 화학비료 사용 감소: 지역 표준 대비 30% 이상 줄이도록 장려
- ③ 유기 사료 생산 촉진
 - * 일본 농림규격(JAS)에 따른 유기농 사료 재배 지원
 - * 화학비료, 합성농약, 유전자 조작 종자 사용 금지
 - * 2년 이상 화학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된 사료만 인정
- ④ 낙농업에서의 메탄가스 배출 저감
 - * 젓소의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특정 사료 첨가제(지방산 칼슘 등) 사용
 - * 1마리당 연간 10kg 이상의 특정 사료 사용을 조건으로 지원

□ 지원 조건 및 자격 요건

-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실행하고 있어야 함
-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 확보되어야 함
 - * 홋카이도: 40a(아르)/마리 이상, 일본 본토 지역: 10a/마리 이상
- 환경 법규 준수 및 적절한 가축 분뇨 관리 이행
 - *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매년 재배 면적 및 가축 두수를 유지해야 함

1) 출처: 환경부하 경감형 지속적 생산 지원 사업(環境負減輕型持続的生産支援事業) 지침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주요 실천 방법

○ 수입 사료에서 국내 자급 사료로 전환

- 청예 옥수수, 목초 등 국내 자급 사료 생산 확대
-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장려(벼농사 대체)
- 수확량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 (청예 옥수수) 2,000엔/톤, (목초) 800엔/톤

○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도입

기술	주요 내용
방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젓소: 연간 90일 이상, 육우: 연간 120일 이상 방목 ■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 퇴비 사용 증가로 환경 부담 경감
불경운(不耕起) 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을 경작하지 않고 작물을 기르는 방식 ■ 토양 속 탄소 저장량 증가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
소화액(퇴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비를 활용하여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메탄 발효 부산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저감
화학비료 사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비료 사용량을 지역 기준보다 3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 ■ 사료작물 재배 면적의 80% 이상에서 화학비료 절감 시행

□ 추가적인 온실가스 저감 방법 (특별 인정)

○ 특별한 추가 실천 항목을 도입하는 농가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방법	주요내용
국산 농업 부산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회질 부산물(조개껍질, 라임케이크 등)과 식품 가공 부산물을 활용하여 사료 및 토양 개량제로 사용
슬러리(Slurry) 등의 분뇨 액비를 토양 내에 직접 주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뿌리는 방식 대신 토양 내 주입을 통해 악취 저감 및 영양소 손실 방지
농약 사용량 줄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초 재배 시 무농약 관리 ■ 옥수수, 수수 재배 시 기존 대비 농약 사용량 30% 이상 줄이기
정밀 농업 기술 활용(드론 및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을 활용한 정밀 방제 및 필요한 지역만 선택적으로 시비하여 자원 낭비 줄이기

□ 지원금(보조금) 체계

-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농가의 참여 장려
 - * 방목, 불경운 재배, 퇴비 활용, 화학비료 절감 중 2가지 이상 시행 시: 1만5천 엔/ha 지급
 - * 수입 사료 대체 및 자급 사료 생산 확대 시: 최대 88,000엔/ha 지원
 - * 유기 사료 생산 시: 45,000엔/ha 지원
 - * 메탄가스 저감 사료(지방산 칼슘) 사용 시: 1마리당 2,000엔 지원

□ 기대 효과 및 의미

- 온실가스 저감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
- 사료 자급률 향상을 통해 수입 사료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 비용 절감
- 퇴비 활용 및 친환경 농법 확대로 토양 환경 개선 및 생태계 보호

참고 3

일본 『논활용 직접지불제도』 사례

□ (목적) 쌀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수요가 높은 작물의 재배촉진

-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보리 30만 7천ha, 콩 17만ha, 사료용 쌀 9만 7천ha까지 늘릴 계획

□ 지원 내용

- (전략작물 재배지원) 논에서 보리, 콩,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0a당 3만 5,000엔(약 34만 7,000원) 지원
- (사료용벼 재배지원) 조사료와 곡물사료용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0a당 8만 엔(약 79만원) 지원

* 2008년 사료용 쌀 재배면적이 1,000ha에서 2022년 약 14만ha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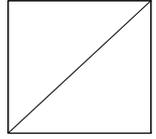
- (가공용쌀 재배지원) 쌀 활용 촉진을 위해 10a당 2만엔(약 19만원) 지원

□ 주요 효과

- (쌀 수급 균형) 벼 대신 보리, 콩, 사료작물 등 재배를 유도
- (타작물 자급률 향상)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 콩 등의 전략작물 재배를 촉진하여 자급률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
- (농업인 소득 안정) 논에서 타작물 재배 농가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소득 안정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증진) 논을 활용한 다양한 작물 재배를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 경관 유지 등 다원적 기능 강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이은영 농어업정책팀장
연락처	전 화 : 02-6260-1251 E-mail : ley1970@korea.kr

공 개



의안번호	제2025 - 2호	의 결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5. 03. 18. (제 24 회)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출 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위원장)	장 판 식
제출 연월일	2025. 3 18.	

1. 의결주문

-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에 대한 의결

2. 제안 이유

- 글로벌 경제질서 재조정(자유무역 질서 축소, 현대중상주의 확대)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 중심 대한민국 경제의 취약성 증대
-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기술격차 축소, 제조공정 자국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 견인 산업 육성 필요
- 국가브랜드 인지도 제고, K-컬처 성공으로 인한 매력도 상승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식품산업을 미래 수출산업으로 육성 시급
- 식품산업의 안정적 수출 성장가능성, 안보적 중요성, 타 산업 파급 효과 고려 시 전략적인 산업 지원 정책 수립이 중요

3. 주요내용

- 원료 공급망 효율화 및 안정화
 - (국내) 1차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향상, 농수산업-식품기업 간 연결성 강화, 규모화를 통한 원료 생산 비용효율성 제고
 - (해외) 수입 다변화·다각화, 해외농어업 개발, 산지 인프라 지원
- 산업 부가가치 제고
 - (민간) 규제완화, 펀드, 세액공제 등을 활용한 투자 및 R&D 지원
 - (공공) 공공 연구인프라(식품바이오파운드리, 미생물연구소), 클러스터 효과 창출, 양적(외국인력)-질적(연구인력) 인적자원 투입 기반 조성

○ 전략적 유통·수출 지원

- (유통) 선박-물류센터 수출 공급망 안정화, 항만·공항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화(콜드체인)
- (수출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수출역량 강화, K-푸드 브랜딩, 위조상품 대응, 농수산물수출촉진법 제정

4. 참고사항(관계부처 협의 등)

○ 농수산물식품분과 내 식품수출TF 설치·운영('24.2.~'25.2./4회)

- 식품 수출 관련 집중 논의를 위해 농수산물식품분과 내 식품수출 TF를 별도로 구성하고 식품산업의 수출 증진 방안 모색
- * 정부(농식품부, 해수부), 공공기관(aT), 학계(서울대), 기업(CJ, 동원, 삼양, 오리온, 롯데), 연구계(한국식품연구원), 협회(한국무역협회, 식품산업협회), 컨설팅펌(맥킨지) 등 포괄

○ 정책연구용역 수행('24.5.~'24.12.)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식품수출 1천억달러 정책연구 수행

○ 관계부처 의견수렴·협의('24.12.~'25.2.)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서면 검토 및 안건 조율

○ 농어업위 농수산물식품분과위원회 검토 및 의결('25.2.12)

-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 안건 상정 및 제25차 농수산물식품분과 의결

※ 본 의안 의결 이후 해당 부처 및 기관과 이행계획 등을 위한 협의 예정

5. 첨부

-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안) 요약 1부
-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안) 전문 1부

심의 안건②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

2025. 3.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 요약

1. 추진배경

- 글로벌 경제질서 재조정(자유무역 질서 축소, 현대중상주의 확대)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 중심 대한민국 경제의 취약성 증대
 -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기술격차 축소, 제조공정 자국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 견인 산업 육성 필요
- 국가브랜드 인지도 제고, K-컬처 성공으로 인한 매력도 상승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식품산업을 미래 수출산업으로 육성 시급
 - 식품산업의 안정적 수출 성장가능성*, 안보적 중요성**, 타 산업 파급효과*** 고려 시 전략적인 산업 지원 정책 수립이 중요
 - * 인구비례로 양적 수요가 결정되며, 기호도에 따라 특정 식품을 선택하는 특성으로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음)
 - ** 생존필수재로 공급망 외부화로 국내 생산기반 붕괴 시 민감성/취약성 증대
 - *** 1~3차 산업을 포괄하여 농수산물 생산-제조-유통-서비스업 대규모 고용

2. 우리 식품산업의 위치

- (글로벌 트렌드) 푸드테크(기술혁신), 지속가능성(친환경, 대체식품), 건강 지향(기능식품) 등을 트렌드로 연평균 6% 안정적 성장 중
 - 다만 국가 간 갈등 및 기후변화로 인한 원료수급 불안정, 관세·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 (국내 현황) GDP 대비 식품산업 비중은 지속 증가 중이나 외형적 성장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 생산성은 한계*
 - * 국내 식품산업 평가: (강점) 가공경쟁력, 건강식품, K-브랜드, 물류인프라 / (약점) 수입산 원료의존, 영세성, 작은 내수시장, 규제장벽
- 푸드테크,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산업을 지원 중이나 규제 완화(기술/인력), 물류시스템 지원, 수출 마케팅 강화 등 정책수요 상존

3. 해외 식품산업 및 국내 타 산업 육성사례

- (해외) 네덜란드(중점 산업 지정, 물류효율화, 클러스터), 미국(민간 R&D, 정보 제공), 일본(브랜드 가치, 법적 지원) 국가별 산업 지원 모델 보유
 - 민간 R&D 지원 강화, 항만 물류 인프라 중심의 집적효과 창출, 브랜드 가치 제고, 클러스터 구축 및 인적 역량 향상 등이 중요
- (국내) 반도체(R&D·설비투자 세액공제, 인력양성, 소부장 국산화), 화장품(민간 ODM 역량, 글로벌 규제협력, 소재개발 지원) 산업별 성공요인 보유
 - K-브랜드 확산, 글로벌 광고·유통채널 개방을 기회로 적극적인 R&D 지원, 기초연구 수행, 규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이 주요 성공요인

4. 추진전략 및 과제

“수출 1천억 달러 농수산물산업 육성을 위한 가치사슬 전방위 경쟁력 강화”

- 원료 공급망 효율화 및 안정화
 - (국내) 1차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향상, 농수산업-식품기업 간 연결성 강화, 규모화를 통한 원료 생산 비용효율성 제고
 - (해외) 수입 다변화·다각화, 해외농어업 개발, 산지 인프라 지원
- 첨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 (전략산업) 식품산업을 식량안보, 국가 경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가 전략기술(산업)로 지정하여 첨단식품산업으로 육성
 - * 과기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식품산업을 지정하여 시설·설비투자 세액공제, 대규모 투자 등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 (공공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첨단식품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신 기술 상용화 및 지속 가능 생산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
 - * (식품바이오파운드리) AI, 로봇 자동화, 합성생물학, 빅데이터 활용 → R&D, 시제품 생산 과정을 표준화·자동화·고속화 등 제조공정 혁신
 - * (미생물·단백질 연구) 미생물 기반의 신소재 및 식물성 단백질, 미생물 단백질 연구개발

- **(R&D 투자 확대)** 미래 식량 문제 해결과 글로벌 시장 선점, 첨단 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 차원의 R&D 집중 투자**
 - * 미생물, 단백질, 효소, 대체육, 기능성 식품, 첨단기술 융합 기반 'K-식품소재' 첨단 바이오-푸드테크 기술을 적용한 대체 소재 연구개발 등 제품화 촉진
- **(첨단 생산설비 도입)** 자동화, 로봇 기술을 활용한 식품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고, 바이오 소재와 관련된 **생산설비의 고도화**
 - * 스마트 팩토리, 로봇 공정 시스템, 3D푸드 프린팅, 고압 가공기술, 세포배양 시스템, 효소 반응 시스템, 업사이클링 식품 가공 설비 등
- **(식품클러스터 권역화)** 식품산업 균형발전, 지역별 산업 특화,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 추진**
 - * 예시) 수도권(HMR 스마트 푸드), 충청권(기능성식품, 바이오 소재), 호남권(전통발효 식품, 친환경식품), 영남(해양바이오 수산가공식품), 강원(청정유기농, 고지대 특산물)
- **(위탁 생산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투자비용 절감, 생산 효율성 및 신제품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첨단 식품 OEM, ODM 전문기업 육성 지원**
 - *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초기 투자비 절감, 생산 인프라없이 고품질 신제품 출시, 신속한 시장 대응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다양한 제품 출시, 맞춤형 제품 개발 지원 브랜드별 특화 제품(기능성 식품, 대체육 등) 생산 등

□ **전략적 유통·수출 지원**

- **(공동물류센터)** 해외 주요 물류거점 운영 중인 **공동물류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일부 **전용공간 제공, 비용 보전 및 컨설팅**
 - * 로테르담/바르셀로나/자바2/LA → 엘우드 물류센터 등 11개소로 확대(~'27)
- **(항만·공항 인프라 구축)** 부산항, 인천항 및 가덕도 신공항을 농수산물 수출·가공(배후단지 등) **첨단 허브항으로 조성**
 - * 항만 기반시설 확충(선석, 배후단지) 및 신규공항 건설 계획수립 시, 계획·설계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 협업 추진(아시아·미주 등 관문항·공항)
- **(해외시장 정보 수집·유통 강화)** 수출국 정보는 **정부·공공기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용 편의성 강화**
 - * aT 농식품수출정보플랫폼, 식약처 원스톱식품수출정보창구 등
 - ** 수출정보/규제정보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출에 성공·확대한 사례 전파 등

- (수출역량 강화) 수출 수요에 대응하고 현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우수 K-Food 컨설팅 기업*을 적극 활용
 - *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상품기획-생산-브랜딩-마케팅-해외진출 등 전주기 솔루션을 제공하는 **식품기업 성장 통합서비스**(^{가칭}K-Food Agency) 컨설팅 병행
- (브랜드 인지도 확산) 국내외에서 기존 방송채널과 박람회 외에 더해 OTT, SNS에 'K-푸드' 인식도 확산을 위한 **광고비 집행 확대**
- (위조상품 대응) 민간 주도 식품 R&D 촉진과 위조상품(K-푸드 로고 등) 대응 강화를 위한 '^{가칭}식품저작권' 제도 도입 검토(관계부처 협의 추진)
 - * ^{가칭}식품저작권 제도: 기존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가공기술, 레시피, 조리법 등을 보호하고 유사 제품 생산시 원천 개발자에게 로열티(저작권)를 제공
- (농수산물식품 수출촉진법 제정) 수출 전담 조직 신설, 법정 기본계획 수립 등 수출 활성화 제도기반 마련

☐☐ 목 차 ☐☐

I. 추진배경	53
II. 우리 식품산업의 위치	55
III. 해외 식품산업 육성사례 및 시사점	60
IV. 국내 타 산업 육성사례 및 시사점	61
V. 추진 전략 및 목표	62
VI. 전략별 추진과제	64

I. 추진배경

1 글로벌 경제질서 재조정

- (자유무역 질서 축소) WTO 체제로 대표되는 비교우위에 기반한 자유무역, 제한적 정부 개입, 세계화 질서의 지속 축소
- (중상주의 확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관세, 국가 보조금, 공공조달, 수출통제 및 공급망 내재화 조치 확대
 - *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에서는 미-중 패권전쟁의 결과로 나타난 보호무역, 자국산업 우선주의를 '현대 중상주의'로 정의

<현대 중상주의(Modern Mercantilism)의 특징>

- ▲국가가 경제를 조정하며 국부와 국력을 증진
- ▲무역수지는 부와 힘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무역적자를 기피
- ▲산업정책은 자립과 안보를 위해 활용
- ▲국익을 위해 국내 기업 챔피언을 보호

⇒ 자유무역과 세계화 질서 속에서 수출 주도로 성장한 대한민국 경제가 '현대 중상주의' 체제에서는 취약성 내재 → 적극적 산업 지원 필요(A)

2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 (반도체)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중국 생산 증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대응 실패 등으로 미국, 대만 대비 경쟁력 지속 약화 추세
- (석유화학) 세계적인 석유화학 설비 증설(공급과잉) 및 범용품 중심 수출전략의 한계로 경쟁력 지속 약화
 -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24.12.23.)」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 유도 중

⇒ 중국 등 후발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 각 국의 제조공정 자국화 등에 따라 주요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 →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 필요(B)

☞ “**성장가능성 있는 새로운 수출산업(B)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필요(A)**”

3 식품산업 지원 필요성

- (정의) 농수산물에 인공적인 과정을 더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거나 위와 같이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판매하는 산업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의의) 필수재로서의 특성과 전·후방산업과의 강한 연계가 특징적
 - (안정적 성장산업) 인간의 본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필수 소비재로서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변화가 타 산업 대비 완만(인구 비례)
 - * 제품 단위 수요를 보더라도 기호도에 따라 특정 식품을 선택하는 특성으로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음)
 - (안보 기여) 생존을 위한 필수재로 공급부족 시 안보 문제 비화
 - * 식품산업 공급망의 지나친 외부화로 국내 산업기반 붕괴 시 민감성/취약성 증가로 인한 포괄적 경제/식량 안보위기 가능성
 - (타 산업 파급효과) 1차~3차 산업을 포괄하여 농수산물 생산부터 식료품 제조, 유통 및 서비스업까지 대규모 고용효과 창출
 - (현황)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꾸준한 성장추세로 '21년 100억달러 수출 돌파, 120억 달러('23년) 수준의 수출규모 달성(aT)
 -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인지도 제고, K-컬처 성공으로 인한 매력도 상승, 경제성장으로 인한 식문화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이 유효
 - * 미쉐린 스타 한식당 0개('10년) → 36개('24년)
- ⇒ K-컬처 성공에 따른 K-푸드의 해외 인지도·선호도 개선의 영향으로 K-푸드 수출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출산업 가능성 보유

☞ 농수산식품산업의 수출 성장가능성, 안보적 중요성, 타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 **전략적인 산업 육성·지원 정책 수립 시급**

II. 우리 식품산업의 위치

1 글로벌 농수산물식품산업 현황과 전망

- (현황) 세계 식품시장은 기업 매출액 기준 8.3조 달러의 시장규모('22)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약 6% 수준(aT)
- (전망) 전망 기관에 따라 다르나 2030년까지 시장규모 약 4%(aT)에서 6%(Statista) 안정적인 성장을 예상
 - (트렌드) 푸드테크(기술혁신), 지속가능성(친환경, 대체식품), 건강지향(저당, 저지방 등 기능식품) 등이 식품산업의 지배적인 트렌드
 - * SIAL INSIGHTS 2024: Three key trends(SIAL PARIS 보도자료, '24.10.23.)
 - (위협요인) 국가 간 갈등 및 기후변화로 인한 원료수급 불안정, 관세·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2 대한민국 농수산물식품산업 현황

- (현황) 지속 성장 중으로 GDP 및 제조업 대비 식음료제조업(생산액) 비중(3%, 12%) 지속 증가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 내 위상 지속 강화
 - 식음료제조업 부가가치율(부가가치/GDP)은 약 36%로 제조업 평균 수준이며, 의약(64%)·반도체(66%) 등 첨단 제조업 대비 낮은 수준

<농수산물식품산업 일반현황>

- ▲(시장규모) 약 725조원(제조+유통+외식), 식음료제조업 약 169조원('24년, aT)
- ▲(사업체수) 식음료제조업체 수 약 7만4천개로 증가 추세('22년, aT)
- ▲(성장률)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 약 7%('24년, 식약처)
- ▲(수출액) 약 120억 달러('23년 aT)

- (전망) 내수시장 정체, K-푸드 수출경쟁력은 지속 강화 전망
 - 원재료 조달 리스크 완화, 낮은 인건비, 보호무역(관세부과) 대응 등으로 해외 생산공장 투자 확대 추세 → 수출 감소 요인

□ 국내 식품산업 강점

- (가공경쟁력) RCA 분석* 결과 김 등 수산 가공식품과 음료제조 부문에서 대한민국이 타 국가 대비 현시 비교우위 보유
 - * 현시비교우위지수: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대한민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대비 글로벌 X식품 수출시장에서 대한민국 X식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 (건강식품) 김치, 장류 등 발효식품 중심의 전통식품 보유
- (K 브랜드) 최근 K-푸드 수출 성장세는 K-컬처의 성공에 따른 대한민국 인지도 및 매력 상승에 기인
- (물류인프라) 세계은행 물류성과지수(LPI) 기준 물류 인프라(9위), 특히 우수한 항만·공항 인프라의 활용가능성
 - * 삼양식품 밀양공장: 부산항 인근 밀양에 수출전용 공장 설립 → 물류비 절감

□ 국내 식품산업 약점

- (수입산 원료의존) 농수산물식품 무역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수입의존도 평가지표* 모두 낮은 수준
 - * 식량자급률(49%), 식품자급률(64%), 가공용식품원료 수입의존도(68%)

<식품자급률>

- ▲ 식량자급률 = 국내 식량 생산량 / 국내 식량 소비량(국내 생산 - 수출 + 수입)
- ▲ 식품자급률도 동일한 논리로 정의 = 국내 식품 생산액 / 국내 식품 소비액
- ▲ 최근 3년 약 64% 수준으로 도출

- (영세성) 식품기업의 약 80%가 종업원 수 10명 이하, 약 68%가 종업원 수 5명 이하로 소규모 업체 위주 및 구인난 심화
- (작은 내수시장) 식품산업은 인구(양적), 국민소득(질적)과 연관되나 인구증가율 0%, 경제성장률 1%대 진입(25°)으로 정체 국면
- (규제 장벽) 신기술에 대한 규제로 선제적 시장확보에 한계
 - * GEO(교정)를 GMO(변형)과 구별하여 상용화하고자 하는「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 논의 부진, 유전자 교정·변형 산업 발전에 한계

참고 1

국내 농수산물식품산업 SWOT 분석

□ 국내 식품산업 SWOT

	S	W	O	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경쟁력 · 건강식품 · 물류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원료 의존도 · 영세성/인력난 · 작은 내수시장 · 규제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 브랜드 · 안정적 성장 · 푸드테크 주목 · 건강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무역 기조 · 원료수급 불안

□ SWOT MIX 전략 분석

항목	주요내용
S-O 강점을 살려 기회를 잡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푸드의 확산 및 글로벌 시장 성장 활용: 전통식품(김치, 장류 등)의 건강식 이미지와 높은 가공식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마케팅 전략을 개발 및 실행 ▪ 한국형 푸드테크(Food Tech)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첨단기술(AI, 로봇, 자동화)을 식품 생산 및 유통에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 육성
W-O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잡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 기업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 가공/유통 등 집적효과를 강화하는 등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 ▪ 신제품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대체육, GMO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성 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국제 인증 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규제 간소화 추진 ▪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신제품 개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 생산-유통-소비 연결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S-T 강점을 살려 위협을 극복하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 경쟁력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유통 네트워크 강화: 해외 주요 지역에 식품 산업 물류 거점을 마련하여 보호무역 조치와 국제 물류 리스크에 대응 ▪ 보호무역 강화 대비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트렌디, 건강 등 대체불가능한 제품경쟁력을 확보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차별화
W-T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돌파하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글로벌교섭력강화: 기업 간 공동 판매, 공동 구매 등을 실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교섭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 ▪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 지역 특산물과 연계된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수 시장의 소비 활성화 촉진 ▪ 대체 원료 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으로 원료 수급 안정화: 대체 원료 개발과 글로벌 다변화를 통해 기후 변화, 국제 갈등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 ▪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한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자동화와 스마트 제조 공정을 도입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과 품질 향상

3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농식품부) 「푸드테크산업법」 제정 등 기술혁신 중심의 전략 전개
 - (법령) 농어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 및 기본적 사항 규율을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운용
 - 최근 「푸드테크산업법」 을 제정('24)하여 식품산업 기술혁신 강조
 - (정책)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에 더해 <푸드테크산업발전방안>, <그린바이오산업육성전략>, <K-Food+수출혁신전략> 등 발표
 - * 식품산업정책과를 푸드테크정책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 단행('22)
- (해수부) 타 식품과 구별되는 수산식품의 생산·가공·보관 방식을 고려, 적합한 산업 진흥을 위한 「수산식품산업법」 제정('20), 운용
- (식약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신설('23)을 통해 식품 국제기준 선도, 국가간 규제외교 확장, 기업 규제민원 해소 노력
- (aT 등)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정보 제공, 품목 육성, 통관 및 물류지원, 현지 유통망 개척, 수출자금 융자 등 지원

4 정책수요

- (규제) 농수산식품, 바이오 분야 신기술 관련 국내 규제 완화 및 수출 시 규제정보 제공/규제대응 강화/국내외 규제격차 해소
- (지원) 대기업 포함 기업규모별 지원 정책 설계, 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공동 생산/물류체계 구축,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등
- (물류) 콜드체인, 전용 항구(터미널)-선박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등
- (인력) 외국인 노동력 활용을 위한 비자 개선, 자동화 지원 등
- (수출) 수출국 시장 정보 제공, K-브랜드 연계 마케팅 강화 등

참고 2

국내 농수산물산업 지원정책 관련 FGI 결과

□ 조사개요

- (일시/장소) '24.9.19. ~ 10.30. / 온라인미팅, 서울대 및 aT 본사
- (대상) 기업R&D·영업 담당자 4인,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10인
- (연구방법) 정부 지원정책의 주요내용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전문가 그룹인터뷰(FGI)를 통해 답변 정리

□ 키워드별 지원정책의 한계 및 정책수요

키워드	정책 한계	정책 수요
법과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및 첨단기술 관련 규제장벽 및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지원 관련 법 체계가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도입 및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법 마련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드체인 기반 시설 부족 • 물류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드체인 인프라 확충 • 전 유통 체계와 연계된 전용 항구·터미널·선박 등 물류인프라 구축
시장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부족 • 해외 바이어 신용정보 관리 체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시장 정보 제공 노력 • 바이어 정보 관리 체계 강화
무역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국(예: EU)의 복합식품 수입 규제, 성분 표시 및 안전성 기준 강화 등 식품 규제에 의한 어려움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규제 정보 제공, 규제 대응 지원 • 해외 기관과의 소통으로 직접 규제 해소 • 국내외 규제 격차 해소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컬처 확산에 맞춰 한식과 K-푸드 홍보가 부족한 실정 • 현지화·프리미엄화 등 국가별 전략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컬처와 연계한 통합 마케팅 전략 수립 • 프리미엄 브랜드 개발 • 해외 한식 문화 확산 지원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기업규모별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 • 중소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생산·물류 체계 구축
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간 협력 부족 •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 니즈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도의 클러스터 내 협력 체계 구축 • 기술혁신 지식공유 등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인력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노동력 확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및 자동화 설비 투자 지원

Ⅲ. 해외 식품산업 육성사례 및 시사점

1 국가별 식품산업 육성사례

- (네덜란드) 세계 식품수출 2위(1181억 달러, '23년) 국가로 유럽의 관문항(로테르담항)을 보유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 중개무역이 발달
 - 국가 중점 육성산업(Topsector Agri&Food) 지정 및 지원, 항만 인근 관련 인프라 집적 및 물류 효율화*, 클러스터 구축·강화**
 - * 로테르담 푸드허브: 콜드체인 물류시스템 및 R&D, 세관, 검역, 보안시설 집적
 - ** 바헤닝언 대학&연구소: 민간의 식품 R&D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역량
- (미국) 세계 식품수출 1위(1802억 달러, '23년) 국가로 산업 규모화를 통해 사료, 곡물 등 원료와 식품 전분야 경쟁력 확보
 - 규모화된 민간기업 자체 R&D(연간 약 60억 달러), USDA-FAS를 통한 수출국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및 다양한 수출 프로그램
- (일본) 일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건강식 등) 기반 안정적 수출 성장
 - 「농수산물수출촉진법」 제정 및 시행('20년), 일본산 식재료 서포터 인증제도 운영 등 일식당/식문화/식재료 브랜드 가치 제고

2 시사점

- (제도) 식품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하 다양한 제도(국가 중점 육성산업 지정, 법률 제정, 정책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 (인력) 학계(연구계)의 우수 인적역량(R&D) 기반 상호의존 클러스터
- (물류) 식품의 벌크(Bulk)로서의 성격 및 기업 편의성 등을 고려, 항만 물류인프라 중심의 집적효과 창출
- (시장확대) 브랜드 가치 제고, 시장 다변화 등 수출 환경 조성

IV. 국내 타 산업 육성사례 및 시사점

1 타 산업 육성사례

- (반도체) 산업태동기 국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 정책으로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제1의 수출품목(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 R&D 및 설비·시설투자 세액공제* 상향, 전력 등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계약학과) 및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국산화 추진
- *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 / R&D 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
- (화장품) 최근 대한민국 수출품목 중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수출 소비재('12년 10억\$ → '24년 102억\$)
 - 수출성장세에 따라 기초소재 개발, R&D 지원, 글로벌 규제협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기업의 혁신·영업 환경 조성

2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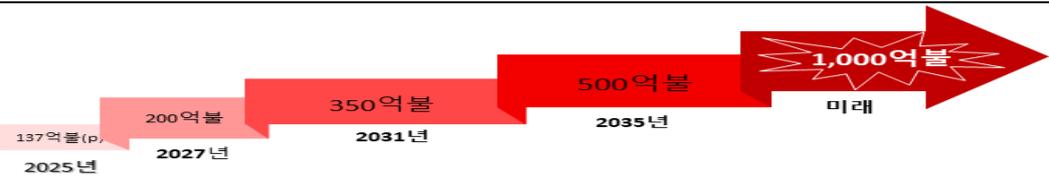
- (기회요인) K-컬처/브랜드의 확산, 아마존·유튜브 등 전 세계 광고·유통채널 개방 등 식품산업은 화장품산업*의 기회요인을 공유
- * 화장품은 국가나 브랜드의 매력·이미지를 소비하는 품목
- (성공요인) 상품기획-생산 분업화(특화) 구조로 시장 반응성 향상
- * 화장품산업 민간 ODM(코스맥스, 한국콜마 등)의 R&D 능력과 생산 능력(Capacity), 인프라로 수요 급증에 적기 대응 및 혁신제품 개발 → 다양한 인디업체의 성공(트렌디한 아이디어/레시피 제공을 통한 위탁생산) 요인
- ** 다만 식품은 제품차별성이 커 필요한 설비의 갭(GAP) 존재 → 트렌드에 맞춘 설비 조정 시 개별기업 과투자 리스크 → 높은 공적 지원 효과성
- (기초투자) 산업 태동기에 적극적인 R&D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우(기초연구, 장기연구, 대규모자본 등) 공공연구 수행, 전문인력 양성
- (환경조성)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시설·설비투자 세액공제, 규제외교 강화 등 정부의 사업 창출 환경 조성

V. 추진 전략 및 목표

비전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

로드맵



정책
방향

농수산식품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방위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세부
추진
과제

전략 1 원료 공급망 효율화 및 안정화

- 국내 생산기반 강화
- 해외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전략 2 첨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 첨단 바이오 식품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 민간투자 및 연구 지원
- 클러스터 활성화
- 인력 양성 및 확보

전략 3 전략적 유통·수출 지원

-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수출 지원
- K-푸드 브랜딩 강화
-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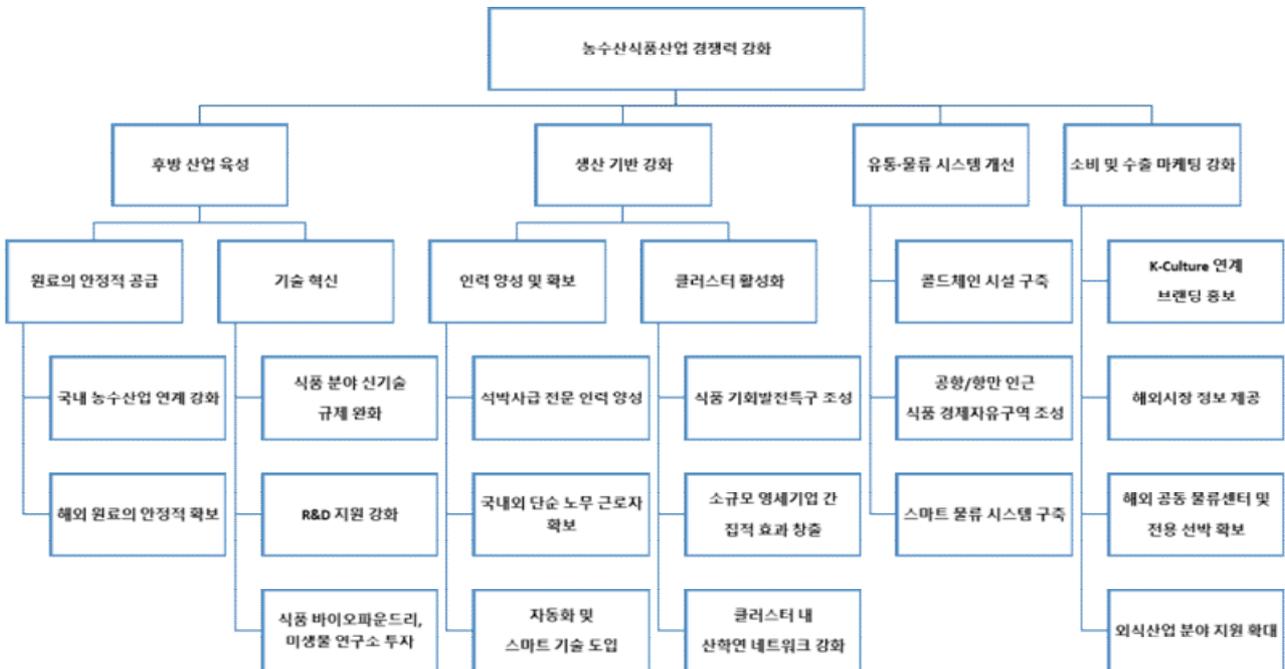
참고 3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AHP 분석

□ 조사개요

- (일시/장소) '24. 11. 1.~ 12. 13. / 온라인 설문조사
- (대상) 식품기업 종사자 14인, 부처·유관기관 5인, 학계·연구계 11명
- (연구방법) FGI·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목표 및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30인 대상으로 계층화분석법(AHP)을 시행

□ AHP 계층구조: SWOT, FGI 분석 → Value Chain에 따라 도출



□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우선순위) 조사 결과 ①K-컬처 연계 브랜딩 홍보, ②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③해외시장 정보 제공, ④자동화 및 스마트 기술 도입, ⑤해외공동물류센터 및 전용선박 확보 순서로 중요성 인식
- (주체별 시각) 업계는 직접적인 마케팅 지원 및 물류시스템 개선 등을 선호, 학계·연구계는 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 필요 인식

VI. 전략별 추진과제

전략 1. 원료 공급망 효율화 및 안정화

추진과제 1. 국내 생산기반 강화

- (구조조정) 생산요소의 재조정, 적소 투입을 통한 효율성 향상
 - (농업) 주요 양곡의 국내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벼 재배의 전략 작물 전환 유도 및 인센티브 강화
 -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전략작물 직불제, 공공비축미 배정 인센티브
 - (수산업) 어선어업, 양식업 업종별 생산구조 개선
 - (감척·규모화) 어선 감척 확대를 통해 과다 어선세력을 구조조정 하고, 선복량(140톤 미만) 제한 해제를 통한 어업 규모화·효율화
 - (양식지 변경) 기후변화, 시장성 등 환경변화에 기반한 양식지 양식면허 재조정 및 스마트양식장 확대
 - * 김 등 고부가원물 양식장으로의 전환(전복→김) 및 스마트가두리양식·RAS 등 스마트 양식기술 개발·보급 등
 - (유동화) 임대료·연금을 매개로 어선은행, 양식면허 임대제도를 운영하여 유희·노후 자본 생산요소의 재결합 및 생산성 향상
- (연계) 농수산업-식품기업 간 연결성 강화
 - (계약재배) 계약재배·양식 지원사업 확대 및 산지-수요업체 간 선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약재배 쏠단계 온라인화 추진
 - (지원사업) 계약재배 시 시설·장비 임차비(농어가), 신제품 개발비 및 홍보비(기업)를 지원하는 현 사업 지속 확대로 인센티브 지급
 - (플랫폼) '계약재배 정보 플랫폼' 운영을 통한 생산자-수요업체 (유통·식품·외식) 매칭, 구매 확정 및 정산처리(온라인)

- (비축관리) 기상 여건 등에 맞춰 비축량을 최적 관리*하고, 비축된 농수산물 보관기간 연장을 위한 신선비축체계** 구축

* AI를 활용해 기상상황, 작황·출하정보 등을 분석 후 최적 비축량 도출·관리

** 보관 전 살균방역, 노후 비축기지 현대화, CA저장고 신규 도입 등 검토

□ (규모화) 규모화를 통한 원료 생산의 비용효율성 제고

- (대규모 영농지대) 간척지 활용 등 농지 규모화를 통해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원료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 새만금농생명용지 7-1공구(약 500ha):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밀/콩/옥수수 등) 조성

**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서산 간척지 내 대규모(18.5만평) 농업 전용지 조성
→ 국내외 농업기업·정부·지자체 공동출자 SPC 설립 → 스마트팜 설치

- (공동 영농) 농지위탁, 임대차 등으로 인근 농지를 묶어 농업을 규모화·집단화할 수 있는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

추진과제 2. 해외 공급망 리스크 관리

- (다변화·다각화) 전쟁, 무역분쟁, 이상기후, 팬데믹 등 다양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한 원료 수입처 다변화* 및 수입방식 다각화**

*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산업부): 대체수입처 발굴·현장 검증, 샘플 원료 구매, 시험인증 및 시운전 지원

** 선물, 장기계약 등 원료공급 계약구조 다각화 시 금융지원

- (해외농어업 개발) 전략품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농지, 조업 쿼터 등 소유·임차 시 금융지원 강화(환변동보험료 지원, 이차보전 등)

- (인프라) 산지의 곡물 매집지, 수출 선적지 등에서 민간기업의 곡물 엘리베이터 지분 소유, 초장기 임차 시 금융지원

* 일본: 젠노(일본농협)는 미국 곡물엘리베이터 인수('79)를 시작으로 병기社 소유 미시시피 강변 곡물엘리베이터 35개 인수('21)

전략 2. 첨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추진과제 1. 첨단 바이오 식품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 (전략산업) 식품산업을 식량안보, 국가 경제, 미래 먹거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가 전략기술(산업)로 지정하여 첨단식품산업으로 육성
 - 과기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식품산업을 지정하여 시설·설비투자 세액공제, 대규모 투자 등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 *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바이오가 포함되어 있으나 레드(의료) 바이오 기술에 한정되어 그린.블루 바이오 등 식품분야 바이오 기술은 제외
- (공공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첨단식품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신기술 상용화 및 지속 가능 생산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
 - 식품바이오파운드리 : AI, 로봇 자동화, 합성생물학, 빅데이터 활용 → R&D, 시제품 생산 과정을 표준화·자동화·고속화 등 제조공정 혁신
 - 미생물 연구소 : 프로바이오틱스, 황산화 성분, 미생물 기반의 신소재(효소, 비타민, 향균 성분) 연구·개발
 - 단백질 연구소 : 식물성 단백질(콩, 완두콩, 밀), 미생물 단백질(미생물 발효 기반 단백질) 연구·개발 지원

<식품 공공연구 인프라 적정 입지 검토(안)>

▲ 식품바이오파운드리(예시: 부산/경남권역)

- 부산항 인근 식품 관련 시설 집적화(로테르담 푸드허브 사례)
- 밀양(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원(스마트 산업단지), 안동(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사업), 포항(스마트원예단지) 등 후방산업과의 연계성 고려

▲ 미생물연구소(예시: 대전/중부권역)

- 5개 바이오특화단지 중 한 곳(제6차 국가첨단전략사업위원회)
- KAIST(생명과학과, 공학생물학대학원, 생명화학공학과, 생물공정연구센터 등), 대덕연구단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관련 대학/기관과의 연계성
- 수도권과의 접근성: 우수인력 유입 가능성

▲ 단백질연구소(예시: 인천 수도권역)

- 인천 송도 바이오메가클러스터와 연계성 고려

※ 추가연구·공론화를 통한 입지 타당성 검토 필요

□ (R&D 투자 확대) 미래 식량 문제 해결과 글로벌 시장 선점, 첨단 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 차원의 R&D 집중 투자

- 미생물, 단백질, 효소, 대체육, 기능성 식품, 지속가능한 식품소재, 대체 수산물 등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제품화 촉진

구분	배양육	대체 우유 단백질	대체 계란 단백질	대체 감미료 (알룰로스 등)	클로렐라
적용기술	동물세포 배양	유전자 변형 미생물 발효	유전자 변형, 정밀 발효	유전자 편집을 통한 효소 개량	폐쇄형 광생물 반응, 유전자 편집
관련기업	Good Meat (싱가폴)	Perfect Day (미국)	The EVERY Co. (미국)	C제일제당 (한국)	대상 주식회사 (한국)
활용제품	햄버거, 너겟, 스테이크 등	아이스크림, 우유, 치즈 등	기존 계란 활용 제품	기존 설탕 활용 제품	기능성식품, 단백질 보충제 등
이미지					

□ (첨단 생산설비 도입) 자동화, 로봇 기술을 활용한 식품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고, 바이오 소재와 관련된 생산설비의 고도화

- 스마트 팩토리, 로봇 공정 시스템, 3D푸드 프린팅, 고압 가공기술, 세포배양 시스템, 효소 반응 시스템, 업사이클링 식품 가공 설비 등

추진과제 2. 민간투자 및 연구 지원

□ (규제 완화) 농식품부·해수부도 ^{가칭}농수산식품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그린·블루바이오 혁신기술의 시장출시-시험-검증 토대 구축

* 현재 과기부 등 7개 부처에서 규제샌드박스(1,403건) 운영 중

<(사례) 농어업위 규제정비 추진과제>

- ▲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 대마(헴프) 규제 완화 :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산업용 대마(헴프) 마약류 제외, 지정된 제한구역에서 재배를 허가하고, 이력제도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 ▲ 유전자교정생물체(GEO) 규제 완화 : 「유전자변형체법」 개정을 통해 외부 유전자를 주입·변형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와 구분되는 GEO에 대한 별도의 규제·관리조항 신설

- 특히, 지역 내 신기술·신제품 위주의 규제샌드박스형 '규제자유특구'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식품산업 혁신 성장 견인

* 기능성식품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증특례(전북) 등 추진 중

- (투자 유인) 자금조달 및 투자 인센티브 강화
 - (펀드) 농림수산물식품 모태펀드의 신사업 분야 지속 확장* 및 성공사례 홍보를 통한 민간투자 관심도 제고
 - * 신사업분야(반려동물, 전통주, 블루푸드테크) 특수목적 모태펀드 신설('24년)
 - (세액공제) 식품 바이오 기술의 국가 전략 기술 지정 등을 통해 식품 바이오분야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확대
- (R&D 지원) 대규모 자본 투입 또는 장기적 관점의 기초연구가 필요하거나, 한계자본 투입시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선정·지원
 - * 장기적 관점의 기초연구(과기부), 즉각 사업화 가능한 응용연구(농식품부/해수부)
 - 스마트팜 기술 융합 기능성 식품 소재 등 첨단기술 융합 기반 'K-식품소재' 기술 개발 강화
 - 수입의존형 기능성 식품 소재의 국산화 및 생산성 확대를 위한 공동 기획 R&D 지원 도입(연구기관-스마트팜-식품기업 등)
 - * 농업, IT, 식품·생명공학, 기계공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형 과제 선정 우대
 - 첨단 바이오·푸드테크 기술을 적용한 대체소재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R&D 프로젝트 추진
 - * 기존의 노지재배, 가축사육 방식을 대체하는 세포농업, 정밀발효 기술 중점 연구지원

추진과제 3. 클러스터 활성화

- (기회발전특구·경제자유구역 활용) 수도권, 공항·항만 인근 등 인프라 既구축 지역 추가 지정을 통해 국내생산-수출 유인 확대
 - 유망업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세제혜택)을 통한 공급망 내재화
 - *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월드푸드테크센터' 설립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 ** (인천시) 강화도 '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 (식품클러스터 연계망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 식품산업 집적지, 지자체, 산단, 혁신도시 등을 연계한 지역 K-Food 성장거점 조성
 - 전국 단위 식품산업 균형발전, 지역별 강점을 살린 산업 특화 및 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 추진
 - * 예시) 수도권(HMR 스마트 푸드), 충청권(기능성식품, 바이오 소재), 호남권(전통발효 식품, 친환경식품), 영남(해양바이오 수산가공식품), 강원(청정유기농, 고지대 특산물)
- (위탁 생산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투자비용 절감, 생산 효율성 및 신제품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첨단 식품 OEM, ODM 전문기업 육성 지원
 - *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초기 투자비 절감, 생산 인프라없이 고품질 신제품 출시, 신속한 시장 대응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다양한 제품 출시, 맞춤형 제품 개발 지원 브랜드별 특화 제품(기능성 식품, 대체육 등) 생산 등
- (첨단식품 특성화 대학 육성) 대학·산업·정부의 연구 역량을 집적하여 기업 요구 수준의 연구성과물 개발·제공을 위한 특성화 대학 육성
 - * 네덜란드 Food Valley 성공 요인 : 세계 1위 농업대학 바헤닝엔대학과 기업·정부의 '트리플 헬릭스 모델' 기반(대학·산업·정부 3주체가 상호협력 → 비즈니스 동반자)

추진과제 4. 인력 양성 및 확보

- (양적 확충) 외국인력 확보를 통한 단순노무 근로자 제공
 - (쿼터 확대) 계절근로(E-8, 농·어업), 고용허가제(E-9, 제조업), 선원(E-10, 어업) 쿼터 확대를 통한 산지 구인난 해소
 - * 발급상한('24→'25): 67,778→74,689(E8) / 165,000→130,000(E9) / 23,300→23,300(E10)
 - (인력 활용도)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특례 신설* 및 인력 활용 유연화**를 위한 「외국인고용법」 상 규제 완화
 - * E-9 비자만료 → 출국 → 재입국 절차 개선을 위한 비자 갱신(4년10월+4년10월)
 - ** (예시) 외식업 외국인 채용 시 요리·설거지 등 주방보조 가능, 홀서빙 불가
 - (사업장 고용한도 확대) 개별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
 - *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제조업(40→80명), 농축산업(25→50명)

- (질적 제고) 우수인력의 식품산업 유입을 위한 교육행정
 - (계약학과 확대) 학부/대학원-기업 연계 계약학과 지속 확대
 - * 농식품푸드테크 8개과('24) → 12개('27) / 블루푸드테크 1개('24) → 5개('27)
 - (장학금 지원) 식품 관련 과목 신설 및 전문화 트랙을 마련하고, 트랙 이수 및 대학원 진학·관련기업 채용 연계시 장학금 지급
- (자동화 지원) 추세적인 인력난 대응을 위해 AI,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스마트화 기술 도입 금융지원(구입비 보조금, 이차보전 등)

<(사례) 한국식품연구원 로봇활용 김치제조 공정>



- ▲ 단계별 표준화(배추투입, 심제거, 절임, 양념 혼합, 계량, 포장) → 솔루션 도입(다관절 로봇, 자동절단기, 컨베이어 등)
- ▲ 두산로보틱스 협업
- ▲ 도입 중소기업체는 비용의 70% 정부지원
- ▲ 로봇 2대 = 12명 투입 효과, 생산성 약 100% 증가, 제품 불량률 약 53% 감소

전략 3. 전략적 유통·수출 지원

추진과제 1.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 (물류센터) 물류센터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화·효율화
 - (공동물류센터) 해외 주요 물류거점 운영 중인 공동물류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일부 전용공간 제공, 비용 보전 및 컨설팅
 - * 로테르담/바르셀로나/자바2/LA → 엘우드 물류센터 등 11개소로 확대(~'27)
 - (시설구축 지원) 농수산식품분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지원
 - * 현재 47개소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식품부문 하림, 오투기, 켈리 등 인증
 - ** (당초) 인증 시 설비투자 금융지원 → (변경) 인증을 위한 정부지원 검토
 - (항만·공항 인프라 구축) 부산항, 인천항 및 가덕도 신공항을 농수산식품 수출·가공(배후단지 등) 첨단 허브항으로 조성 검토
 - * 항만 기반시설 확충(선석, 배후단지) 및 신규공항 건설 계획수립 시, 계획·설계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 협업 추진(아시아.미주 등 관문항.공항)

□ (유통망) 수출 공급망 리스크 관리

- (전용선박) 농수산물식품 수출입 물동량 일부는 전용 선박으로 운영 및 공급망 이슈 발생 시 임시선박 투입 관리
 - * 물류센터/선박 전용공간 할당(선물계약) 시 펀드 일부출자, 보험료 일부지원 등 업계-정부 비용 분담을 통한 리스크 관리방안 개발
- (콜드체인 구축) 국내·외 설비투자 금융지원 및 독자적인 냉동·냉장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대상 물류 비용 지원

추진과제 2.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수출 지원

□ (해외시장 정보 수집·유통 강화) 기본적 수출국 정보는 정부·공공 기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용 편의성 강화

* aT 농식품수출정보플랫폼, 식약처 원스톱식품수출정보창구 등

** 수출정보/규제정보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출에 성공·확대한 사례 전파 등

- aT 수출정보데스크 서비스 역량 강화(전담인력 배치, 소통채널 개선 등)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수출정보 제공 편의
- 주요 수출대상국별 해외 바이어·유통업체 협의체 및 파견기관 정례화를 통한 현지 시장정보 공유, 비관세장벽 대응, 공동 마케팅 협력 추진

□ (수출역량 강화) 수출을 위한 민간의 기획 및 코디네이션 역할 지원

- 수출 수요에 대응하고 현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우수 K-Food 컨설팅 기업* 적극 활용

*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상품기획-생산-브랜딩-마케팅-해외진출 등 전주기 솔루션을 제공 등 식품기업 성장 통합서비스(가칭 K-Food Agency) 컨설팅 병행

□ (수출 바우처 확대)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우수임산물패키지/수산물기업수출바우처 사업 등을 통한 민간의 수출 노력 지원

추진과제 3. K-푸드 브랜딩 강화

- (브랜드 인지도 확산) 국내외에서 기존 방송채널과 박람회 등에 더해 OTT, SNS에 'K-푸드' 인식도 확산을 위한 광고비 집행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협업을 통한 영화, 드라마, 예능 등 한식 관련 문화 콘텐츠 연계 마케팅 강화 및 한국 홍보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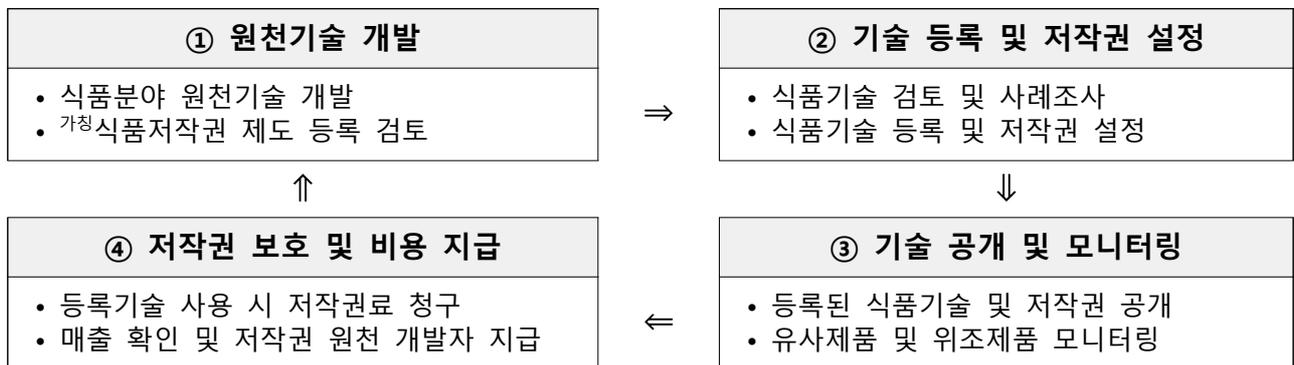
<(사례) K-푸드 관련 문화콘텐츠: 흑백요리사, 윤식당>



- (위조상품 대응) 민간 주도 식품 R&D 촉진과 위조상품(K-푸드 로고 등) 대응 강화를 위한 '가칭식품저작권' 제도 도입 검토(관계부처 협의 추진)
 - * 농식품부-특허청 공동 'K-푸드 위조상품 대응 협의체' 구성('24~)

❖ 위조상품 대응 및 식품안보 강화에 필요한 식품기술 보호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R&D 활성화 촉진

* 가칭식품저작권 제도: 기존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가공기술, 레시피, 조리법 등을 보호하고 유사 제품 생산시 원천 개발자에게 로열티(저작권)를 제공하는 제도



- (한식당 지원 확대) 우수·인기식당*의 지속 노출 및 B2B 유통가격 지원 등 K-푸드 경험의 일선(frontier)인 해외 한식당 지원 확대
 - * '가칭'해외 한식당 베스트 50' 심의·선정 → 광고노출, 콘텐츠 연계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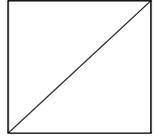
- (소비자경험 강화) 팝업스토어, 안테나샵 운영 지원을 통해 해외 소비자의 시식, 구매 경험 확대 및 K-food 인지도·호감도 증대
 - * K-푸드와 무관한 한국 관련 행사에도 부스 개설 등을 통한 지속 노출 시도

추진과제 4. 농수산물식품 수출촉진법 제정

- 수출 전담 조직 신설, 법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농수산물식품 수출촉진법」 제정 및 추진체계 정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양호섭 농수산식품팀장
연락처	전 화 : 02-6260-1231 E-mail : gksek@korea.kr

공 개



의안번호	제2025 - 3호	의 결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5. 03. 18. (제 24 회)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출 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위원장)	장 판 식
제출 연월일	2025. 3 18.	

1. 의결주문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2. 제안 이유

- 국제위생기준 수준(HACCP) 위생 관리 한계
 - 발효 등에 따른 제조 특성에 따라 유통 과정에서 식품 오염 가능성이 높고, 제조업체들의 영세성으로 HACCP 수준의 요건을 갖추는데 한계
 -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생기준으로 통관거부 사례 발생
- 국내산 원료 생산 불안정에 따른 전통식품 생산 등 활성화에 한계
 - 기후변화 등 국내산 생산이 불가능한 수산물(예: 명태)은 전량 수입산으로 제조·가공됨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으로 인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3. 주요내용

<농·수산 전통식품 공통>

- (전통식품 위생요건 강화) 전통식품 인증시 위생요건을 HACCP 수준으로 강화 또는 HACCP 인증 의무화 검토

<수산 전통식품>

- (위생관련 심사 간소화)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위생 관련 심사항목 생략
- (수입산 수산 원료 일부 허용) 기후변화 등 국내산 원료 공급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수입산 등 허용 검토

4. 참고사항(관계부처 협의 등)

- 정책연구 점검회의 개최(7.15., 8.29., 10.18., 10.30., 11.8.)
 - 전통식품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연구용역 피드백
- 제24차 농수산식품분과 개최(11.29.)
 - 전통식품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연구용역(경상국립대학교 문동현 교수, ~'24.11) 최종보고
 - '25년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신규 제안안건 논의
- 관계부처(농림부, 해수부) 협의(2.7, 2.11.)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견 조회
- 제25차 농수산식품분과 개최(2.12.)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 안건 의결

5. 첨부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 요약 1부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 전문 1부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

2025. 3.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요약)

□ 일반현황

- (목적)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인증제도 운영
- (근거) 전통식품(식품산업진흥법), 수산전통식품(수산식품산업법)
- (기본인증 요건) ①국산 농수산물 사용, ②예로부터 전승되어온 원리에 따라 제조, ③한국 역사 속 고유의 맛, 향, 색 등 풍미를 지닐 것
 - * 인증현황 : 전통식품(417개 업체/ 885개 품목), 수산전통식품(81개업체 92개 품목)
- (인증절차) ①서류검토 → ②공장심사* → ③제품심사후 인증
 - * 공장심사 항목 중 HACCP 인증 업체는 위생관련 항목 심사 생략 (농산품)

□ 문제점

- 국제위생기준 수준(HACCP) 위생 관리 한계
 - 발효 등에 따른 제조 특성에 따라 유통 과정에서 식품 오염 가능성이 높고, 제조업체들의 영세성으로 HACCP 수준의 요건을 갖추는데 한계
 -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생기준으로 통관거부 사례 발생(빈발)
 - * 미국 등 주요국 및 FAO, CODEX, WHO 등 국제기구들은 HACCP 기준 적용 권장(추세)
- 국내산 원료 생산 불안정에 따른 전통식품 생산 등 활성화에 한계
 - 기후변화 등 국내산 생산이 불가능한 수산물(예: 명태)은 전량 수입산으로 제조·가공됨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으로 인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농·수산 전통식품 공통>

- ① 국제기준 수준의 인증요건 강화 : ①HACCP 수준으로 심사를 강화하거나 ②전통식품 신청 요건을 HACCP 인증 업체로 의무화 검토*
 - * 업계 영세성 등을 고려, 컨설팅, 유지관리 비용 등 지원을 통해 단계적 도입 필요

<수산 전통식품>

- ② HACCP 인증업체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위생 관련 심사항목(4건) 생략 (농식품부 既절차 간소화, 해수부 도입 필요)
 - *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제2호 나목(작업장)·바목(용수 관리)·사목(개인 위생)·아목(환경 위생)의 심사를 생략
- ③ 수입산 수산 원료 일부 허용 : 기후변화 등 국내산 원료 공급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수입산 등 허용 검토(법령 개정 필요)

☐ ☐ 목 차 ☐ ☐

I. 일반현황	85
II. 문제점	88
III. 개선방안	91
참고 1 HACCP 인증제도 적용 대상	93
참고 2 HACCP 인증제도 도입시 소비자 지불의사금액 분석 ..	95
참고 3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96
참고 4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중 HACCP 미인증 품목 현황	97
참고 5 농수산 전통식품 품질인증 평가 사항	97
참고 6 HACCP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위생관련 심사기준 비교	98

I. 일반현황

□ 전통식품의 정의 요소

- ①(재료) 국산 농수산물 사용 의무
 - 국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과 수산물은 해당 지역의 토양, 기후 등에 영향을 받아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님
- ②(방법) 예로부터 오랜 기간 전승되어 온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
 -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제조 방식은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독특한 맛과 향을 내는 것이 특징임
- ③(전통성) 한국 역사 속에서 고유의 맛, 향, 색 등 고유의 풍미를 지니고, 식습관, 식문화, 사회제도와도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수산식품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전통식품”이란 <u>국산 농수산물을</u>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u>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u> <u>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u> 식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수산전통식품”이란 <u>국산 수산물을</u>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u>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u> <u>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u> 수산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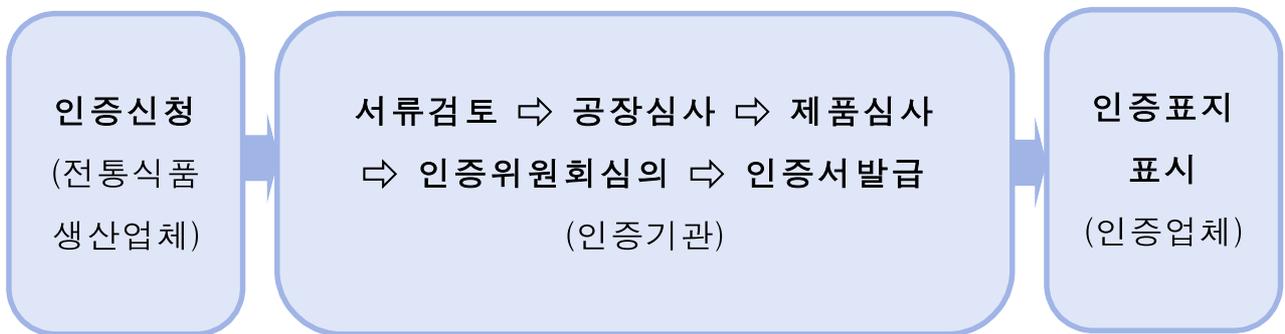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 우수한 농수산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장하는 제도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수산식품산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은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하여 고시

○ 인증 절차 및 기준

- 식품제조업체가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①서류검토, ②공장 심사, ③제품심사 실시
- 인증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합격 판정 시, 인증기관이 신청 업체에 인증서를 발급
- 인증업체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를 해당 제품에 표시할 수 있음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 인증절차 >



○ 전통식품 제조업체는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신청을 할 수 있음

- (1) 최근 1년(농식품) · 6개월(수산식품)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실적 1부
-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수산식품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지 제23호서식)

< 농수산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방법 및 판정기준 >

구분	심사방법	판정기준
공장 심사	최근 1년간(수산전통 6개월)의 관리 실적을 토대로 하여 10개 공장심사 평가항목별 30개 평가사항에 대하여 해당 품목별 표준규격에 의거 심사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A", "B", "C" 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 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70점 이상이면서 주원료의 국산 조달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가 "B" 이상이고(수산전통 미적용), 전체 평가사항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C" 가 5개 미만, 용수관리의 수질 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가 "C"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농산전통 미적용) 합격으로 처리
제품 심사	공장 심사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해당 품목의 표준규격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인증기관(또는 시험·검사 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해당 표준규격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

- 인증심사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인증심사 결과의 판정은 공장심사와 제품심사에서 모두 합격한 경우 인증함
 - 공장심사는 **10개의 공장심사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실시함
 - 제품심사는 표준규격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인증기관에 제품 심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농산품의 경우, HACCP 인증 업체는 **공장심사 항목 중 위생 관련 항목을 생략**하고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기준
 - *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제2호나목①(작업장)·바목②(용수 관리)·사목③(개인 위생)·아목④(환경 위생)의 심사 생략**

II. 문제점

- 전통식품 제품특성에 따른 국제위생기준 수준(HACCP) 위생 관리 한계
 - 우리 전통식품의 고유 특징인 발효, 미생물, 자연 재료, 저온 장기 숙성 등에 따라 제조·유통 과정에서 식품 오염 가능성(↑)
 - 아울러, 전통식품 제조업체들의 영세성으로 HACCP 수준의 시설·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는데 한계
 - * 미국과 일본, EU 등의 주요국과 FAO, CODEX, WHO 등 국제 기구들은 모든 식품류에 HACCP 기준 적용을 권장(추세)
 -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생기준으로 통관거부 사례 발생

< 전통식품 수출품의 통관거부 사례 >

연월	수입국	품목	HS Code	문제사유	조치
202403	대만	간장(soya sauce)	2103100000	성분(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 / Laurylsulfate 0.03 g/kg 검출	폐기 또는 반송
202309	일본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2005901000	비위생적제조 / 제품에 이물질이 혼입됨	리콜
202201	중국	간장(soya sauce)	2103100000	위생(미생물)/대장균 기준치 초과	폐기 또는 반송
202112	일본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2005901000	비위생적제조 / 비닐 조각이 혼입됨	리콜
202004	호주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2005901000	위생(미생물)/미생물 감염 가능성(소금의 저할당으로 인한)	리콜
202004	호주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2005901000	위생(미생물)/미생물 감염 가능성(소금의 저할당으로 인한)	리콜

* 자료: aT KATI 농식품 수출정보. 통관문제사례.

□ 국내산 원료 생산 불안정에 따른 전통식품 생산 등 활성화에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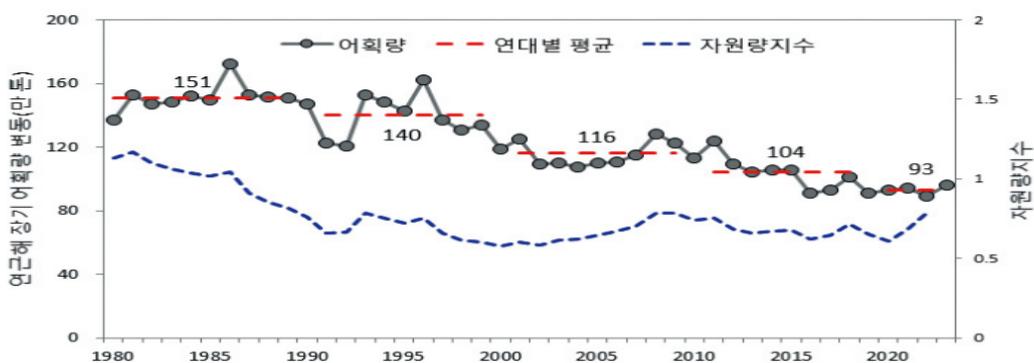
- 기후변화가 국내산 농수산물 공급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국내산 원료 수급 불안정 장기화 우려
- 특히, 수산물은 기후변화(고수온) 또는 남획으로 원료 수급 문제 심각
 - 명태는 전량 러시아 등 수입산을 가공하여 젓갈류 등 일반식품으로 생산·유통되는 실정이며
 - ‘수산전통식품 인증대상 품목’(고시6종*)에는 있으나 국내산 생산 불가로 인증 건수 “0” 등 활성화에 한계

* 젓갈류(명란, 창란, 명태아가미), 식해류(명태), 죽류(복어)

□ 수산자원 자원량 지수(어획량/표준화톤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였고,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980년대(‘80~’89년) 151만 톤 수준에서 2000년대(‘00~’09년) 116만 톤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 2020년대(‘20~’23년) 들어 93만 톤 수준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 연근해 어업생산량(어획량) 장기(1980~2023년)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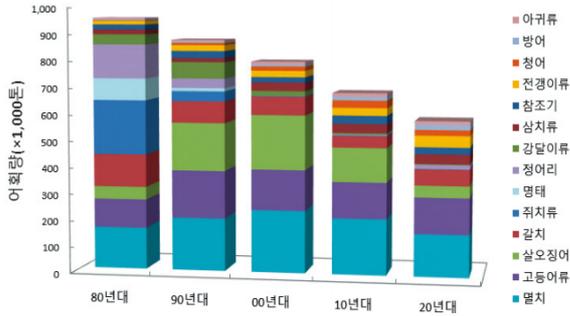
* 자료: 2024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

□ 수산물 중 명태는 2000년 이후 자원고갈 상태이며, 오징어, 멸치, 고등어 등도 어획량이 급감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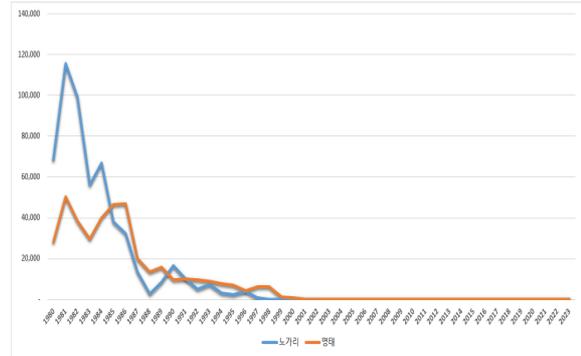
- ‘80~’90년대 연근해 대표적인 생산 어종인 명태는 2000년대 들어 자원이 고갈된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2010년대부터 살오징어는 어획량이 급감하였고, 멸치와 고등어류도 감소 또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연근해 주요 어종의 연대별 어획량 변화 >

어종별 생산량/수입량



명태의 어획량 변화



* 자료: 통계청

□ 명태는 전량 수입하여 수산전통식품으로 생산·소비되고 있으나 인증은 불가능

- 명태를 원료로 하는 젓갈류 등 6종(명란, 창란, 명태아가미젓갈, 명태식혜, 북어죽)은 인증 불가능(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제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 현재 명태는 약 20만톤(최근 5개년 평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해수부는 「수산식품산업법」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따라 지정하는 수산전통식품 명인 지정분야의 해당 원료(요건)를 개선·운영 중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계획안(공고) >

2021년	2022년 ~
<p>① 지정분야 : 수산전통식품* 분야</p> <p>*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수산식품을 말한다.</p> <p><신 설></p>	<p>3. 지정분야 : 수산전통식품* 분야</p> <p>* 수산물 -----</p> <p>-----</p> <p>-----</p> <p>-----</p> <p>-----</p> <p>다만, 우수한 수산 식품 기능인 발굴을 위해 전통 제조법으로서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거나,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수급이 불가능한 원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다.(중앙심의회에서 최종 결정)</p>

* 2명 지정 : 명란젓('22.3/장종수/부산 서구), 창란젓('23.12/문은희/강원 속초)

Ⅲ. 개선방안

<농·수산 전통식품 공통>

① 소비자 신뢰확보 등을 위한 국제기준 수준의 인증요건 강화

-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방법 및 판정기준, 평가 사항 등을 HACCP 수준으로 강화하거나,
-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요건을 HACCP 인증 업체로 의무화 하는 방안 검토
 - 다만, 전통식품 제조업계의 영세성 등을 고려, HACCP 컨설팅, 유지관리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단계적 도입 필요
 - *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중 HACCP 취득업체 현황 : 농식품(417개 업체 중 292개소 취득/70.0%), 수산식품(81개업체 중 56개소 취득/69.13%)

※ 수산전통식품 HACCP 도입시 소비자 지불의사금액의 상승 효과 분석(요약)

- 소비자는 전통식품품질인증, 식품명인, 위생인증(HACCP)을 받은 수산 식품에 대해서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천김의 경우, HACCP 인증시 2,552원 → 4,008원 가격 지불 의사 확인

< 주요 전통식품의 mWTP(소비자지불의사금액)(예시) >

[단위: 원/제품단위]

구분		브랜드				
		광천김	대천김	성경김	양반김	CJ명가김
평균가격		2,552	1,574	1,793	1,934	994
인증시 가격	전통식품 품질인증	3,907	2,929	3,148	3,289	2,349
	대한민국 식품명인	3,663	2,685	2,904	3,045	2,105
	HACCP	4,008	3,030	3,249	3,390	2,450

* 제품단위 : 4.5g×20개입 조미김 기준

<수산 전통식품>

② HACCP 인증업체 수산전통식품 심사 항목 일부 생략(해수부)

- 심사평가 항목 중복 및 유사 인증업무와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 수산 전통식품 신청업체 중 HACCP 인증 업체에 한해 4개 심사항목 생략(검토)
 - 예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기준
 - *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제2호나목(작업장)·바목(용수 관리)·사목(개인 위생)·아목(환경 위생)의 심사를 생략

- (영업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3조)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한 자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 중 HACCP를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농업인
 -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
- (품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 수산가공식품, 과자류, 음료류, 면류, 즉석섭취식품 등
 - 전년 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영업소 제조·가공 식품
 - * 다만 생산식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도서지역의 영업자이거나 생산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제외함(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

< HACCP 인증 의무대상 업체 >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 12의2.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3.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개요 >

구분	내용
의미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
목적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 요인의 발생 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
의무 적용 유형 (업체)	어묵 ·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 즉석조리식품(순대)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업체 어육소시지 · 음료류 · 초콜릿류 · 특수용도식품 · 과자·캔디류 · 빵류·떡류 · 국수·유탕면류 · 즉석섭취식품
HACCP 적용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운반급식),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소개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전통식품에 HACCP 인증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 지불의사금액 (mWTP)*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음

* mWTP(marginal Willingness to Pay) : 소비자가 1단위의 상품, 서비스를 추가로 소비할 경우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

○ 대표적 수산전통식품인 조미김의 HACCP 인증시 소비자들이 상당한 가치를 부여할 것임을 알 수 있음.

- mWTP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CJ 명가김이 HACCP 인증을 취득하면 WTP가 2,450원(=994원+1,456원)이 되어 광천김과 유사하게 됨

< 조미김의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mWTP) 추정결과 >

구분		WTP추정치(원) by Delta method		
		평균	최소	최대
브랜드 (기타)	광천김	2,552	2,139	2,964
	대천김	1,574	1,293	1,856
	지도표 성경김	1,793	1,471	2,116
	동원 양반김	1,934	1,669	2,200
	CJ명가김	994	682	1,306
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1,355	1,200	1,509
	대한민국식품명인	1,111	971	1,252
	HACCP	1,456	1,278	1,633

* 자료: 전통식품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2024)

참고 3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

한과류, 메주, 청국장, 국수류, 묵류, 구기자차, 건표고, 무말랭이, 꽃감, 엿, 조청, 약식, 고추장, 된장, 간장, 엿기름, 유자차, 참기름, 김치류, 두부, 죽류, 녹차, 식혜, 미숫가루, 삼계탕, 매실농축액, 가래떡, 흑염소추출액, 고춧가루, 등글레차, 누룽지, 대추차, 메밀가루, 도라지 가공품, 도토리가루, 솔잎 가공품, 들기름, 양념육류, 머루즙, 죽발, 칩즙, 수정과, 감잎차, 증편, 새알심, 시래기, 빵잎차, 당면, 만두, 부각, 순대, 전, 편육, 홍삼가공품, 곡물차, 육포, 농산물 조림, 축산물조림, 백삼가공품, 국화차, 막장, 생식, 수육, 백삼, 홍삼, 혼합장, 압착유, 건조채소류, 수제비, 연차, 생강차, 곰국, 절임류, 고구마말랭이, 썩차, 두유류, 절임배추, 발효식초, 오미자가공품, 볶음깨, 떡류, 장아찌류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1호

<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44개 품목)(제2조 관련) >

분류	품 목 명
젓갈류(22)	오징어, <u>명란</u> , <u>창란</u> , 조개, 꼴뚜기, 까나리, 어리굴, 소라, 곤쟁이, 멸치, 대구아가미, <u>명태아가미</u> , 토하, 자리, 새우, 오분자기, 밴댕이, 자하, 우렁쉥이(명게), 갈치속, 한치, 전복
액젓류(3)	멸치, 까나리, 새우
식해류(2)	가자미, <u>명태</u>
죽류(6)	<u>복어</u> , 대구, 전복, 홍합, 대합, 굴
게장류(3)	꽃게, 민꽃게, 참게
건제품(2)	굴비, 마른가닥미역
기타(6)	조미김, 고추장굴비, 재첩국, 양념장어, 부각류(해조류), 어간장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5-1호

참고 4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중 HACCP 미인증 품목 현황

전통식품	수산전통식품
간장(44), 된장(24), 고추장(13), 청국장(8) 등	조미김(8), 멸치액젓(5), 재첩국(1), 부각류(해조류)(3), 새우젓(1)

* 전통식품 : 총 417개 업체 중 125개 업체의 품목 수 / 수산전통식품 81개 업체 중 18개 업체의 품목 수

참고 5

농수산 전통식품 품질인증 평가 사항

심사항목	주요 평가 요건
1. 공장 입지	주위환경, 건물구조, 운송여건 및 차량진출입로 등
2. 작업장	교차오염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및 구획여부, 작업장내의 벽과 바닥의 구조, 작업장내의 온도 적정여부, 작업장내의 악취, 유해가스, 증기 등의 환기시설적정여부, 방충 및 방서시설, 작업장내부의 수세·세척·소독시설 설치 여부, 작업장 내의 청결상태 등
3. 제조설비	적정제조설비의 설치여부, 설비관리대장의 비치 및 관리의 적정성 등
4. 원료조달·관리	국내산 주원료조달방법 및 검증, 주원료 입고 관리적정성 등
5. 주요공정관리	제조작업표준 수립 및 이행여부, 최종제품의 해당규격 및 품질기준 검사여부,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통한 품질관리업무의 이행여부, 최종제품의 품질 수준 유지를 위한 입·출고관리의 적정성 등
6. 용수관리	용수의 수질, 급수시설, 취수원 및 관련법에 따른 수질기준에의 적정여부 등
7. 개인위생	종업원의 정기건강진단 및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위생장구의 착용상태, 외부인의 작업장내 출입 및 관리현황 등
8. 환경위생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태,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관리현황, 화장실의 구조, 위생장비 설치 및 관리상태 등
9. 유통체계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유통장비 및 유통방법의 적정성, 인증신청품목의 행정 처분유무 및 관리현황, 부적합품 처리의 적정성 등
10. 포장 및 표시	포장재의 적합성, 포장재의 입·출고 관리의 적정성, 표기사항의 적법성 및 관리현황 등

* 강조표시 심사항목은 위생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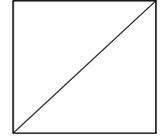
참고 6

HACCP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위생관련 심사기준 비교

구분	HACCP 인증심사 기준(식품제조가공업 기준) ※ 평가결과 : 0~3점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심사 기준(위생관련) ※ 평가결과 : 0~4점
영업장 관리	작업장	타 시설과 분리	작업장 용도별 분리 구획, 작업장 청결 유지도
		외부유입 차단할수 있도록 밀폐	
		청결구역 구분	
	건물 바닥, 벽, 천장	내수성 또는 내열성 재질 처리 및 청결 관리	작업장 바닥, 벽 구조와 기능 적절성
	배수 및 배관	배수가 잘 되어야 함	-
	출입구	복장 착용 방법 제시, 개인위생관리시설 구비, 오염가능성 물질 제거 후 작업	출입구에 수세, 세척, 소독 장비 활용성
	통로	종업원 이동경로 표시	-
	창	창유리 파손시 혼입 방지	-
	채광 및 조명	밝기 220룩스 유지, 선별 검사구역 육안 확인 조도 유지	-
채광 및 조명시설 내부식성 재질 사용, 파손 등 보호장치 구비			
부대시설	화장실, 탈의실 등은 별도 환기시설 구비	화장실 관리 상태 적절성	
	탈의실은 외출과 위생복장간 교차오염 방지		
위생 관리	작업 환경 관리 (동선계획 및 공정간 오염방지)	물류 및 종업원 이동동선 설정 준수	작업장 청결 유지도
		모든 단계에서 이물 관리계획 수립	
		청결일반구역별 위생 수칙 설정	
	작업 환경 관리(온도습도 관리)	공정별 온도계 설치	작업장내 제품 특성에 따른 온도 유지 가능성
	작업 환경 관리(환기시설 관리)	악취 등 배출 환기시설 설치	환기시설 충분성
	작업 환경 관리 (방충방서 관리)	흡배기구에 여과망이나 방충망 부착	설치류, 해충 침입 방지 가능성
		해충, 설치류 유입방지 관리, 유입여부 정기 확인	
		해충, 설치류 구제시 보호 조치후 실시	
	개인위생관리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항시 착용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등 착용 여부, 종업원 건강검진 여부
	폐기물 관리	폐기물, 폐수처리시설은 작업장과 격리 운영	오·폐수의 처리방법과 운영, 폐기물 처리방법과 운영
세척소독	세척소독 시설장비 구비	작업장 청결 유지도	
	세척소독방법 기준 게시		
	종업원 등 항목별 세척소독 기준 준비		
	세척소독 포함항목		
	소독용기구 보관 방법		
	세척소독 효과 확인 및 실시		
제조가공시설 설비 관리	제조가공시설간 오염발생 방지		
	설비의 소독 살균 가능		
	온도변화장치를 이용한 주기적 기록		
	식품취급시설의 정기적 점검, 정비, 결과보관		
냉장냉동시설 설비관리	냉장시설 -10도, 냉동 -18도 이하 유지	작업장내 제품 특성에 따른 온도 유지 가능성	
용수관리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적합한 지하수	먹는물관리법 수질기준에 맞는 용수	
	용수의 정기적 관리	용수의 오염가능 시설로부터 보호 정도	
	저수조, 배관 재질 및 잠금장치, 점검		
	저수조 청소 소독, 기록유지		
	비음용수 배관과 음용수 배관의 구분		
보관운송 관리	구입 및 입고	검사성적서에 적합한 원부자재 구입	-
	협력업소 관리	협력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점검 및 결과 기록	
		운반중 식품의 비식품촉산물과 구분	
	보관	운송차량 냉장 -10도, 냉동 -18도 이하 유지, 온도기록장치 부착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원료 및 완제품 관리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구분 및 바닥, 벽 비밀착 관리	
부적합 원부자재 등 별도 관리			
검사 관리	제품검사	검사계획에 의한 제품검사 실시	-
	시설 설비 기구 등 검사	검사결과 기록 내용	
		온도측정 장치, 검사용 장비 등 정기 교정	
회수프로그램 관리	부적합품, 반제품의 절차, 방법 수립	-	
	부적합품 원인규명, 확인 방법 강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양호섭 농수산식품팀장
연락처	전 화 : 02-6260-1231 E-mail : gksek@korea.kr

공 개



의안번호	제2024 - 4호	의 결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5. 3. 18. (제 24 회)	

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방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출 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미래산림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태 평 정 은 조
제출 연월일	2025. 3. 18.	

1. 의결주문

- 「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의결

2. 제안 이유

- 농산어촌 중에서도 농촌·어촌 대비 산촌의 소멸 위기가 심각
- 코로나19를 지나 국민의 산림복지 수요는 회복 및 증가추세로 이를 활용하여 산촌소멸위기 대응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 산림복지시설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적자운영 지속 및 기존 민간 시설에 대한 상생방안 부족
- 산림복지서비스 부문의 민간 활력 제고를 통한 산촌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민간참여 확대방안 마련 필요

3. 주요내용

- **(산림복지분야 민간투자 여건 강화)** 산림복지 PFI(공공시설 민간투자) 및 민간위탁 시범사업 검토, 지역별 민관정책협의체 구성, 수요 확대를 위한 산림휴양복지분야 위케이션 활성화
- **(민간 산림복지시설 경쟁력 강화)** 민간시설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민간시설 운영자 대상 복합경영 교육 지원, 산림복지서비스 분야 전국조직 운영 지원
- **(국공립 산림복지시설의 민간부문 지원역할 강화)**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사용료 합리화, 공립 산림복지시설 설계·운영에 민간 참여 의견 반영, 국공립복지시설의 지역 내 민간시설 지원 기능 강화

4. 참고사항(관계부처 협의 등)

- 농어업위 미래산림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2024.2.~2025.2./ 전체회의 6회, 워킹그룹회의 5회, 간담회 1회)
 - 연구용역 추진(2024.5.22. ~ 12.15.) / 사) 산림휴양복지학회
 - 관계부처 의견수렴·협의(2025.2.18. ~ 2.25.)
 - 산림청 휴양치유과, 복지교육과 서면 검토
 - 농어업위 미래산림특별위원회 검토 및 의결(2025.2.11.)
 - 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제13차 미래산림특별위원회 의결
- ※ 본 의안 의결 이후 해당 부처 및 기관과 이행계획 등을 위한 협의 예정

5. 첨부

- 「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방안」 (안)
요약 1부
- 「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방안」 (안)
전문 1부

심의 안건④

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방안

2025. 3.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방안 요약

□ 배경 및 필요성

- 농산어촌 중에서도 농촌·어촌 대비 산촌의 소멸 위기가 심각
 - * 산촌은 국토의 43.5%를 차지하나,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심각
- 국민의 산림복지 수요는 코로나19를 지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 공공 예산·운영의 한계로 산촌소멸 대응 및 다양한 국민수요 대응을 위해 민간참여 확대 필요성 대두

□ 추진과제

① 산림복지분야 민간투자 여건 강화

- 산림복지 PFI(공공시설 민간투자) 제도 도입 검토 및 산림복지 분야 민간위탁 운영 시범사업 검토
 - * PFI(Public Facilities Investment; 공공시설 민간투자): 지자체에서 부지선정 후 공모를 통해 민간이 복지시설 조성 및 일정기간 위탁 운영
- 지역별 민관정책협의체 구성 및 산림휴양복지분야 위케이션 활성화

② 민간 산림복지시설 경쟁력 강화

- 민간 산림복지시설 경영 지원조직 구성·운영
- 산림복지시설 운영자 대상 복합경영 교육 지원
- 민간 산림복지시설 품질 등급제 마련 및 인센티브 지원
- 산림복지서비스 분야 전국조직 운영 지원

③ 국공립 산림복지시설의 민간부문 지원역할 강화

- 공정한 경쟁여건 마련을 위해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사용료 합리화
- 공립 산림복지시설 설계·운영에 민간 참여 의견 반영을 위해 시·군·구청장 소속 자문위원회에서 산촌활성화·민간참여 확대 반영
 - * 중앙단위 **자문지원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 등)에서 시군구 자문위원회 검토 지원
- 운영혁신·공동홍보·행사공동개최 등 국공립복지시설의 지역 내 민간시설 지원 기능 강화

□ 기대 효과

- 산림복지 운영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산촌 지역의 경제·공동체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다양한 주체 참여로 국민 선택권 확대 및 접근성 향상으로 사회적 편익 증대

❖ 목 차 ❖

I. 배경 및 필요성	113
II. 현황 및 문제점	114
III. 추진과제	117
1. 산림복지분야 민간투자 여건 강화	117
2. 민간 산림복지시설 경쟁력 강화	119
3. 국공립 시설 민간부문 지원역할 강화	120
IV. 기대효과	122
[참고1] 타분야 심의·자문위원회 제도	123
[참고2] 일본의 Park-PFI(공모설치관리제도) 제도	124
[참고3]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사용료 비교	125
[참고4] 산림복지단지 개요 및 연혁	126
[참고5] 유사분야 단지 조성 관련 제도	127
[참고6] 국·공립 자연휴양림 위탁현황	128

I. 배경 및 필요성

- **(산촌소멸)** 산촌은 국토의 43.5%를 차지하나,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심각
 - 소멸위험지수 0.2미만의 산촌 소멸고위험지역은 최근 5년간 11.3%p 증가
 - * 산촌 소멸고위험 지역(읍면수, %): ('19) 368(79.0) → ('23) 421(90.3)(2024 산림임업전망)
 - 농어촌에 비해 산촌의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며, 40대 이하 연령층은 지속 감소** 추세
 -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농가 52.6% 어가 48.0% 임가 52.8%(2023년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 ** 장주연 외, 산촌의 인구이동 추이와 특성, 2022
- **(국민수요)** 분야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인원은 코로나19 시기를 지나 회복 및 증가하고 있어, 산림복지 수요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인원 현황(2023년 산림청 연차보고서, 2024)>

구 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인원(만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산림휴양	1,533.0	1,599.0	840.0	1,392.0	1,742.0	1,919.0
산림교육	483.0	630.0	313.7	467.3	560.7	567.3
산림치유	27.0	32.0	12.7	30.0	36.6	39.5

- **(민간참여)** 공공부문 산림복지서비스 예산·운영의 한계로 산촌소멸 문제 대응 및 다양한 국민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워 민간참여 확대 필요성 대두
 - 현재 산림복지서비스와 산촌개발사업은 정부·지자체 주도로 운영
 - 공공중심의 조성·운영은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효과적이나, 장기적으로 예산 제약과 운영 경직성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한계

☞ 산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한 투자와 참여가 필요

II.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산림복지정책)** 자연휴양림으로 시작된 국가 주도의 산림복지정책은 성숙된 여건을 바탕으로 민간주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 전문업·제공자 제도 도입(산림복지법 제정, '15) 숲경영체험림* 제도 도입('23.6) 등 민간의 산림복지서비스 참여 활성화 여건 마련
 - * 민간이 비교적 적은 면적의 산림을 활용하여 나무심기, 임산물 채취 등 숲경영 체험 및 휴양서비스 제공사업 가능. 숲속의집 등 숙박시설, 휴게·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 산촌소멸 위기 대응 및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필요
- **(산림복지시설)** 자연휴양림 중심 숙박 제공 산림복지시설에서 민간 분야의 이용자 수 급감으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요구 증가
 - (자연휴양림) 공공 분야의 시설·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이며, 특히 공립시설(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증가 및 이용자 수 급증
 - * 자연휴양림 시설현황 변화('19→'24, 개소): 국립 +4, 공립 +23, 사립 +0
 - * 자연휴양림 이용인원 변화율('19→'24, %): 국립 -7.8, 공립 +47.2, 사립 -47.7

운영주체	자연휴양림 시설현황(개소)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175	181	186	192	197	197
국립	43	44	46	46	46	47
공립(지자체)	109	113	116	122	127	132
사립	23	24	24	24	24	23

운영주체	자연휴양림 이용인원(천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15,988	10,972	14,007	19,098	19,289	19,979
국립	4,657	3,010	3,644	4,428	4,140	4,293
공립(지자체)	10,285	7,313	9,438	13,946	14,575	15,139
사립	1,046	649	925	724	574	547

* 산림청, 「산림임업통계연보」, 시설현황은 누계치로 작성

* 자연휴양림으로 등록되지 않은 산림복지분야 일반·영농법인은 통계에 미포함

- (기타) 그 외 산림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로 산림욕장·유아숲체험원·치유의숲은 공립, 숲속야영장은 사립으로 조성됨

시설 구분	시설현황(개소)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산림욕장	204	211	213	216	218	222
숲속야영장	14	24	27	34	40	45
치유의숲	28	33	38	45	49	54
유아숲체험원	269	334	388	426	465	499

- * 산림욕장: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산책·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음
- * 유아숲체험원: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도록 하는 시설
- * 숲속야영장: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
- * 치유의숲: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 포함)

□ (산림복지지구·단지)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쉽지 않은 구조

- (산림복지지구)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지역을 지구로 지정 가능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해제 가능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정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림복지단지) 국가·지자체 등 공익목적 법인만 단지 조성·운영 가능

- (사업시행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익법인이 단지의 조성·운영사업 시행 가능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복지공단(「산림복지법」 제32조)

- (계획승인절차)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 필요

* 조사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지보전협회, 그밖의 조사전문기관 인정 법인(「산림복지법」 제34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산림복지지구·단지의 정의

- 산림복지지구: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
- 산림복지단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

2 문제점

□ 민간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 존재

- 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우나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부족
- 지역 내 민민협력 및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 부족
- 중앙단위 협의체* 운영 결과,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지역사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이 어려움

* 소관부처에서 국·공·사립 자연휴양림 협의체 운영(산림청, '24)

□ 민간 사업자의 낮은 경쟁력으로 지속가능성 부족

- 운영자 대상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및 교육 체계 부족
- 차별화된 사업모델 부재로 공공 및 유사 민간시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례 발생
- 홍보·마케팅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기반 취약으로 시장 접근성 제한

□ 공공 중심의 산림복지시설 운영으로 민간시장 성장기회 제한

- 국공립 시설이 시장 지배적 공급자로 자리잡아 민간의 진입 장벽 역할
- 공공시설의 낮은 사용료 정책으로 민간시설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 도태
- * 물가관리로 인해 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의 가격인상이 민간 대비 60~80% 수준으로 제한되고 있음
-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 의견의 실질적 반영 미흡 및 공립 주도의 시설 조성 지속

Ⅲ. 추진과제

1 산림복지분야 민간투자 여건 강화

① 산림복지 PFI 제도 도입 검토

* PFI(Public Facilities Investment; 공공시설 민간투자)

- (선정 후 공모방식) 지자체에서 부지선정* 후 공모를 통해 민간이 복지시설 조성 및 일정기간 위탁 운영

* 장기적으로 민간이 산림복지시설 조성·운영 주체에 참여하는 방안 고려

- 지역 내 산림복지시설이 위치한 공공 공간을 선정하여 소규모 PFI 사업 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필요

< 참고. 일본의 Park PFI 운영사례(참고2) >

- 위치/면적 : 요코하마 동물의 숲 공원 중 미정비구역 일부(약 3.3ha)
- 허가기간/소유권 : 최장 20년 / 민간 소유(허가기간 동안) → 종료 시 시설 원상복구
- 비용부담 : 요코하마시 일부 지원(상한액 2,000천엔) 및 사업자 자부담
- 기타사항 : 공모대상 공원시설 이용자 편의(고령, 장애 등 다양한 이용자 고려), 자연 친화적인 시설 설치 등

- (민관합동 컨소시엄 방식) 장기적으로 민관합동(국·공사) 컨소시엄으로 산림복지단지 입지 설정 및 단지를 조성·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R&D 추진 검토

* 컨소시엄 방식 조성·운영과정에서 인근 산촌주민의 참여 또는 경제적·사회적 영향 고려 필요

② 산림복지분야 민간위탁 운영 시범사업 검토

- (내용) 지자체에서 조성까지 마친 후 공모를 통해 협회·법인 등 민간에서 일정기간 위탁운영
- (추진유형) 신규 조성 시 민간참여 강화하되, 기존시설은 시설별 검토를 통해 일부 수익시설의 민간위탁 검토
 - (기존시설) 숙박·편의시설 등 시설물의 일부에 대해 민간위탁 고려
 - (신규조성) 민간위탁 또는 이에 준하는 민간참여 방안 검토
- (공모방식) 가점제로 진행, 산촌활성화를 위해 지역임업인·주민 참여 독려
-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정기적인 운영 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민간 참여의 지속가능성 제고

③ 지역 연합체 지원 및 정책협의체 구성

- (민간시설 지역연합체) 일정 지역에서 민간시설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 운영·홍보 등 사업을 운영할 경우 지자체에서 전문가 고용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필요
 - * (참고) 독일 흑림 즈바이탈레란트(Zweitalerland) 산촌마을 사례: 지역별 협의체 7개소가 연합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 운영하여 홍보 및 사업 운영, 연간 3~4회의 협의체 전체회의를 통해 의사 결정
-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사유림 소유주들 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역의 자치공동체 조직 형성·유지를 지원하는 개념
- (지역별 민관정책 협의체) 산림복지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별 민관 정책 협의체 구성
 - 지역 내 정책담당자, 산림복지분야 단체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정책 방향 공유 및 상호 협조를 위해 협의체 회의 분기별 개최
 - * 전국 단위보다는 지역별 회의 개최가 적절하다는 의견 다수 ('24년 협의체 운영 결과)
 - * 기존 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도의 활용 또는 개선 필요

④ ESG경영 연계를 통한 산림휴양복지분야 위케이션 활성화

- 산촌 대상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공기관·대기업 등에서 자연휴양림 위케이션 실시를 유도하여 휴양수요 확대
- 지방소멸 대응(산촌소멸 대응)이나 저출산고령화대책 일환으로 운영 중인 기금 등 활용 검토
- 산림휴양 위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검토 필요

< 위케이션 활성화 지원제도(안)>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주체: 위케이션 시설 인프라 구축(작업공간, 통신시설)○ 기관·기업: 위케이션 프로그램 운영비(숲교육숲체험 등), 산촌 협력사업 개발○ 산촌주민: 직업훈련·교육 제공으로 산촌 협력사업에 참여 |
|--|

2

민간 산림복지시설 경쟁력 강화

① 경영컨설팅 지원

- (내용) 민간 산림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을 위한 지원조직 구성·운영
* 경영컨설팅 담당기관(안):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 기존시설은 사업계획 수립·운영·사후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으로 민간사업자의 역량 강화 지원
- 신규시설은 희망자에 한하여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자문의견 제공 등 사전 경영컨설팅 지원

② 교육지원 체계 강화

- 산림복지시설 운영자 대상 복합경영 교육 지원을 통해 숙박매출 의존도 완화 및 수익구조 다각화
* (참고) 농업회사법인 백련동 편백농원: 장성 축령산 국유림명품숲 인근에서 편백나무숲 체험-숙박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접 생산한 식재료로 식당 운영 및 편백나무 가공 목재제품 생산·판매
- 산림복지관련 협회·전문기관 등에 산림복지전문업·관광업 등 복합경영 교육과정 지원 강화
- 복지서비스 기획, 홍보마케팅 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이수 지원

③ 민간시설 품질 등급제 마련 및 인센티브 지원 장기 검토

- 민간시설의 숙박·편의시설 및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등급제 마련 및 인센티브 지원 검토
 -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및 이용 증가를 위해 민간 산림복지시설의 신청에 따라 시설·서비스 수준에 따른 등급 부여
 - * 등급 표시(안): 호텔업과 유사하게 별(☆) 또는 산림복지시설 특색을 반영하여 산(△), 나뭇잎(♻), 나무(木) 등 모양 사용
 - 일정 등급 충족 시 국가인증 홍보물(현판, 인증서 등) 지급 및 지자체·관광공사 등 연계 해당 시설 홍보·마케팅

< 참고: 호텔업의 등급결정(안)>

- 개요: 「관광진흥법」에 따라 숙박시설(호텔업)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등급기준 충족에 따라 1~5성급 구분)
- 근거 법령: 「관광진흥법」 법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및 시행령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 시기·대상: 1971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텔업 등록자(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 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
- 평가 주기: 호텔사업자 3년 주기 안전·위생·서비스 평가
(‘14년 9월부터 의무, 호텔업 외 관광숙박시설·야영장은 임의)
- 수탁기관(등급결정 기관): (‘21~현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제주 외 전국),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과거 한국관광공사 수탁(‘15~’20)

4 전국조직 운영 지원

- 산림복지서비스 분야 전국 연합회를 구성할 경우, 참여 사업자에게 공동 마케팅 사업 등에 보조금 지원 검토

3 국공립 시설 민간부문 지원역할 강화

1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사용료 합리화

- 국공립 자연휴양림 등 숙박제공 산림복지시설 사용료는 민간의 60~80% 수준으로 공정한 경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준 합리화 필요(참고3)
- 사용료는 민간과 비교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되, 취약계층·보훈대상자·출산가구 등에는 할인
- * 국공립시설의 경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부족지역 보완 등 국민 삶의질 증진 차원 접근 강화

2 공립 산림복지시설 설계·운영에 민간 참여 의견 반영

- (개요) 공립시설의 신설·증축 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 지원기관의 위원회 지원을 통해 산촌활성화·민간참여 확대수단 반영 등 타당성 검토 자문 실시

- (주체)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의견 제시
 - * 자문위원회에는 산림분야 전문기관, 국책연구기관, 관련 협회, 지역임업인 등이 위원으로 참여
- (자문내용) 산촌활성화, 민간참여 확대수단 반영, 경제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등 지역·민간업계와 상생가능한 방안 마련
- (자문대상) 공립자연휴양림 등 숙박 제공 산림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신설·증축 계획 수립 시 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문하도록 함
- (지원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등을 자문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담당 팀 신설 및 산촌활성화방안 등 분석 지원
- (평가제도) 신설 후 5년간 주기적 평가를 통해 공립 산림복지시설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 지원

<참고: 타분야 심의·자문위원회 사례>

위원회명	근거 법률	설치단위	특징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온천법 (시행령)	시·군·구청장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활동 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위탁운영단체	관청이 아니라 설치·운영하는 자가 구성 수련시설 운영에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심의위원회 특별건설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도 국방부 발주청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지방심의위: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등 심의
교육시설정책위원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도로법	국토교통부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심의 * 위임된 경우 시·도, 시·군·구 위원회에서 심의

③ 국공립복지시설의 지역 내 민간시설 지원 기능 강화

- 국립시설은 거점 휴양림을 중심으로 시설운영기준 혁신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운영 및 인근 산림복지시설에 노하우 전달
- 일본사례*와 같이 공립시설 운영 시 지역내 민간시설과 공동 홍보·행사공동개최 등 지자체의 상생역할 부여

< 참고: 일본의 '산림서비스산업 추진제도' >

- 지역 내 사유림·공유림을 연결해 관광·체험·레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자체가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복지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국비·지방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도록 지원
- 특정 구역을 단지로 지정하는 산림복지단지와 달리 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지역 전체를 숲 기반 산업·관광으로 육성하는 분산·연계형 모델
- 개별 숲(사유+공유림), 마을,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제공

IV. 기대효과

- 산림복지 운영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산촌 지역의 경제·공동체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다양한 주체 참여로 국민 선택권 확대 및 접근성 향상으로 사회적 편익 증대

□ 온천법

-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 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위탁 운영단체가 운영하여야 하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 건설기술진흥법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 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등 시행령제6조각호의 사항
- (지방건설심의위원회)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등 시행령제17조제2항각호의 사항
- (특별건설심의위원회)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등 시행령제18조제4항각호의 사항
- 기술자문위원회: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에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등 시행령제19조제5항각호의 사항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교육시설정책위원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법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등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제7조각호의 사항

□ 도로법

-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등 도로정책에 관한 법제9조제1항각호의 사항

참고 2

일본의 Park-PFI(공모설치관리제도) 제도

□ 제도 개요

- (배경) 공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비·관리비용의 지자체 재정 한계에 따라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요구 및 일본 정부의 「도시공원법」 개정*(’17년)

* 개정방향 : 기존 공원 재고 관리, 민간 비즈니스와 연계, 개성 있는 공원 창출 등

- (개념) 민간 자본을 활용한 도시공원의 새로운 정비·관리기법

카페, 레스토랑 등 공원 이용자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원 시설(공모대상공원시설)의 설치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여 주변 지역 산책로, 광장 등의 공원 시설 정비를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자를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는 제도

□ Park-PFI(공모설치관리제도) 특례사항

※ 국토교통성(2018)

구 분	특례사항
설치관리허가기간 특례	· 수익시설(카페, 레스토랑 등)의 설치관리허가기간 연장(10년→20년)
건폐율 특례	·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등 설치하는 경우 10% 건폐율 허용 * 일본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 건폐율은 2%를 넘을 수 없음
점용시설 특례	· Park-PFI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자전거 주차장, 간판, 광고탑 등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 시설 설치 허용

□ 주요사례(포레스트 어드벤처 요코하마)

구 분	특례사항
모리오카시 킷푸시 녹지	· 사업대상구역 : 4,042㎡ · 허가기간 : 20년 · 수익시설 : 음식점 9개(커피, 레스토랑 등) · 특정공원시설 : 잔디광장 조성, 공중 화장실 정비 및 24시간 개방
포레스트 어드벤처 요코하마	· 사업구역 : 30,000㎡(요코하마 동물의 숲 공원 미정비구역) · 허가기간 : 20년 · 수익시설 : 숲놀이 어드벤처 스포츠 * (이용료) 코스별 1인당 1,500엔~3,800엔 * 시설 내 유모차, 휠체어 이동 가능 · 특정공원시설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숲과 자연 이용 시설



킷푸시 녹지 사업 대상지



포레스트 어드벤처 사업 대상지



참고 3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사용료 비교

□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 기준

○ (근거)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17.11., 산림청 고시)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개 인	단 체		
산림치유원 및 산림교육센터	- 어 른	1인*1일	1,000	800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
	- 청 소 년	1인*1일	600	500	
	- 노인 및 어린이	1인*1일	300	200	
	- 유 아 - 다자녀 가정 - 장애인 - 지역주민 - 국가보훈대상자 - 숲사랑지도원 - 숲사랑소년단원		면 제		

※ 시설의 장은 기간별 인원별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합산한 통합이용료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국·공·사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현황

○ 자연휴양림

지역	유형	시설명	시설 이용료(숙박, 주말 기준)
인천/ 경기	국립	유명산자연휴양림	· 82,000원(23㎡) ~ 134,000원(39㎡) · 4인실 기준 76,000원
		산음자연휴양림	· 60,000원(17㎡) ~ 173,000원(52㎡) · 4인실 기준 82,000원
	공립	석모도자연휴양림	· 80,000원(23㎡) ~ 375,000원(127㎡) · 4인실 기준 80,000원
		축령산자연휴양림	· 40,000원(23㎡) ~ 300,000원(155㎡) · 4인실 기준 60,000원
	사립	양평설매재자연휴양림	· 110,000원(18㎡) ~ 360,000원(109㎡) · 4인실 기준 160,000원~180,000원
		청평자연휴양림	· 120,000원(33㎡) ~ 360,000원(109㎡) · 4인실 기준 120,000원~170,000원
강원	국립	가리왕산자연휴양림	· 82,000원(26㎡) ~ 173,000원(49㎡) · 4인실 기준 82,000원
		백운산자연휴양림	· 82,000원(24㎡) ~ 134,000원(38㎡) · 4인실 기준 82,000원
	공립	강릉임해자연휴양림	· 100,000원(28㎡) ~ 130,000원(36㎡) · 4인실 기준 10,000원
		춘천숲자연휴양림	· 60,000원(30㎡) ~ 120,000원(42㎡) · 4인실 기준 60,000원 ~ 80,000원
	사립	피노키오자연휴양림	· 120,000원(41㎡) ~ 390,000원(79㎡) · 4인실 기준 120,000원~200,000원
		삼척활기자연휴양림	· 102,000원(29㎡) ~ 173,000원(56㎡) · 4인실 기준 130,000원

참고 4

산림복지단지 개요 및 연혁

□ 개요

- (목적)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근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48조
- (정의)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

* 산림복지지구 :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

□ 정책 추진 연혁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체계 구축계획」 수립('09, 산림청)
-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13, 국회)
- 산림복지 비전 선포식 '산림복지종합계획' 발표('13, 산림청)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5.3.27.) 및 시행('16.3.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16.4.18.)

□ [참고] 산림복지지구 지정 현황

연번	시·도	지구명	지정면적	고시일자
1	전라북도 진안군	국립 지덕권 산림복지지구	617ha	'18.12.28.
2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 산림복지지구	92ha	'18.01.11.
3	경상북도 봉화군	문수산 산림복지지구	100ha	'17.12.28.
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	149ha	'19.3.19.
5	강원도 동해시	동해 비천 산림복지지구	88.6ha	'17.12.28.
6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266ha	'18.07.17.
7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	147ha	'20.7.10.

참고 5

유사분야 단지 조성 관련 제도

□ 농공단지 조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관련법령)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구분	비고
농공단지 지정	· (승인) 시·도지사
입지 선정	· (선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에 따라 적정입지 선정
입지 등의 적정성·타당성 조사	· (수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전 한국농어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 문제 검토 필요
현지실사	· 시·도지사는 필요 시 입지선정 기준에 의한 현지실사 가능 · 농공단지개발사업 수요검증을 위한 수요검증반 구성 및 수요검증* 실시 * 입주 예정기업 수요면적의 적정성, 해양 농공단지의 분양가능성, 인근 농공단지 개발 현황 등
실시계획 작성	· (수행)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 · 공간배분, 업종별 배치, 경관보전,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준
관리기본계획 수립	· (수립)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승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관광단지 조성

-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구분	비고
기본계획수립	· (수립) 시·도지사 · (승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관광단지 지정	· (신청)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 시·도지사 혹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조사·측량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 실시
조성계획 수립	· (수립) 시장·군수·구청장 혹은 공공법인·민간개발자 · (승인) 시·도지사
조성계획 시행	· (시행) 사업시행자
실효 및 취소 등	·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날에 지정 효력 상실

참고 6

국·공립 자연휴양림 위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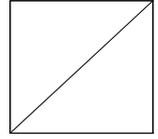
□ **위탁현황(국립 2개소, 공립 47개소)**

연번	소유주체	휴양림명	수탁자	위탁기간	위탁근거
1	산림청	제주절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4.01.01.~'25.12.31.	법 제22조
2	산림청	서귀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4.01.01.~'25.12.31	법 제22조
3	대구 달성군	비슬산	달성군시설관리공단	'14.04.0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4	대구 달성군	화원	달성군시설관리공단	'14.04.0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5	인천 강화군	석모도	강화군시설관리공단	'21.07.0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6	대전광역시	장태산	대전광역시산림조합	'21.01.01~'28.12.31	영 제10조제1항제1호
7	경기 가평군	칼봉산	가평시설관리공단	'08.06.30.~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8	경기 의왕시	바라산	의왕도시공사	'25.01.01~'29.12.31.	영 제10조제1항제3호
9	경기 양평군	백운봉	양평공사	'22.01.01.~해지 시	양평군 조례 제10조
10	경기 포천시	천보산	포천도시공사	'23.01.0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11	경기 화성시	무봉산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	'23.10.01.~2026.09.30.	영 제10조제1항제1의2호
12	강원 춘천시	춘천숲	(주)씨씨포레스트	'24.02.25.~'29.02.24.	영 제10조제1항제4호
13	강원 원주시	치악산	원주시산림조합	'21.01.01.~'25.12.31.	영 제10조제1항제1호
14	강원 강릉시	안인진임해	강릉시 관광개발공사	'18.01.0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15	강원 홍천군	가리산	홍천군산림조합	'20.01.0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1호
16	강원 영월군	망경대산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15.11.02.~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17	강원 평창군	평창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21.04.0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1호
18	강원 정선군	동강전망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18.12.0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19	강원 인제군	하주	인제군산림조합	'25.01.01.~'27.12.31	영 제10조제1항제1호
20	강원 인제군	갯골	인제군산림조합	'23.10.01.~'26.09.30	영 제10조제1항제1호
21	강원 태백시	태백고원	태백시시설관리공단	'24.04.01~해지 시	태백시 조례 제19조, 제20조
22	충북 청주시	옥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7.01.0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23	충북 충주시	봉황	충주시시설관리공단	'17.01.0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24	충북 충주시	계명산	충주시시설관리공단	'17.01.0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25	충북 충주시	문성	충주시시설관리공단	'17.01.0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26	충북 단양군	소선암	단양관광관리공단	'17.01.0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27	충북 단양군	소백산	단양관광관리공단	'22.01.0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28	충남 천안시	태학산	천안시시설관리공단	'12.01.0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29	충남 아산시	영인산	아산시시설관리공단	'17.01.02.~'22.12.31.	영 제10조제1항제3호
30	충남 부여군	만수산	부여군시설관리공단	'13.08.05.~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31	전북 남원시	남원흥부골	(사)자연휴양림협회	'20.01.02.~'25.12.31.	영 제10조제1항제2호
32	전북 무주군	향로산	(사)산림휴양문화협회	'25.01.01.~'26.12.31.	영 제10조제1항제4호
33	전북 임실군	세심	(주)에던 최민수	'19.06.03.~'25.06.02.	영 제10조제1항제4호
34	전북 완주군	고산	완주시시설관리공단	'25.01.01.~'해지 시.	완주군 조례 20조
35	전남 장흥군	유치	금진임업영농조합법인	'22.01.01.~'27.12.31.	영 제10조제1항제4호
36	전남 여수시	봉황산	여수시도시관리공단	'21.09.01.~'27.08.31.	영 제10조제1항제3호
37	경북 경주시	토함산	경주시시설관리공단	'17.05.0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38	경북 안동시	계명산	안동시설관리공단	'18.01.0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39	경북 구미시	옥성	구미시설공단	'22.01.01.~'26.12.31.	영 제10조제1항제3호
40	경북 문경시	불정	문경관광진흥공단	'07.05.23~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41	경북 청도군	청도	청도군산림조합	'25.01.01.~'27.12.31.	영 제10조제1항제3호
42	경상북도	안동호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24.07.01.~'26.12.31.	경북도 조례 제5조제3항
43	경상북도	팔공산금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24.07.01.~'26.12.31	경북도 조례 제5조제3항
44	경북 김천시	수도산	김천시시설관리공단	'23.06.0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45	경북 영천시	운주산승마	영천시시설관리공단	'20.07.0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46	경북 포항시	비학산	포항시산림조합	'23.01.01.~'25.12.31.	영 제10조제1항제3호
47	경남 거제시	거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93.1.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48	경남 양산시	대운산	양산시시설관리공단	'09.1.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3호
49	경남 창녕군	화왕산	창녕군산림조합	'10.1.1~해지 시	영 제10조제1항제1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엄성준 농어촌정책팀장
연락처	전 화 : 02-6260-1221 E-mail : nicengirl@korea.kr

비공개



의안번호	제2025 - 5호	의 결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5. 3. 18. (제 24 회)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출 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태 평
제출 연월일	2025. 3. 18.	

1. 의결주문

-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에 대한 의결

2. 제안이유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4개 특별위원회* 운영 중

* 미래산림특위(존속기간 : '23.3.~'25.3.), 미래수산특위('23.3.~'25.3.), 세계개선특위('23.5.~'25.5.), 바이오경제특위('24.6.~ '25.6)

- 농특위법 시행령 상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시행령 제6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④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25년 6월에 종료예정인 바이오경제특위는 논의 체계 연속성 확보와 특정 현안* 대응을 위해 존속기간 연장 필요

* 바이오기술을 응용한 연구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등을 통해 농수산식품 분야 바이오경제 미래비전 제시

3. 주요내용

-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존속 기간을 1년 연장

특별위원회	당초 기간	연장 기간	연장 사유(필요성)
바이오경제특위	'24.6.~'25.6.	'25.6.~'26.6.	식품 바이오 규제 혁신, 농축수산 바이오팜과 첨단 바이오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운영 전략 모색 필요

4. 참고사항(관계부처 협의 등)

- 농어업위 운영위원회 검토 : '25. 3. 5.
- 당연직 부처 등 의견조회 : '25. 3. ~

5. 첨부

- 붙임 :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연장 운영 계획

1 운영 개요 및 성과

- (목적) 바이오기술을 응용한 연구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등을 통해 농수산물 분야 바이오경제 미래비전 제시
- (기능) 농어업위 상정 안건의 검토·조정,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 연구,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분과위 역할 준용)
 - 농어업위 내 농축수산물 분야 바이오 의제를 바이오경제특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
- (위원구성) 특별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
 - 연구기관, 학계, 관련기관, 기업 등을 포함하여 구성
 - * 워킹그룹별 논의 의제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전문가(자문위원) 참여
- (운영기간) '24.6. ~ '25.6. (1년) / (지원부서) 농수산물식품팀
- (성과) 농축수산물 분야 바이오경제·바이오파운드리 정의·범위·전략 모색, 농축수산물 분야 활용방안 및 거버넌스·협력 방안 모색, 바이오경제 특별세미나 개최('24.11.7.)

안건	주요내용 및 논의과정
농축수산물 분야 바이오경제·바이오파운드리 정의·범위·전략 모색	① 농축수산물 분야 바이오경제/바이오파운드리 정의·범위·특화 전략 모색 ② 농축수산물 분야 바이오 관련 규제 혁신 방향 제시 ③ 농축수산물 분야 바이오 관련 대국민 인식 제고 방안 모색
농축수산물 분야 활용방안 및 거버넌스·협력 방안 모색	① 농축수산물 분야 바이오 기술 적용 성과 및 활용 방안 제시 ② 농축수산물 분야 국제협력, 미래 핵심인력 양성 방안 모색 ③ 공공-기업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모색

- (연장 필요성) 식품 바이오 규제 혁신, 농축수산 바이오팜과 첨단 바이오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운영 전략 모색 절실
 - 2차년도 의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포럼 개최 등을 감안, 특위 운영기간 연장 필요

- (운영 계획) 농축수산식품 바이오 분야 지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1년 연장운영
 - 연구용역 수행, 바이오경제포럼 등을 통해 논의주제를 심화 및 의제화하여 부처에 정책개선의견 등 제안
 - (주요의제) ①식품 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 대응 방안 ②첨단 바이오 식품산업 발전전략 ③농축수산 바이오팜 발전전략 논의 추진
 - '25년도 3개 의제에 대하여 집중 논의를 통해 구체적 운영 성과 도출
 - 국가바이오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농축수산식품에 특화된 바이오 경제·바이오팜 발전 전략 제시
 - *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25.1.23.) 관련, 농업·해양수산생명자원 분야도 포함 되었으나, 의료·제약 등 타 산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 농어업위 차원의 농축수산식품분야 바이오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필요)
 - (위원 재구성) '25년 의제 관련성, 특위 활동이 적극적인 위원 위주로 재구성·운영(자문위원 포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양호섭 농수산식품팀장
연락처	전 화 : 02-6260-1231 E-mail : gksek@korea.kr

제 24 차 위 원 회

보고 안건
(2건)

- 농업생산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25. 3.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요약)

- (추진 배경)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력 부족 등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위협 받고 있는 상황속에서 규모화·집단화를 포함한 농어업법인 활성화 정책 시급
 - * 연령별 농가비율(20년) : 40세 미만(1.2%), 40~59세(25.5%), 60~79세(61.8%), 80세 이상(11.5%)
 - ** 연령별 어가비율(22년) : 40세 미만(2.4%), 40~59세(22.9%), 60세 이상(74.7%)

- (현황 및 문제점) 법인과 자산 상용근로자는 증가추세이나, 농어업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법인설립 또는 승계에 따른 세제감면 등 농어업 현실 반영에 한계
 - 법인설립 시 이월과세 허용, 정책자금 승계, 취득세 면제 등 규모화를 위한 혜택부재
 - 농어업법인 운영 시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 미비(개별농어업인과의 지원책 상이, 임직원에 대한 농어업인 인정 등)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농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 등 농어업 후계세대를 위한 정책 부족

- (개선방안) 농어업생산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법인 설립·운영 시 다양한 세제지원책으로 청년농어업인 흡수 등 법인활성화에 기여
 - 농어업법인 설립 지원 → 농어업생산 규모화
 - ①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허용
 - ② 농지 등 현물출자 시 국고보조금·정책자금 승계 허용
 - ③ 법인설립 부대비용 최소화(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 농어업법인 운영 지원 → 농어업법인 경쟁력 강화
 - ① 작물재배업, 연근해·내수면어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확대
 - ② 작물재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전액 면제
 - ③ 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세제 지원
 - ④ 임직원을 농어업인으로 인정해 법인운영과 개인영농을 동시에 영위할수 있도록 조치
 - 농어업법인 승계 지원 → 농어업생산 기반 유지
 - ① 증여세 과세 특례 및 감면 확대(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등)
 - ②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개선(대상업종을 농림·어업포함, 사후관리 기준 완화)

- (향후계획) 농어업법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등 관련 부처 지속 협의

☐☐ 목 차 ☐☐

I. 추진배경	147
II. 현황 및 문제점	148
III. 개선방안	150
참고 1 법인 중심 공동영농모델 확산 위한 유형화 및 제도개선(농식품부)	154
참고 2 농어업법인 주요 세제 감면 내용	155

I. 추진 배경

- 농어업 분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력 부족 등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위협
 - 고령 농어업인 증가로 인력 부족 등 인구구조 변화 빠름
 - 농업의 경우 60세 이상 농업인은 전체 농가의 73%, 40세 미만 청년농은 1.2% 점유하고 있으며, 어업분야는 60세 이상이 74.7%,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은 8.8% 점유
 - * 연령별 농가비율('20년) : 40세 미만(1.2%), 40~59세(25.5%), 60~79세(61.8%), 80세 이상(11.5%)
 - ** 연령별 어가비율('22년) : 40세 미만(2.4%), 40~59세(22.9%), 60세 이상(74.7%)
 - 특히, 4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 감소 추세로 농업후계세대 확보 절실한 상황
 - 45세 미만 청년농가 경영주 비중은 '10년 7.1%에서 '20년 3.1%로 감소
 - * 청년농가 비율('20년) : 15~24세(0.02%), 25~34세(0.4%), 35~44세(2.7%)
- 경작면적의 비규모화·영세화로 농업생산효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 농가 당 평균 경지면적 1.1ha이며 전체 인구 대비 농업인수는 4.4%(224만명)
 - 1ha 미만 경작비율은 전체 농가구 대비 73.4%로 영세성 극복에 한계
 - * 경작규모별('20년) : 0.1~0.2ha이하(20.9%), 0.2~0.5ha이하(31), 0.5~1.0ha(21.6)
 - 후계세대 확보·농어업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인화 필요성 대두
 - 법인은 후계세대 확보에 유리, 특히 청년농어업인은 규모화를 위한 법인설립 선호
- 농어업경영의 영세성 극복 위한 규모화·집단지화, 법인화 등 변화 모색 필요
 - '90년 농업법인 제도 도입 후 경영실적이 있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어업법인 포함) 증가 추세로 '22년 기준 25,119개소(어업법인 5,955)
 - * 농업법인수(개소) : ('18) 20,689 → ('20) 24,499 → ('22) 25,119
 - * 어업법인수(개소) : ('20) 5,746 → ('23) 5,005 → ('24) 5,955
 - 농업법인은 매출액 기준 '22년 국내 농업 총생산액의 약 21.9%의 규모로 성장하여 산업적 농업측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 농업생산 방식, 노지재배·단순시설재배 → 규모화·자동화 가능한 스마트팜 형식의 디지털화로 전환됨에 따라 생산규모 지속 증가 추세
 - * 스마트온실/축사(ha/호) : ('22) 7,495/6,002→('23) 8,196/7,265→('24) 8,835/8,674 / 누적

II. 현황 및 문제점

1 농업법인 현황

□ 실질적 경영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의 수와 자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법인 수) '22년 기준 25,119개소로, '18년(20,689) 대비 17.6% 증가(4,430)

* 연도별 법인수 : ('18) 20,689 → ('19) 22,147 → ('20) 24,499 → ('22) 25,119

* 어업법인 또한 '20년 기준 5,746개소에서 '24년 5,955개소로 증가추세

○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규모화된 농업법인의 수 '22년 기준 8,683개소

* 연도별(개소) : ('18) 6,647 → ('19) 7,187 → ('20) 7,741 → ('22) 8,683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결산법인 수	20,689	22,147	24,499	25,605	25,119	
자산 규모	1억 미만	3,553 17.2%	3,942 17.8%	5,233 21.4%	5,542 21.6%	4,450 17.7%
	1~5억 미만	7,325 35.4%	7,681 34.7%	8,013 32.7%	8,416 32.9%	8,314 33.1%
	5~10억 미만	3,164 15.3%	3,337 15.1%	3,512 14.3%	3,625 14.2%	3,672 14.6%
	10억 이상	6,647 32.1%	7,187 32.5%	7,741 31.6%	8,022 31.3%	8,683 34.6%

○ (매출액) 법인수의 증가 및 농업경영 규모화·집약화로 인해 전체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생산법인의 감소*와 가공·유통법인의 비중 증가*로 농산물 매출액은 미미한 증가세를 보임

* 생산법인 : ('00) 52% 점유 → ('18) 32.9%(19.1%p ↓)/가공·유통 : ('00) 31.9% → ('18) 51.6%(19.7%p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조)	37.5	40.1	42.9	49.1	52.9
농축산물 매출액(조)	7.8	8.6	9.2	5.5	11.6
농업생산의 비중(%)	20.8	21.4	21.4	11.2	21.9

○ (고용인력) 농업법인의 상용근로자 수 ('18) 102천명 → ('22) 123천명으로 지속 증가추세, 이는 농업부문 인력고용 확대에 효과적이라 볼 수 있음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시종사자합계	102,904	112,645	119,120	120,327	123,190
상근출자자(명)	43,016	47,876	50,961	52,412	52,181
상용근로자(명)	59,888	64,769	68,159	67,915	71,009

2 문제점

① 농어업법인 설립 관련

- 농지, 어업용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 등 미 적용
 - 현행 자경농지 등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받고 있으나, 부동산(유통·가공용 시설 포함)에 대한 감면 미적용
- 국고보조금 및 정책자금 승계 불인정, 법인설립 부대비용 최소화
 - 보조금 및 정책차입금 지원을 통해 취득한 자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근거해 반환 또는 상환을 해야하는 문제점 발생
 - 현재, 취득세의 경우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50%, 75% 감면 → 전액 면제 검토 필요

② 농어업법인 운영 관련

- 작물재배업(연근해·내수면어업 등) 소득에 대해 개별농어업인과 세제혜택 상이
 - 개인 농업인의 경우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부담 없음
 -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나 지방소득세는 면제 대상 아님
 -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나, 배당소득세는 과세 대상임
- 법인에 속한 임직원은 실제 영농을 하고 있으나,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 법인설립 후 임직원은 세법상 감면기준이 되는 농업인에서 제외 → 농업인의 법인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③ 농어업법인 승계 시 과세특례를 농지 등으로 한정

-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및 감면 범위는 법인활성화에 걸림돌
 - 가업승계시 대상자산을 농지 등으로 한정, 건축물·시설장비는 적용 제외
-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현실 반영에 한계
 - 가업상속공제는 대상업종을 종자 및 묘목생산업에 한해 적용
 - 영농기간 및 사후관리 기준의 현실성 부족(통작거리, 농업외 소득 등)
 - 소규모 가족 농어업을 기초로 설계, 규모화·법인화에 충돌 발생

Ⅲ. 개선방안

1 농어업법인 설립 지원 → 농어업생산 규모화

□ 농지, 어업용토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허용

- 개인농어업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농어업법인으로 전환 시,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납부 부담 완화

현행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산) 자경농지,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측사용지, 어업용 토지, 자경산지 등 - (감면한도) 1년에 1억, 5년에 2억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산 확대) 농지 포함 농어업 생산에 사용하는 부동산 및 유통기공용 부동산으로 확대 - (이월과세 적용)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에서 이월과세 적용으로 전환

* 관련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67조 제4항(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참고 : 현물출자 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1안)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

- 기존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포기하고 이월과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도 이 안으로 기재부와 협의 중임

* 감면 한도 : 1년 1억, 5년 2억 한도

** 이월과세 : 현물 출자한 주주의 양도소득세를 추후 당해 자산 매각 시점에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현행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이런 방식으로 이월과세 적용

■ (2안) 양도세 감면과 이월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 기존 양도세 감면과 이월과세 방식 중 현물출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정

■ (3안) 양도세 감면과 이월과세를 순차적으로 적용

- 양도세 감면을 우선 적용한 후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농지 등 현물출자 시 국고보조금·정책자금 승계 허용

- 국고보조금, 정책차입금 지원을 통해 취득한 자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반환 또는 상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현 행	개선안
국고보조금이나 정책자금 지원 대상 자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동 자산의 매각에 대하여 차입금 상환, 보조금 반환 의무 발생 가능성 있음	농지 등 소유자가 농어업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해당 법인에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보조금, 차입금 등의 승계 허용

* 관련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재산 처분의 제한)

□ 법인설립 부대비용 최소화(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 농어업법인 설립,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취득 및 유상증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현 행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75% 감면 · (등록면허세) 법인설립, 유상증자 시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 부동산 등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취득세 전액 면제 · (등록면허세) 설립, 유상증자(현물출자) 시 전액 면제

* 관련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2 농어업법인 운영 지원 → 농어업법인 경쟁력 강화

1. 농어업법인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 작물재배업, 연근해·내수면 어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확대

- 농어업인의 경우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 실질 조세부담이 없는 것과 비교해 농어업법인도 동일한 세제 감면을 통해 규모화 및 경쟁력 확보 지원

현 행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면제 · (기타작물재배업·작물재배업 외 소득) 감면 · (영어조합법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 현행유지 · (기타작물재배업·작물재배업 외 소득) 감면확대 또는 면제 · (영어조합법인) 감면 확대

* 관련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67조(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개인) 식량작물재배업 사업소득 제외, 기타작물재배업은 연간 수입금액 10억 초과세

□ 지방소득세 면제 도입

- 지방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법인세가 면제(감면)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면제하지 않아 법인세 납부세액과 별개로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 발생

현 행	개선안
농어업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감면) 세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별도 신고·납부 의무 발생	농어업법인의 작물재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전액 면제 ⇒ 지방세법 개정 필요

* 관련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67조(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개인) 소득세법에 따라 작물재배업 등 비과세 되는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비과세

2. 농어업법인 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세제 지원

□ 농어업회사법인 작물재배업, 연근해·내수면어업 등의 소득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 농어업회사법인의 경우 작물재배업, 연근해·내수면어업 등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출자자에게 배당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어 개인 농업인에 비해 소득세 부담 발생

현 행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면제 - (기타작물재배업) 분리과세 - (영어조합법인) 연근해·내수면·양식어업 등 	기타 작물재배업과 연근해·내수면어업 외 등의 경우에도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는 전액면제

* 관련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67조(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동법 68조(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영농조합법인 : 작물재배업 소득 중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는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전액 면제

□ 농업법인 임직원을 농업인으로 인정

-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임원으로 근무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농업법인 유지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문제 발생

- 농업법인 근무를 통한 근로소득 발생 시, 세법상 감면 기준이 되는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되어 법인 운영과 개인 영농을 동시에 영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현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경작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임원으로 근무 시 농업인에서 제외 - 농업법인 근무자로 연간 총급여 3,700만원 이상 → 상속증여세법상 각종 감면 적용 시 농업인에서 제외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을 주 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원도 농업인으로 인정 - 농업경영을 주 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농업외 소득 적용 범위에서 제외

* 관련법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 기준)

3 농어업법인 승계 지원 → 농어업생산 기반 유지

□ 증여세 과세 특례 및 감면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및 영농자녀등에(영어자녀 포함) 대한 증여세 감면 확대로 고령화된 농업인의 생산 기반이 후계농에게 효과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지원

현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산) '농지 등' 으로 한정 * 농지, 초지, 산림지, 어업용 토지, 염전, 축사용지 등 (농어업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 포함) - (감면한도) 5년간 1억 원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산) '농지 등'으로 한정된 것을 토지, 건물, 시설물, 생물자산 등을 포괄한 농장 승계 개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법인 출자 지분 포함 - (감면한도) 증여재산가액 10억원까지 공제 후 10% 단일세율 적용

* 관련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개선

현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공제)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 생산업에 한해 적용(단, 부동산 50% 미만) - (영농상속공제) 8년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양축, 영어, 영림 포함), 30km 통작거리,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제한 5년내 일부매각 금지 등 제한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을 농림어업으로 확대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기액에서 공제) - (영농상속공제) 영농(영어 포함)기간 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 완화(거주요건, 소득요건, 매각제한 등)

* 관련법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 농지 집적화 방식, 수입배분 등에 따라 공동영농 모델을 4가지로 유형화 하고, 유형별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 농작업 위탁형(일반적인 형태, 초기단계), 위탁임대 혼합형, 임대형(문경사례), 주주형(고도화 단계)
- 농지·직불금·세제 개선을 통해 활성화 제약요인 해소 추진
 - (농지) 농지이용증진사업* 절차 간소화**로 법인의 농지 임대 활성화
 - *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 또는 집단 이용하여 농업경영 개선 시 농지 임대차 전면 허용
 - ** 지자체장이 수립해야 하는 「농지이용계획」 없이, 사업자(공동영농 농업법인)의 시행계획 수립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24.1월 법개정, '25.1월 시행 예정)
 - (직불금) 공동영농 참여 법인 및 농가의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26)
 - * 공동영농 법인은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지급, 대규모 기계화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참여 농지(논) 간 경계 설치 기준 완화
 - (세제) 농업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 출자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검토('26, 기재부 협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 (출자 시) 양도세 100% 감면(한도 : 연 1억원, 5년 내 2억원) 제도를 이월과세(한도無)로 변경
- 공동경영체 지원사업* 지침을 개선하고, 임대·주주형(고도화 단계) 공동영농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 통합·확대('26~)
 - *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식량),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유통)
 - 규모화·조직화 정도, 청년농·후계농의 공동영농 참여 여부, 이모작 재배 여부 등에 따라 지원 인센티브 부여
 - 식량·발작물 품목 중심으로 운영 중인 공동경영체 지원사업을 공동영농 중심으로 개편하여 통합·확대 추진

구 분		내 용
법인	법인세 조특법 제66조, 제68조 (2026.12.31.)	①식량작물재배업 : 전액면제 ②기타작물재배업 : 감면 -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 1인당 연간 수입금액 6억에 해당하는 소득분 - 농업회사법인 : 연간 수입금액 50억 이하의 소득분 ③작물재배업 외 대통령이 정한 소득 : 감면 -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 1인당 연간 소득금액 1,200만원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농업회사법인 :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4년간 50% 감면 * 어업법인(연근해, 내수면양식어업) 일부 감면
	부가가치세 조특법 제105조, 106조, 106조의 2	①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026.12.31.) ②농업용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025.12.31.) ③농업용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④농업용석유류에 대한 면세(2026.12.31.)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2026.12.31.)	①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②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등록면허세 지특법 제10조, 제11조	①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면제(2025.12.31.) ②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2027.12.31.)
	재산세 지특법 제11조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2026.12.31.)
주주 (출자자) (조합원)	양도소득세 조특법 제66조, 68조 (2026.12.31.)	①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업인이 농지, 초지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1년에 1억, 5년에 2억 한도) ②대통령령이 정한 농업인이 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①항 적용 부동산은 제외)
	소득세 조특법 제66조, 68조 (2026.12.31.)	①영농조합법인 - 식량작물재배업 및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중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는 소득에 대한 배당 : 배당소득세 전액 면제 - 위 감면을 제외한 소득 :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 감면하고 1,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5% 세율로 분리과세 ②농업회사법인 - 식량작물재배업 : 전액면제 - 기타작물재배업, 농산물유통, 가공 및 부대사업 : 종합소득에 합산제외(분리과세) - 기타소득 : 종합소득합산

2025년 농어업위 주요업무계획

2025. 3.



2025년 농어업위 주요업무계획(요약)

- (주요성과) 2024년 농어업위는 현장과 소통하며 미래농어업이 나아갈 방향, 농수산식품산업 수출 1천억 달러 달성, 농어촌 지역소멸 방지 방안 제시에 주력

* '24년 본회의 안건 심의 8건, 안건 보고 11건

안건제목	주요성과
① 미래 농어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1.미래농업 대응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	자격으로서 농업인과 구별하여 정책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인 “(가칭) 농가경영체” 개념을 도입, 농업경영체 단위를 명확화
2.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 구축 방향	지역여건과 품목 특성에 맞는 농지이용증진지구 모델 마련, 농업인의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농지 세대계승 촉진 맞춤 지원 제시
3.육상양식장 표준시설 개발방안	육상양식장 표준설계/표준설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양식산업 표준화·고도화 기반 조성 필요성 제안
4.농업정책 고도화를 위한 소득 정보 체계 구축 방안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촉진 및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발판 마련
5.축산업 생산성 혁신사례 선정	7개 부문*에 대한 생산성 혁신사례 선정 및 선도모델 제시 * 한우, 젓소, 한돈, 경축순환, 조사료 생산, 축산물 품질 차별화, 축산 스마트팜 기술
② 농수산식품산업 수출 1천억 달러 달성을 위한 방향 제시	
1.농수산식품산업 지도(map) 제작	식품산업 경제정책 수립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별 인프라 현황조사를 통해 시각화자료(지도) 제안
2.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전문 생산단지 조성 및 정부·지자체의 지원 방안 제시 생산조직·수출기업·지자체 등 상호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3.농수산식품 정부 인증제도 정비방안	농수산식품 정부 인증제도의 운영체계 조사를 통한 통일성 확보 등 제도 운영상 불균형 사항 개선방향 제안(후속 정책연구 수행)
③ 농어촌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 제시	
1.농어촌 삶의질 지수 발표	129개 농어촌 시·군의 삶의질 지수를 발표(상위 20%)하고, 지자체 이해 증진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 개최
2.농산어촌형 디자인 지자체 도입방안	농산어촌다움에 기반한 매력적인 농산어촌의 조성을 위해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한국형 농산어촌 디자인 계획 마련
3.농립해양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농산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 산림, 해양 자원을 연계한 치유산업의 협력적 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
4.지역재생을 위한 산촌공간 활성화 방안	임업산촌클러스터·산촌특구 등 산촌공간 활성화, 산촌 관계인구 확대 중심 산촌진흥정책의 영역 확대 및 산촌진흥계획의 이행·환류 강화

- 농어업 현장 소통을 위해 단체간담회(24회), 청년자문단 회의(4회), 권역별 현장 간담회(5회) 등을 추진

-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정비 과제*(9건) 발굴 및 제출

* 검토결과 : 수용 1건, 부분수용 1건, 중장기검토 2건, 불수용 5건(사회적 합의필요, 기시행 등)

□ (추진안전)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어업인이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안전을 추진할 계획

- 관계부처, 농어업인단체 등에서 안전을 제안 받아 분과위·특별위에서 검토하여 추진안전 마련

안전제목	주요내용
1 농어업분과위원회	
1.식량안보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	기후변화 정책 추진 현황 및 농산물 수급체계 점검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체계 및 재해 관련 보상 등 대응 방안 제시
2.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농업생산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한 구조적 정책 개선 및 농업법인 규모화 저해 요인 제도개선으로 규모화 촉진 방안 제시
3.농업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업금융 개선	농업금융 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사항 정리 및 신성장 분야 투자, 농식품 모태펀드 확대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
4.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정책 개선방안 마련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5.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따른 농업현장 연착륙 방안	농식품부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정책 수립(25년 중)에 앞서 농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6.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가공 산업 발전	축산업 혁신사례와 일반농가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소비시장 변화 대응 축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생산-가공 체계 구축 지원 방안 제시
2 농어촌분과위원회	
1.2025년 농어촌 삶의질 지수 공표	129개 농어촌 시·군의 삶의질 지수를 발표(상위 20%)하고, 지수 개선 지역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2.농림어업을 기반한 사업 다각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농림어업 기반 치유관광체험 등 민간 주도의 사업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장 사례조사를 통한 모델 제시 및 운영체계 구축, 제도적 개선 방안 등 마련
3.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협동 조직의 역할과 모델 개발	협동조직 사례조사 및 분석,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통한 유형별 모델화,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 제시
4.농산어촌 디자인 수립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농산어촌의 고유경관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매력적인 농산어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디자인을 발굴하여 한국형 농산어촌 디자인 조성 유도
5.유희자원을 활용한 어촌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방치되고 있는 유희자원을 활용해 공동체의 경제성 확보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제시
3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1.농수산식품 품질 인증제도 통합 법령안 마련	농수산식품 정부 인증제도 통합 관리를 위한 통합 법률(안) 마련 및 농수산식품품질인증원 설치 필요성 제안
2.농수산식품 Total Utilization 프로젝트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식품 부산물(재)활용방안 및 바이오·식품 소재화 방안 모색
4 특별위원회	
1.(수산)양식수산물 생산성 혁신 사례 선정	수산 양식업계 신기술 도입·확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사례 선정, 발굴, 홍보 및 확산
2.(수산)수산업 사업승계 활성화 방안	지속가능한 어촌생태계 형성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개선방안 마련
3.(수산)내수면 양식업 농지사용 규제 개선방안	안정적 설비투자 및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내수면 양식장 농지전용 제도 개선방안 마련
4.(산림)산림자원 산업화 기반 산촌경제 혁신 방안	산촌진흥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산림자원 산업화 기반 산촌특구 도입 및 단지 조성, 단지별 맞춤형 수요 발굴
5.(산림)국토녹색자원의 통합 관리방안	녹색자원의 통합적 관리·활용체계 마련, 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산지 통합관리 및 거버넌스, 산림특별지자체 도입으로 지역산림관리 개선
6.(산림)산림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기반 인프라 확충과 연계한 산림자원의 산업적 활용 방안 모색, 임도설치·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임도공사(안) 설립 방안 검토
7.(바이오)첨단 바이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구축 등 정책 방향 제시(식품 바이오파운드리) 및 산업화·상용화를 위한 맞춤형 연구소 설립 전략 마련(미생물·단백질연구소)
8.(바이오)식품 바이오 규제혁신 대응 방안	현 시점에서 제기되는 식품바이오분야 규제 혁신 과제 발굴·개선 및 미래예측 '호라이즌 스캐닝' 도입 방안 제시
9.(바이오)농수산식품 바이오 파운드리 발전전략	농수산식품 바이오파운드리 개념, 범위 정립 및 차별화 전략 등 활용 가능성 논의를 통한 식품 바이오파운드리 정책방향성 제시

□ (분과신설) 수산분과위원회와 산림분과위원회 신설 추진

- (추진배경) 수산·임업인단체 등은 농어업위 활동에서의 해당 분야 소외 등을 거론하며 농어업위 내 분과위원회 신설 요구
- (문제점) 수산 및 산림 분야는 특별위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특정현안을 논의하는 특위*의 목적에 맞지 않고 한시적 운영(최대 2년)으로 지속성이 결여
 - * ①미래수산, ②미래산림, ③농업세제개선, ④바이오경제특위의 총 4개 특위 운영 중
- (개선방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산·산림분과를 신설하고, 기존 분과위원회 간 업무 조정

기존		변경	비고
-	⇒	수산분과위원회	* 분과 신설
-		산림분과위원회	* 분과 신설
농어업분과위원회		농산업분과위원회	* 어업을 수산분과로 이관하고, 농산업(스마트농업, 과학기술 정책 등) 분야를 신규로 포함
농수산물분과위원회		농수산물분과위원회	* 변동 없음
농어촌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 변동 없음

- (추진계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 현재 해수부에서 수산분과 신설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25~4.7.) 중으로, 산림분과 신설은 관계부처 의견제시를 통해 반영할 예정

□ (전략대화기구) 이해관계자간 입장차이로 농어업분야에 오랜 갈등 이슈*에 대해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

- * 농어업·농어촌에 장기간 이해관계자 사이에 첨예한 대립 등으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한 과제(쌀 생산 균형과 가격안정, 농지문제, 낚시문화발전 등)
- (기구구성) 갈등 이슈별로 각 분과위 및 특별위에서 50명 이내로 구성
 - * 의장은 분과위 및 특위위원에서 선정, 위원은 전문가와 일반인을 각각 50% 정도로 선정, 일반인은 공개모집으로 구성
- (의제선정)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으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분과위·특별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정
- (운영방법) 갈등이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운영
 - * 전체회의, 소그룹 회의(전문가, 일반국민), 집중토론(1박2일), 온라인 회의 등
- (운영결과) 분과위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 후 관계부처에 건의
 - * 분과위별로 결과가 도출 되는대로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출

☐☐ 목 차 ☐☐

I. 2024년 농어업위 주요 성과	165
II.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172
① 농어업분과위원회	172
② 농어촌분과위원회	178
③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183
④ 특별위원회	185
III. 분과위원회 및 전략대화기구 신설	194

I. 2024년 농어업위 주요 성과

1. 미래 농어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1 미래농업 대응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

□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 및 등록요건 상향 등 제시

- 자격으로서 농업인과 구별하여 정책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인 “(가칭)농가경영체” 개념을 도입, 농업경영체 단위를 명확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제안]

현행	개정방안
제2조 정의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 법인을 말한다.	제2조 정의 3. 농업경영체 란 농업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발생하는 단위로서 농가경영체 와 농업법인 으로 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을 경작면적3,000㎡(논) , 연판매액 360만원으로 상향
*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영농규모 분포, 해외사례 등 감안하여 전문가 논의
- 농업경영체를 유형별로 ‘기초/일반(전문) 농업경영체’로 차등화하고 전문 농업경영체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맞춤형 농정 추진
 - ‘일반’ 농업경영체는 ‘영농 5개년 계획’을 승인받아 ‘전문’ 농업경영체로 전환
-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생애주기)를 고려해 ‘예비’ 농업경영체와 ‘은퇴(준비)’ 농업경영체를 별도의 농업경영체 유형으로 관리

2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 구축 방향

□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와 농업 생산방식 등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맞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지역 여건과 품목 특성에 맞는 농지이용증진 지구 모델 마련을 통해 권역 단위 농지 집적 및 공동농업경영으로 규모화 영농 실현
- 고령농과 경작농지 인접 농지 등의 임대를 우선적으로 허용 등 농업인 간 임대차를 확대
- 고령농 소유 농지를 청년농과 후계농으로 이전되도록 맞춤형 지원, 지자체 주도의 농지 세대 계승 정책 추진 및 농지세제 개편 등

3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개발방안

- 육상양식장의 설계비용 부담 가중, 건축기간 추가 소요, 육상양식장 특화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방안 제시
- 국내외 사례조사 및 기대효과 분석을 통해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개발방안」 제안
→ 신규예산 편성(“육상양식시설 표준모델 마련”, 15억원, '25~'27년)
 - 농식품부 <축사 표준설계도> 개발 경과 및 효과 분석, 일본 <육상양식장 설계지침> 주요내용 분석 등
 - 시설 실태조사~설계까지 단계적 접근, 제도안착을 위한 기반조성(인센티브 부여, 교육프로그램 보급 등), 시설 표준 개발 이후 설비 표준 마련 등 방안 제안
 - 설계·건축비용 감소, 인허가 및 건축기간 단축, 신규 진입 활성화로 양식장 공급 확대, 표준화에 따른 스마트화 기반 조성 등 효과(연간 153억원의 경제적 효과 추산)

4 농업정책 고도화를 위한 소득정보 체계 구축 방안

- 농업소득정보 체계 기반 구축 및 관련 정책 방안 제시
 -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표준소득 정보 산출, 지자체 단위에서 활용 가능한 소득정보 제공방안 검토 등
 - 농업정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별 농가의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별 입력자료 구체화 및 간소화 등을 추진
 - 농업소득에 기반한 국내외 정책프로그램 검토 및 작목별 소득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 농업경영체의 사업자등록 독려 및 농업 현실에 맞는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교육·홍보활동 강화

5 축산업 생산성 혁신사례 선정

□ 축산업 생산성 혁신 사례 7개 부문 선정 및 선도모델 제시

부문 / 선정사례	선정사유
한우 중우축산(전북 고창)	한우 비육기간 단축을 통한 회전율 및 수익성 개선 ★ 전국 최초 민간보증수수료 선정 □ 출하월령: ('21) 26.0 → ('22) 24.3 → ('23) 23.9개월 (전국 평균 31.1개월) * 1+등급 출현율(%): ('21) 40.0 → ('22) 73.9 → ('23) 78.6 (전국 평균 69.1%)
젖소 장원목장(경기 가평)	ICT 연계 젖소 데이터 관리로 원유 생산 증대 및 산차 개선 □ 305일 산유량(kg): ('21) 10,824.5 → ('22) 11,037.3 → ('23) 11,622.1 (전국 평균 10,159) * 분만간격: ('21) 384일 → ('22) 387 → ('23) 383 (전국 평균 447.7) * 도태산차: 3.46회 (전국 평균 2.82) ⇄ '23년 기준
한돈 돈트리움(경남 함양)	글로벌 표준인증으로 인정받는 청정 돼지 생산체계 구축 □ PSY 향상: ('21) 27.6두 → ('22) 29.7 → ('23) 31.6 (MSY 28.7) * 전국평균 PSY 22.0두 / MSY 18.7 ★ 축산업 최초 ISO9001/14001 인증
경축순환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경기 여주)	액비 제품 다양화로 작물 재배 농가 생산성 향상 및 화학비료 감축 □ 시설농가 이용가능 액비 보급(시비 계절성 극복) / 부숙기간 60일 → 40일 / 화학비료 감축 75%
조사료 생산 신용안영농조합법인(전북 익산)	지역 농가 조직화 및 통합 조사료 생산-품질관리로 수입조사료 대체 □ 재배면적: 300ha / 15개 농가 / 전량 계약재배 / 열풍건초제조 / 수요처 확대(한우젖소 + 말)
축산물 품질 차별화 부경양돈농협(경남 김해)	생산-유통 파트너십을 통한 소비자 맛 지향 돼지고기 및 가공제품 생산 □ 근내지방도 우수 종돈 도입 ⇒ 1등급 이상 출현율 76.7% (전국 평균 67.8) * 다양한 2차 가공품 개발·출시: 판매량 ('21) 254톤 → ('22) 324 → ('23) 558
축산 스마트팜 기술 (주)엠트리센	독자적 인공지능기반 모든 정밀관리 기술 확보 및 현장 실용화 □ 분만사 모든 정밀관리시스템 '딥아이즈(DeepEyes) 보급 * ('21) 7농가(644대) → ('22) 11(935) → ('23) 31(2,191)

- '대한민국 축산 생산성 혁신사례집' 발간을 통한 우수성과 확산
 * 혁신사례 선정('24. 12월) → 원고작성(~'25. 2월) → 혁신사례집 발간·배포('25. 3월)

2. 농수산식품산업 수출 1천억달러 달성을 향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1 농수산식품산업 지도(map) 제작

- 지역별 식품산업 인프라를 시각화하여 민간투자 및 식품수출 활성화 방안 모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식품산업 지도 제작
 - 시각화 데이터 제공을 통해 정책당국 및 투자자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산·학·연 협업 강화, 유망산업 및 지역에 대한 투자기회 발굴
- 전국의 식품기업, 식품연구소, 지역특구, 클러스터, 대학 현황 및 지역별 식품기업의 생산액, 판매액 및 수출액 등을 반영
 - 식품업체(29,026개소), 종업원(349,857명), 산업단지(25개), 클러스터(46개), 식품관련대학(128개 대학 412개 학과), 기업연구소(3,389개) 등 인프라 정보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액, 국내 판매액 및 수출액, 시·도별/시·군·구별/품목군별 상세 분석 정보

2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

- 구조적 쌀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 간척지를 활용한 수출용 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
 - 대량생산·단지화를 통해 가격경쟁력 확보 및 검역기준 관리
 - 준공 미처분(임대) 면적을 우선대상으로 단계적 시행(영산강 지구 등)
 - 간척지 장기 임대계약 및 임대료 체계 정비를 통한 기반 확대
 - 안정적 쌀 생산·수출을 위한 쌀 전문 생산단지 제도 기반 마련
 - 생산 물량 전량 수출*로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제도화
- * 수출 품목은 인디카 쌀, 수출용 가공식품 원료미, 자포니카 밥쌀 등으로 수익모델 다각화
- 수출용 쌀(인디카 쌀 등) 전략작물직불 대상으로 지정 등 생산법인의 자발적 참여 의욕 고취 및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 수출가공기업-생산법인과 계약생산으로 원활한 원료미 수급처 확보 및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3 농수산물식품 정부 인증제도 정비방안

- 국내외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수요확대를 위한 농수산물식품 정부 품질인증 관련 법령 및 운영체계 통합 방안 제시
-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인증제도에 운영상 통일성 부여(누락사항 보완 등) 및 통합 법제의 단계적 도입 검토
 - * 농식품부: 법률(6개), 11개 인증제 / 해수부: 법률(4개), 11개 인증제 운영
 - ** 인증제별로 기준 다양: 심사기관(민간/정부), 유효기간(0~5년), 수수료(0~100만원), 심사절차(시행규칙~고시) 등
- ^{가칭}농수산물식품품질인증원 신설·검토를 통한 인증제도 관리체계 일원화
 - ※ '25년 위원회 정책연구 → 통합법률(안) 및 관리 일원화 방안 검토

3. 농어촌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1 농어촌 삶의 질 지수 발표

□ 129개* 농어촌 시·군의 삶의 질 지수를 조사 하여 상위 20% 발표

* 농어촌 139개 시·군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형 도농복합시 제외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시·군별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 하여, 5개 영역 20개 세부지표로 구성

<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영역 및 세부지표 >

	경제(4개)	보건·복지(4개)	문화·공동체(4개)	환경·안전(4개)	지역활력(4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지역내 총생산 ▶ 고용률 ▶ 시군구 사업체 수 ▶ 재정자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사망률 ▶ 기대수명 ▶ 긴급복지지원율 ▶ 보건복지예산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만족도 ▶ 문화시설 접근성 ▶ 사회활동 참여율 ▶ 가족관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 지역안전도 ▶ 하수도보급률 ▶ 주민 1인당 생활계 폐기물처리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계출산율 ▶ 인구 증감률 ▶ 청년인구 비율 ▶ 교통접근성

-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특화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지역 성장 및 삶의 질 향상 전략의 기초 자료로 활용

2 농산어촌형 디자인 지자체 도입방안

□ 농산어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형 농산어촌 디자인 계획 수립 및 실행 방안을 제시

- 지자체 주민이 참고할 수 있는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사업 등 기존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 검토
- 농촌다움에 기반한 매력적인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주기적인 자원 조사 실시 및 자원 DB 구축 제안
- 지자체 내 농산어촌 디자인 총괄 기능 수행 및 자치법규 마련 제안

3 농림해양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 농산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 산림, 해양 자원을 연계한 치유산업의 협력적 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
 - 분야별 제도적 보완, 치유산업 특수분류체계 신설 및 바우처 개발, 분야 간 연계 플랫폼 구축 등 치유산업 제도적 기반 구축
 - 지역 맞춤형 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 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및 광역화 모델 제시
 - 민간 중심의 모델 개발, 인재 육성 및 취·창업 지원, 체류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및 범부처 협력체계 구성, 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 체계 정비 등 거버넌스 체계 마련

4 지역재생을 위한 산촌공간 활성화 방안

- 산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적 지원체계 구축, 산촌정책 영역 확대 및 법정계획의 실효성 강화 방안 제시
 - 임업-산촌 클러스터·산촌 특구 조성을 통한 산촌 진흥 정책 활성화
 - 임업·산촌 분야별로 특화하여 지역 클러스터 구축 및 산촌 비즈니스 모델 마련
 - * 분야 예시: ①목재산업, ②산촌문화, ③산림휴양·복지, ④산림작물 등
 - 산촌특구를 조성하여 임업 및 유관분야 규제 개선·재정 지원
 - 산촌진흥정책 영역 확대 및 산촌진흥 법정계획의 이행·환류 기능 강화
 - 현행 '귀산촌' 정책을 '가칭귀임·귀촌(귀임업(산림업)+귀산촌)'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접근방향 검토
 - * 유관분야 사례 : 귀농·귀촌, 귀어·귀촌
 -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개선(10년 → 5년) 및 이행·환류 기능 확보

4.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였습니다.

1 농어업인 단체 간담회

- 농림어업 및 식품관련 단체와 소통을 위해 간담회 추진(24회)
 - 농어업인 단체 간담회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애로사항 파악 등 협력망 구축
 - * (농업단체) 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화훼협회, 친환경농업협회 등 17개
 - * (수산단체)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산업연합회, 원양산업협회 등 6개
 - * (식품단체)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2 청년자문단 활동

- 농어업·농어촌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장 직속으로 청년자문단을 구성·운영
 - 분기별 청년자문단 회의(총4회) 및 전국 순회 간담회(총5회)

분기	자문단 회의 주요내용	권역별 현장간담회
1분기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정책현장 간담회 논의	새만금 농생명용지 현장 시찰(3월)
2분기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중장기 정책 방향 논의	-
3분기	수산업·수산인 정의 재정립 등 안건 논의	호남권 청년농어업인 간담회(8월)
4분기	청년자문단 제2기 위촉식 및 신규 제안 수렴	중부·경상·충청권 청년농어업인 간담회(10~12월)

3 규제정비 과제 발굴

- 농어업인 간담회 및 청년자문단 등에서 파악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정비 과제(9건) 발굴 및 제출
 - 규제정비 과제는 국조실에 제출하여 담당부처에서 검토

검토결과	담당부처	규제정비 요청과제 명
수용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업인 결혼으로 세대합가 시 영농정착 지원금 지속지원
부분수용	환경부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
중장기검토	산업부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한 규제 법령 개정
	농식품부	1년근 인삼 대상 보험상품 개발

* 그 밖의 과제는 사회적 합의 필요, 기시행, 본래의 기능 위축 등의 사유로 수용곤란

Ⅱ.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농어업분과위원회

1 식량안보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

① 추진 배경

-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난의 일상화로 사회·경제적 피해 증가
 - 태풍, 홍수 등 극한기상으로 인한 재해 빈도와 강도 증가
 - * 지난 20년('00~'19)간 재해건수는 앞선 20년보다 2배 ↑
 - 극한기상으로 인해 농업분야 농작물, 농경지, 시설 등 피해 증가
 - * 농업피해규모(천ha): ('15) 22 → ('17) 30 → ('19) 97 → ('21) 88 → ('23) 142
- 최근 국제 농산물 시장의 급변과 주요 국가의 식량안보법 발효 등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에 따라 수급 조정정책의 필요성 대두
 - 기후 재난 일상화에 따른 실효성 높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식량안보 방안 마련 필요
 - * 세계곡물가격은 '24년기준 전년대비 15% 상승(FAO, 2024)

② 주요 내용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추진한 제도·정책 현황 및 영향 종합 분석
 - 농업 주요 분야별* 기후변화대응 추진 정책 및 지원 사업 등
 - * 농축산물 생산·비축, 기후적응을 위한 스마트농업 및 물류체계 시스템 등
 - * 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 농업농촌 종합대책^(2016년) 이후 추진내용 중점 분석
- 변화하는 생태환경에 대응한 작부체계, 생육기술, 농업기반시설 및 저장·비축, 가공, 물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 전반적인 농축산물 공급 체계 점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한 안정 생산 및 재해관련 보상 기후변화 대응 방안 제시

③ 향후 추진계획

- 의제 관련 방향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25. 3월)
- 식량안보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워킹그룹 구성·운영('25. 3월~)
 - 분과위원회 논의 및 본회의 안건 보고('25. 12월)

2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1 추진 배경

- 고령농 증가, 농업인력의 부족,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 위협
 - 기술의 도입과 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하는 경영혁신 및 농업후계세대 확보에 유리한 농업법인 육성 정책 확대 필요
 - 선진국 농업의 경영규모는 도·농간 소득균형 유지하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등 농업의 규모화에 유리한 법인경영체로의 변화
 - 선진국(일본, 프랑스 등)의 농업경영체 규모화가 추진되면서 전체 농가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규모화된 농가 수는 증가
- * 농업법인으로의 규모화는 농기계 활용도 제고, 농업용 자본조달에 유리

2 주요 내용

- 농업생산 전문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 검토
 - 농업법인의 원활한 영농승계와 종사자에 대한 농업인 지원 혜택 부여
 - 농업생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농업생산법인 인증제(가칭) 도입
- 농업법인의 성장·규모화 촉진을 위한 제도 재설계 방안 검토
 - 농업법인의 농지 임차 및 고령·은퇴농업인 출자 등 허용
 - 농업법인으로 전환시 기 정책금융, 국고보조금 등 승계
 - 일반법인과 비교 분석을 통해 농업법인 제도 재설계
- 농업법인 활성화 기반 강화 검토
 - 농업법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평가 체계 마련
 - 농업법인 실태조사 내실화 등

3 향후 추진계획

- 의제 관련 방향 및 내용 보완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25. 3월)

3 농업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업금융 개선

1 추진 배경

-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스마트농업 확대 등 농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춘 농업 분야 투자 재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업금융의 역할 증대
 - 농업금융은 정부지원과 보조금에 의존적인 구조로 민간투자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금융구조 마련이 미흡
 - 농업금융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법인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로 개혁 필요

2 주요 내용

- 농업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업금융 개선 방안 마련
 - (구조개편) 농신보 독립성 강화를 위해 농협 내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독립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 논의
 - * 농업금융 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사항 정리
 - (지원확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융복합 산업 등 신성장 분야 투자 확대
 - * 청년농업인 보증 한도 상향, 농업 기술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 모델 마련
 - (운영혁신) 단순 용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전환
 - * 보증 연계 투자 모델 활성화, R&D, 창업, 기술개발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 투자 확대, 상담에서 대출·보증까지 원스톱 금융지원체계 구축

3 향후 추진계획

- 농업금융개선방안 워킹그룹 구성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25. 3월~)
 - 분과위원회 논의 및 본회의 안건 보고('25. 9월)

4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관련 중장기 정책방향(계속과제)

1 추진 배경

- 후계·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업인 유입 성과는 충분치 않음
 - 영농정착 및 이탈 요인을 분석하여 청년농육성 정책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고령화 및 농촌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미래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승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 65세 이상 농가인구(비중) : '20)980천(42.3%)→'21)1,037(46.8)→'22)1,078(49.8)→'23)1,099(52.6)
 - * 40세 미만 경영주 가구(비중) : '10)33천(2.8%)→'21)8.5(0.8)→'22)7.0(0.7)→'23)5.4(0.5)

2 주요 내용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지난해 실시한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권역별 간담회(4개권역, 119명 참석) 건의사항* 등을 기반으로 관련정책 종합정리
 - * 청년농업인 사전 준비 강화, 공동 영농 법인화 지원, 지자체 역할 강화 방안 마련 등
-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정책 개선방안 마련
 - 승계농업인 성공정착률 향상을 위한 영농승계 관련 지원 확대
 - * 부모 세대 자산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세금 감면 및 금융지원
 - * 고령 농업인 소유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양도하는 제도 마련 등
 - 기존 농업인의 영농기반과 경영노하우, 인적네트워크 등이 원활히 전수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3 향후 추진계획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 관련 워킹그룹 운영('25. 2월~)
 - 분과위원회 논의 및 본회의 안건 보고('25. 6월)
- 청년농업인의 영농승계 체계 구축 방안 워킹그룹 구성·운영('25. 7월~)
 - 분과위원회 논의 및 본회의 안건 보고('25. 12월)

5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따른 농업현장 연착륙 방안

1 추진 배경

-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24.4.23., 농식품부)
-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농업인 소득 기여 및 재생에너지 생산 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농지보전, 경제성 및 사회적 갈등 등의 리스크 존재
- 농식품부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정책 수립('25년 중)에 앞서 농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필요

2 주요 내용

-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정책 수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 **(비용부담)** 높은 초기 비용, 전력 매입가격 변동성, 농업 생산성 저하 등 수익성 담보 가능성 우려
- **(영농제한)** 농업 생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드론이용 방제 제약** 및 **농업환경과 경관에 부정적 영향**
- **(소득인정)** 영농형 태양광 발전 소득이 농외소득으로 인정됨에 따라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농업인 지원혜택 제외**
- **(이익배분)** 농가는 초기설치 비용, 수확량 감소 및 장기간 사후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반면, **산업계는 적은 비용으로 이익 확보**

- 농업현장 의견 수렴, 심층현장 분석과 전문가 간담회 등 추진
- 농업의 구조개선과 연계된 영농형 태양광의 합리적 도입을 위한 방안 제시

3 향후 추진계획

- 전문가 자문회의 후 TF 구성('25. 3월) 및 검토방향 설정 등 추진계획 수립
- 분과위원회 논의 및 본회의 안건 보고('25. 9월)

1 추진 배경

- 축산물 수입개방, 생산비 급증 및 환경 규제 강화 등 생산 여건 악화로 생산성 혁신을 통한 미래지속성 확보 필요
 - * ('23년 사료비 증가율) 송아지 9.2%, 우유 3.2%, 비육돈 2.8%, 계란 7.4%, 육계 6.0%
 - * (환경규제 강화) 분뇨 정화처리 비중 확대('30년까지 25%), 악취배출시설 기준 강화 등
- 혁신사례*는 수준높은 자본과 기술 등이 요구됨에 따라 일반농가에서 실천이 가능한 기술 제시 등 혁신-일반농가 간 격차 해소 방안 필요
 - * 농어업위에서 '대한민국 축산업 생산성 혁신사례' 7개부문 선정('24.12.)
-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가, 협동조직 등 축산물 생산-가공 체계 구축 지원 필요

2 주요 내용

- 농어업분과 축산TF 회의(9차)를 통한 이행과제 발굴·선정
 - 축산 혁신사례 효율적인 확산과 실천농가 확대 방안
 - 경축순환 확대를 위한 저해 요인 분석 및 정책 지원 방안
 - 선도농가와 일반농가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
 - 축산 농가 사료비 등 경영비 감소 방안 등
 - 소비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축산물 생산-가공 체계 구축 지원 방안
- 축산업 혁신사례의 일반농가 확산을 위한 적정 기술 등 제시
- '대한민국 축산 생산성 혁신사례' 확산을 위한 사례집 작성·배포
 - 현장 벤치마킹 유도를 위한 알기 쉽고 상세한 사례설명 등(축종 중심)

3 향후 추진계획

- 『대한민국 축산 생산성 혁신 사례』 확산을 위한 사례집 발간·배포(3월)
- 축산환경정책 진단·분석을 통한 관련 안건 발굴 및 상정(3월)
- 혁신사례 확산을 위한 이행과제 발굴(축산 TF 9차 회의, 3월) 및 안건 상정(12월)

2. 농어촌분과위원회

1 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공표

① 추진 배경

-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객관적 기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
 -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의 지역별 삶의 질 수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공표
- * 지수는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5대 영역 20개 세부 지표로 구성

② 주요 내용

- 「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공표 및 확산('25년)
 - 농어촌지역 139개 시·군 중 도시형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129개 농어촌 시·군 대상
 - 종합 지수와 영역별 지수를 구분하여 상위 20% 지역 발표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여 농어업위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 우수 지역·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 삶의질 지수 상위 20% 지역 및 지수개선 지역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타 지역으로 확산 유도

③ 향후 추진계획

- '25년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관련 지수관리위원회 운영('25. 1월~)
 - 분과위원회 논의 및 본회의 시 공표('25. 6월)
- 지표 개선 검토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 추진('25. 하반기)

2 농림어업을 기반한 사업 다각화 및 제도 개선 방안

1 추진 배경

- 농산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되면서, 전통적인 농림어업 방식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 발생
 - 농림어업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 필요성 및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영입·입지 등 제도적 제약 존재
 - 농림어업 산업별로 관련 규제·제도·정책 차이로 인해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의 사업 추진 속도 격차 존재
- 농림어업 기반 치유·관광·체험 등 민간 주도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지원 방안 필요

2 주요 내용

- 농림어업 산업별 사업 다각화 현황 파악
 - 치유·체험·관광 등 사업 다각화 개념 도출 및 범위 설정
 - 관련 정책 제도*·예산 및 추진 현황** 등 분석
 - * 치유, 복지 등 법적 제도 및 정부지자체 사업 등, ** 산업별 민간 추진 사업체 현황 등
 - 민간이 사업 다각화 참여 시 발생하는 제도적 제약 사항 검토
- 사업 다각화 촉진을 위한 모델 제시
 - 민간 영역의 현장 사례조사를 통한 사업 다각화 모델 검토
 - 민간 중심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치유산업 등 과의 연계모델 제시
- 민간 주도 운영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마련
 - 사업 다각화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귀농·귀촌 및 기존 농어업인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마련

3 향후 추진계획

- 워킹그룹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25.3월~4월)
- 정책연구용역 추진('25.5월~11월)
- 분과위원회 의제 마련 및 논의('25.12월)

3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협동조직의 역할과 모델 개발

1 추진 배경

- 협동조합은 소규모 경영체들이 협동하여 경영체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인구감소와 농촌소멸 위기에 실효적으로 대응 가능
- 정부·지자체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나, 지역별 여건 및 역량에 따라 모델 개발을 통한 확산 필요

2 주요 내용

- 농어업의 생산·유통과 관련된 협동조직 사례조사 및 분석
 - 국내외 협동조직 모델(협동조합, 들녘경영체, 주민주식회사 등) 사례 조사
 - 농업생산·경제공동체의 생산성 증대효과 등 사업의 편익·비용 비교
- 협동조직의 설립·운영시 필요사항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 협동조직의 설립·운영과 지속 가능성 담보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 분야별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나 연합회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협동조직의 선택적 모델 제시 및 전국적 확산 방안 마련
 - 조직형태·운영체계 등 차별성에 기반한 협동조직의 유형별 모델화
 - 협동조직의 전국적 확산 방안과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 제시

3 향후 추진계획

- 워킹그룹 및 전문가 자문 통한 통한 주요 아젠다 및 추진방향 설정('25년 4월)
- 분과위 의제 마련('25년 9월)

4 농산어촌 디자인 수립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1 추진 배경

- 농어업위는 농산어촌 환경 및 서비스 등의 개선을 통한 지역 활성화 필요에 따라 농산어촌 디자인 개념 및 지자체 도입 방안 의결(제23차 본회의)
 - 농산어촌의 고유경관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산어촌 디자인의 적용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농산어촌 디자인 조성 유도

2 주요 내용

- 농산어촌 디자인 수립 확산을 위한 설명회 및 우수사례 발굴
 - 지자체 공무원, 주민 대상 농산어촌 디자인 설명회 통한 농산어촌 디자인 이해도 제고 및 적용 필요성 공유
 - 농산어촌 지역 대상 우수 디자인* 적용사례 공모 및 선정**
 - * 기본원칙 : 지속가능성, 지역성, 심미성, 자립성, 경제성, 기능성
 - ** 선정방법 :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서류 및 현장심사
 - 우수사례 공유·확산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 사례집 발간하여 지자체 간 교류 및 벤치마킹 촉진
- 농산어촌 디자인 확산을 위한 체계적·제도적 접근방식 마련
 - 주민주도 정책계획 수립 시 농산어촌 디자인 연계 방안* 모색
 - * 예) 경관협정, 주민협정 등에 공간 디자인 가이드로 활용
 -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디자인의 확산·발전을 위한 농산어촌 디자인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방안 모색
 - 경관법, 건축법 등 연계한 가이드라인 수립 확산 방안

3 향후 추진계획

-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 개최('25.3월~4월)
- 공모계획 수립 및 사례 공모 및 추천('25.3월~5월)
- 농산어촌 디자인 연계 방안 관련부처 협의('25.4월~8월)
- 심사 및 선정, 우수 지자체 성과보고회 개최 및 사례집 발간('25.10월~12월)

5 유휴자원을 활용한 어촌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1 추진 배경

- 어촌의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인해 실거주 인구 감소가 지속되며, 어촌 공동체가 해체 위기에 직면
 - 이를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장기간 축적된 현장 문제 해결에 한계 존재
 - *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어항재생사업, 어항개발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방치되고 있는 유휴자원(빈집, 폐어선 등)을 활용해 공동체의 경제성 확보 및 지역 활성화 방안에 기회 제공 가능

2 주요 내용

- 어촌 내 유휴자원 조사 및 활용 가능성 점검·분석
 -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선진 사례 조사
 - 어촌 내 유휴자원 현황 파악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검토(분류체계 마련 등)
- 유휴자원 활용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제시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어촌계 및 지역 주민이 협력하는 자립형 경제 생태계 구축
 - 어촌 공동체 자립을 위한 협동적 경제 모델 발굴
 - 지자체 및 민간 협동의 리빙랩(Living Lab) 추진방안 마련

3 향후 추진계획

- 워킹그룹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25.5월~6월)
- 정책연구용역 추진('25. 7월~'25.11월)
- 분과위원회 의제 마련 및 논의('26.3월)

3. 농수산물식품분과위원회

1 농수산물식품 품질 인증제도 통합 방안

① 추진 배경

- 정부 인증제도의 근거법령과 종류가 많고 복잡하며,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 정부·업계·소비자의 제도 이해에 한계
 - 농어업위는 「농수산물식품 정부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통합 법제의 단계적 도입 및 통합 관리방안 마련을 제안('24.9월)
- 통합 법령안 마련 및 관리조직 신설 필요성 검토 등 추가 연구를 통한 구체적 안건 제안을 통해 관계부처 지원

② 주요 내용

- <가칭> 농수산물식품 국가 인증제도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마련
 - 국내 인증제도 관련 법령 조사·분석을 통해 통합법률 구성체계 마련 및 구성요소별 세부 법률조문 작성
 - 각 인증제도별 존치 여부 검토 및 제도간 통합 검토도 병행
- <가칭> 농수산물식품품질인증원 신설 필요성 검토 등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국내외사례 조사를 통한 필요성 검토 및 인증제도 심의 및 등록 관리, 효과성 평가, 위탁관리(인증)기관 관리 등 소관 업무 정립

③ 향후 추진계획

- 정책연구 수행(농어업위, ~'25.11월)을 통해 통합 법령(안) 마련 및 농수산물식품품질인증원 신설 필요성 검토
- 본 회의 의결안건 제안('25.12월)

2 농수산물 Total Utilization 프로젝트

1 추진 배경

- 국내 식음료 제조업은 약 169조원 규모로 연평균 7% 성장 중(aT, '22년)
 - 다만 농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식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단순 폐기물로 인식, 추가적인 활용에 제한 존재
-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부산물 (재)활용 및 바이오·식품 소재화 지원방안 모색

2 주요 내용

- 농축수산 부산물 발생과정, 부산물 종류, 부산물 처리 업계 등 현황조사
 - * 곡물, 과채류, 수산물, 육류, 유제품 등 유사 식품별로 유형화
-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식품유형별 부산물 재활용, 소재화 방안 제시
 - * (예시1) 수산부산물: 내장(효소), 껍질(콜라겐), 뼈(칼슘) 등 건기식화 및 소재화
 - ** (예시2) 과채부산물: 퇴비 및 사료화, 폐기부분 상품화(청잎김치 - SIAL 혁신상)
-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제 개정 소요 발굴 및 육성 법령 필요성 검토, 부산물 활용 촉진·사업화 방안 도출
 - 전주기 관리방안(부산물 분리배출~재활용~시장화) 마련, 기술개발 지원, 관련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한 인센티브 검토
 - *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식약처 및 식품, 환경분야 전문가 포괄 의견수렴 추진

3 향후 추진계획

- 정책연구 수행(농어업위, ~'25.11월)을 통해 농수산물 부산물 활용방안 및 제도 개선점 도출
- 본 회의 의결안건 제안('25.12월)

4. 특별위원회

1 (수산특위)양식수산물 생산성 혁신사례 선정

① 추진 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폐사율 증가,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양식업 생산량 감소* 추세('19년 이후)로 안정적 수산물 공급 차질 우려
 - * 65만톤('00), 136만톤('10), 167만톤('15), 240만톤('19), 231만톤('20), 227만톤('23)
 - ** '50년 생산량은 '23년 227만톤 대비 17.3% 감소한 188만톤, 생산 금액은 '23년 3.14조원 대비 16.7% 감소한 2.61조원 예상
- 양식업 혁신사례 발굴을 통해 양식업계 기술 확산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 필요

② 주요 내용

- (선정범위) 생산성 향상·품질 개선·환경 친화적 기술·비용 효율화 등의 성과를 거둔 사례(기술, 운영, 협력 모델 등 다양한 혁신 영역)
- (선정기준·과정) 혁신성, 생산성 향상, 지속 가능성, 확장성, 사회적 기여 등 평가 지표개발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 내성품종 개발, 생산비용 절감, 사료개발, 스마트 양식 시설, 시설 투자비용 절감, 친환경양식기술, 기타 신기술 개발, 양식품종 전환, 양식장 재배치 등
 - ** 전문가, 업계, 어업인 대상 간담회 병행
- (확산방안) 매체 활용을 통해 홍보·확산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 (홍보) 혁신사례 발표, 보도자료 배포, 카드뉴스 SNS 게재, 혁신사례집 발간 및 배포 등
 - ** (정책개선) 혁신사례 진단·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단기(비용효율성) 및 장기(투자효과성) 관점의 정책개선 방안 마련

③ 향후 추진계획

- 정책연구 수행(농어업위, ~'25.11월)을 통해 양식수산물 생산성 혁신사례 선정
- 본 회의 의결안건 제안('25.12월)

2 (수산특위)수산업 사업승계 활성화 방안

1 추진 배경

- 지속가능한 어촌생태계 형성을 위해 시행 중('21.3월~)인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 신청 저조 등 계획 대비 사업 부진
 - * '21년 사업 계획: 300명 → '25년 누계 실적: 37명
- 경영이양직불제의 제도적 문제점 검토,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한 청년 어업인의 어촌계 유입 촉진 필요
 - * (문제점) 소득증빙 애로, 어촌계원 자격 이양 기피, 낮은 지원금, 직계이양 불가 등

2 주요 내용

- (제도개선) 경영이양직불제 재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검토)
 - 지급액 상향 : '직전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 인 지급단가를 90%로 상향
 - 지급요건 확대 : 한시적으로 완화된 신청대상 연령(65~74세→65~79세), 계원자격 유지기간(10→5년 이상) 상시 제도화 등
 - * 현행 신청대상 연령(65~79세), 계원자격(5년 이상) 조건은 '26.12.13.까지 한시 적용
 - 지급대상 확대 : 어촌계원 → 어업허가, 양식면허 매매(양도) 등
- (지원방안) 노후 설계 및 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검토)
 - 은퇴 어업인 : 사망시 까지 지급하는 연금 형태의 지급방식으로 변경하고, 고령인 최소 생활비(월 150~200만원) 수준으로 지급액 단계별 상향
 - 유입 청년 어업인 : 어촌 인구 절벽 완화와 연계한 안정적 어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강구
 - * 어촌계 가입비, 창업, 주택 및 주거, 기술 및 교육, 자격증 취득, 고용 등

3 향후 추진계획

- 정책연구 수행(농어업위, '25.4월~'25.6월)을 통해 수산업 사업승계 활성화 방안 마련
- 본회의 의결안건 제안('25.9월)

3 (수산특위)내수면 양식업 농지사용 규제 개선방안

1 추진 배경

- 농지를 양식장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일시 사용 허가기간 만료 시 농지전용 불편 및 원상복구 의무** 등 안정적 양식업 추진 애로

* 「농지법」 제36조,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일시사용기간은 최대 12년(7년 사용+5년 연장)

** 일시사용기간 만료 복구 시 재해 대비(옹벽, 휨스 등) 및 스마트 양식 등 시설 재투자에 어려움 발생

- 축사 및 곤충사육사* 등과 같이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를 활용한 내수면 양식(축제식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농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부지는 '농지'로 정의

** 다만 현재 농림부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 일시사용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전용 대상 제외 또는 일시사용 기간 추가 연장은 곤란하다는 입장

2 주요 내용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업계 애로사항 발굴(복구 비용 등)

* 양식장 일시사용 허가현황 조사 결과, 2030년 이후 전체 내수면 양식장의 25%가 기간 만료로 내수면 양식업 운영에 애로 발생 예상

- 내수면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일반 농지 이용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내수면 양식업의 지속을 통해 양식어업인 경영 안정, 소득 유지 및 사회적 효용 증대

* 농지에서 양식장 등 수산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개정안 심사 중(이병진 의원(24.6.28), 윤준병 의원(8.1), 임호선 의원(8.13) 발의)

3 향후 추진계획

- 이슈페이퍼 작성 및 수산TF(수산분과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본 회의 보고안건 제안(25.9월)

4 (산림특위)산림자원 산업화 기반 산촌경제 혁신 방안

1 추진 배경

- 산촌 인구는 약 135만 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며, 산촌 지역의 91.0%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 * 산촌인구추이(국립산림과학원) : ('20) 142만명 → ('23) 137 → ('24) 136
 - * 산촌 소멸고위험(국립산림과학원) : ('22) 407개(87.3%) → ('23) 415(89.1) → ('23) 424(91.0)
-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산업화하여 임산업 고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일자리 창출로 산촌의 새로운 경제 혁신 방안 창출 필요
 - *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산촌특구특화단지(인구경제 활성화 추진) 도입 등

2 주요 내용

- 산촌진흥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산촌 정의 재검토
 - 현 '산촌' 정의*는 변동성이 있는 인구밀도를 포함하여 산촌 활성화 대상이 변동됨에 따라 정책 추진에 한계
 - * 「산림기본법」시행령 제2조 : 임야율 70% 이상, 경지율 및 인구밀도 전국 읍·면 평균 이하인 읍·면
- 산림자원 산업화 기반 산촌특구 도입 및 규모화를 위한 단지 조성
 - 자원 특성을 고려한 ①임산업, ②산림서비스, ③거주 등 산촌특화지구 지정
 - 거점을 중심으로 '임산업(임산물 생산·가공)-산림서비스-거주' 등을 통합한 산촌특화활력단지 조성
 - 임업 경영의 경제적 규모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 특화 단지별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맞춤형 수요(주거·방문·일자리 등) 발굴·매칭
 - * 초고령화 사회 대응 고령 친화 일자리,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산촌텃밭·위케이션·산촌유학 등

3 향후 추진계획

- 산림특위, 워킹그룹 등을 통한 주요 아젠다 및 추진방향 설정('25.3월)
-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통한 안건 마련 및 보고('25.12월 본회의)

5

(산림특위)국토녹색자원의 통합관리방안

① 추진 배경

- 산림, 도시숲, 공원 등 국토녹색자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자원으로 국민의 여가·복지·건강과 직결됨
 - 분산된 관리체제로 부처 간 협력 부족 및 중복 투자 발생 등 정책 효과성이 부족함에 따라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 필요성 대두
- * (산림청) 산림, 도시숲, 정원, (환경부) 국립공원, (국토부) 도시공원

② 주요 내용

- 녹색자원의 통합적 관리·활용체계 마련
 - 녹색자원 통합관리 방안 마련 및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 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산지통합관리 및 거버넌스 강화
 - 행정주체별 관계법령 검토 및 관리 문제점·성과 진단 등을 통한 거버넌스 강화 방안 마련
- 지역 산림관리 개선을 위한 산림특별지자체 도입 방안 검토
 - 산림특별지자체 모델 연구 및 지역 특화 산림관리 체계 도입
 - 지자체 관심도·재정자립도에 따른 관리 역량·불균형 격차 해소방안 마련

③ 향후 추진계획

- 산림특위, 워킹그룹 등을 통한 주요 아젠다 및 추진방향 설정('25.3월)
- 학술토론회 개최 및 보고('25.上)

6 (산림특위)산림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1 추진 배경

- 성공적 녹화사업으로 축적된 산림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나 기반시설인 임도의 부족으로 산림의 체계적 관리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 어려움
- 임업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해대응을 위해 임도 설치와 관리를 주도하는 전문기관의 설립과 지속적 투자 필요

2 주요 내용

- 기반 인프라 확충과 연계한 산림자원의 산업적 활용 방안 모색
 - 스마트 첨단 임업을 통해 산림산업의 생산성·효율성 제고
 - * IoT, LiDAR 등 스마트 기술 접목으로 임도의 상태, 산림건강, 임산물 유통경로 등을 모니터링
 - * (사례) FPIinnovations(캐나다 임업관련 비영리기업) 자율주행 트럭 이니셔티브: 임업 및 광산 부문을 중심으로 자원도로(resource road)에서 첨단자율주행 트럭기술 사용 가속화 목표
 - 유희산림, 경제림 단지 등에 대한 산림 산업체 접근성 향상으로 산림 산업체의 물류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화 지원
 - 임도 확충을 통한 산림관광 활성화 및 산촌 주민 이동 편의성 증대
- 임도설치·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임도공사 설립 방안 검토
 - 유사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법적·제도적 검토
 - * 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 전담기관으로 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해 재원확보, 기술 혁신, 운영 효율성 제고 등에서 성공적 역할 수행
 - 정부 예산 지원 외에도 기금 조성, 민간투자 유치, 산림자원 활용 수익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

3 향후 추진계획

- 산림특위, 워킹그룹 등을 통한 주요 아젠다 및 추진방향 설정('25.3월)
- 안전 마련 및 보고('26.3월 본회의)

7 (바이오특위) 첨단 바이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1 추진 배경

- 식품산업을 단순 소비재 산업에서 식량안보 강화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첨단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R&D 투자 확대 등 인프라 구축 필요
 - * 네덜란드는 농식품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R&D 투자, 연구소 및 클러스터 육성
- 식품 바이오파운드리(바이오팩), 미생물·단백질연구소 등 농수산식품 첨단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정책방향 및 발전전략 구체화 필요

2 주요 내용

- 식품 바이오파운드리 :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구축 등 정책 방향
 - 핵심기능 : 합성생물학, 세포배양, 미생물 발효 기술
 - 적용분야 : 배양육, 대체단백질, 기능성 식품, 맞춤형 영양식 등
 -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 첨단 연구시설, 생산 공정, 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 실험 및 시제품 생산을 위한 공공 인프라 제공
 - 정책 : 공공·민간 협력기반 식품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R&D 투자 확대 등
 - * 투자방식 : 정부주도 공공 인프라 구축, 민간기업과 공동 투자 모델 벤처캐피탈 및 투자 펀드 조성
- 미생물·단백질 연구소 : 산업화·상용화를 위한 맞춤형 연구소* 설립 전략 마련(특정 연구분야)
 - * 미생물 : 프로바이오틱스, 황산화 성분, 미생물 기반의 신소재(효소, 비타민, 향균 성분)
 - * 단백질 : 식물성 단백질(콩, 완두콩, 밀), 미생물 단백질(미생물 발효 기반 단백질)

3 향후 추진계획

- 정책연구 수행(농어업위, ~'25.9.)을 통해 식품바이오파운드리, 미생물 연구소, 단백질 연구소 발전전략을 본 회의 보고안건 제안('25.12.)

1 추진 배경

- AI, 합성생물학, 스마트팜, 대체단백질 등 식품 산업 혁신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규제 강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 증대
- EU 그린딜, 탄소중립,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대응을 위한 미래 예측 **호라이즌 스캐닝 체계*** 구축방안 필요

* Horizon Scanning : 미래의 가능성 있는 변화, 트렌드, 위험 요소 등을 탐지하고 분석하여 정책 개발이나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기법(정보수집, 트렌드 식별, 분석 및 평가, 예측 및 대응)

2 주요 내용

- **현 시점에서 제기되는 식품 바이오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농수산물식품분야 연계성을 고려, 관련 규제를 선별하고 국내외 규제 동향 비교 분석
 - 스마트팜, 대체단백질, 식품바이오 등 규제 현황, 주요국 규제 동향 분석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 AI 윤리 가이드라인, 탄소배출권, LMO·GMO(유전자편집 기술 포함) 등 주요 규제 이슈 발굴, 규제 개선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분석
 - 주요 규제별 합리적 규제개선 방향성 및 규제 개선 환경 마련을 위한 시사점(샌드박스, 부처간 협력, 바이오리터리시 등) 도출 및 개선 건의
- **미래 지향적 식품바이오 규제혁신 체계로 선진국에서 적용중인 ‘호라이즌 스캐닝’ 도입 방안 검토**
 - EU ESPAS, 영국 DEFRA,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 등 호라이즌 스캐닝 우수 사례 발굴, 각국의 거버넌스 구조 등 운영 방식 비교
 - 농어업위 중심의 호라이즌 스캐닝 운영 방안,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향후 추진계획

- 정책연구 수행(농어업위, ~'25.9.)을 통해 ‘식품 바이오 규제 혁신 대응방안’ 본 회의 의결안건 제안('25.12.)

1 추진 배경

- 바이오파운드리 정책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나(과기부 공공바이오 파운드리 설립, ~'27년) 식품분야 활용가능성에 대한 낮은 관심도
 - * 농축수산식품 바이오파운드리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연구개발 및 정책 지원 한계
- 농수산식품 바이오파운드리 개념 및 범위 정립, 차별화 전략 마련, 활용 가능성 논의를 통해 정책방향 및 발전전략 구체화 필요

2 주요 내용

- (개념 및 범위 확정) 특위에서 논의된 ^{가칭}바이오팩*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 바이오파운드리와의 차별화 전략 마련
 - * 생명공학, 생명정보, 정보통신기술 및 공학과의 기술적 융합을 통해 농축수산 또는 바이오 제조의 모든 과정을 디자인 및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함으로써 다양한 생물학적 솔루션, 구성요소 및 제품을 설계·제작·합성하는 신속순환 생산공정 시스템 또는 인프라
- (연계사업 발굴) AI 및 로봇공학 기반 DBTLP* 서비스 모델, 빅데이터 기반 초거대 AI 서비스, 농수산식품 생물자원 DB 고도화 등
 - * 바이오파운드리에서 사용되는 자동화된 생명공학 연구·개발(R&D) 순환 모델 의미 : 'Design(설계)-Build(구축)-Test(실험)-Learn(학습)' → Produce(생산)
- (활용가능성) 농·어업, 농수산식품 분야 바이오파운드리 설비의 효용성을 구체화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시사점 제시

3 향후 추진계획

- 바이오경제특위 및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농수산식품 바이오파운드리 발전전략을 본 회의 보고안건 제안('25.9.)
 - * 농수산식품 바이오파운드리 관련 바이오경제포럼 개최('25. 하반기)

Ⅲ. 분과위원회 및 전략대화기구 신설

1 수산분과위원회 및 산림분과위원회 신설

① 추진 배경

- 수산단체 및 임업인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농어업위 활동에서의 해당 분야 소외 등을 이야기하며 농어업위 내 분과위원회 신설 요구
- 의견대립이 첨예한 현안 해결과 수산업 및 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분과 신설 검토 필요

②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업위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 외 분야별로 3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
 - * ①농어업분과위원회, ②농어촌분과위원회, ③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 농어업분과는 농업과 어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위원장과 위원 구성*이 농업에 집중되어 어업 관련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
 - * 농어업분과위원회('19년~ 현재): 농업분야 38명(54.1%) vs. 어업분야 6명(9.9%)
 - ** '19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업분과 18개 의결 안건 중 어업은 1개 과제에만 포함
 - 농어업분과에서 임업, 농어촌분과에서 산촌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임업·산촌은 정책대상과 활동공간이 상이하여 별도의 전문가 구성이 필요한 상황
- 수산 및 산림 분야는 특별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특정현안을 논의하는 특위*의 목적에 맞지 않고 한시적 운영(최대 2년)으로 지속성이 결여
 - * ①미래수산, ②미래산림, ③농업세계개선, ④바이오경제특위의 총 4개 특위 운영 중

⇒ 수산 및 산림 현안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활발한 논의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제시를 위해 농어업위 내 수산 및 산림분과위원회 신설 추진

3 개선방향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산·산림분과를 신설하고, 기존 분과위원회 간 업무 조정

기존		변경	비고
-	⇒	수산분과위원회	* 분과 신설
-		산림분과위원회	* 분과 신설
농어업분과위원회		농산업분과위원회	* 어업을 수산분과로 이관하고, 농산업(스마트농업, 과학기술 정책 등) 분야를 신규로 포함
농수산물식품분과위원회		농수산물식품분과위원회	* 변동 없음
농어촌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 변동 없음

* 농림어업(농업, 임업, 어업)은 생산방식, 생산자 등이 완전히 달라 전문가가 구분되어 별도의 대책이 필요

* 다만, 농산어촌(농촌, 산촌, 어촌)은 지리적으로 분리하기 어렵고 농어촌소멸은 지역소멸차원에서 종합적 추진이 필요하여 하나의 분과에서 추진

- 시행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산특위와 산림특위를 한시 운영*

* 기존 미래수산특위와 미래산림특위는 '25.3월 종료예정

4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농식품부·해수부) 협의 진행 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수산·산림분과위원회 신설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

2 전략대화기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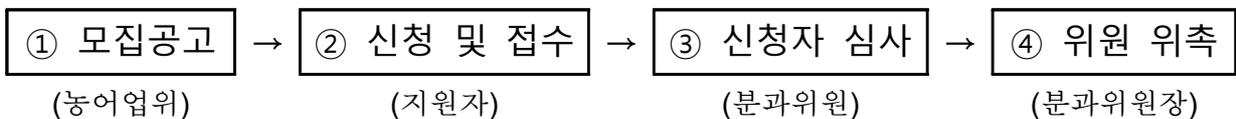
1 추진 배경

-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이 등으로 농어업 분야에 오랜 **갈등 이슈***들은 과도한 사회적 갈등 유발 및 합리적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 * 농어업·농어촌에 장기간 이해관계자 사이에 첨예한 대립 등으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한 과제(쌀 생산 균형과 가격안정, 농지문제, 남시문화발전 등)
- 관계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토론 등 의견수렴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필요**

2 전략대화기구 개요

- (의제선정)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으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분과위·특별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정
- (기구구성) 갈등 이슈별로 각 분과위 및 특별위에서 50명 이내로 구성
 - 의장은 분과위원 및 특별위원 중 갈등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선정
 - 위원은 안전주제에 적합한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정
 - * 전문가(농어업인 단체 임직원, 학계전문가,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와 일반인(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각각 50% 정도로 선정
 - 간사는 분과위·특별위 담당 사무국 팀장
- (위원모집) 전문가는 분과위 및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일반인은 농어업위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

<공개모집 절차>



- 농어업위 홈페이지에 **안전 주제를 공개**하고 지원자(일반국민)는 관심있는 안전에 지원서 제출
- 분과위 및 특별위에서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성별·연령, 활동 가능 여부,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심사위원장을 포함(심사위원장은 분과장 및 특위장으로 지정)
 - **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1인이 1개의 안전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③ 전략대화기구 운영 방식

- (운영방법) 갈등이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운영**
 - * (예시) 사전 인식조사 → 정보제공 및 전문가 강연·질의 응답 등 → 집중토론 → 사후 인식조사 및 결론 도출
- **안건별로 적합한 토론방식(집단별·그룹별 등) 등을 설계**
 - * 전체회의, 소그룹 회의(전문가, 일반국민), 집중토론(1박2일), 온라인 회의 등
- (전문지원)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퍼실리테이터를 활용)**
 - * 전문기관은 **총괄기획팀**에서 계약하여 **선정**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계약된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운영방식 및 추진일정 등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추진
- (운영기간) 2025년 4월 ~ 12월까지(8개월)
 - * 필요한 경우 분과위·특별위에 요청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운영 연장 가능
- (운영결과) 분과위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 후 관계부처에 건의
 - * 분과위별로 **결과가 도출 되는대로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출**

④ 활동지원

- 교육 관련 강사초빙 및 교육자료 제공, 농어업위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지원**

⑤ 향후 계획

- ① 분과위별 갈등이슈 선정(3개) → 제23차 본회의 상정(3월중)
- ② 갈등이슈별 위원 구성(3월말) 및 전략대화기구 발족(4월초)
 - *분과위별 위원(일반국민) 공개모집(3월중)
- ③ 전문위탁기관 선정 추진(3월~)
 - * 제안서 작성(3월중) → 입찰공고(3월중) → 제안평가(3월말) → 업체선정(3월말) → 계약체결(4월초)

담당팀(분과명)	논의주제	선정사유
농어업정책팀 (농어업분과위)	쌀 생산 균형과 가격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생산 균형과 가격안정 정책의 조화를 위한 해법 - (찬성) 가격지지 정책은 시장원리에 반하며, 쌀 과잉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반대) 식량안보 측면에서 접근 필요, 농업인 안정적 소득 보장 및 농촌경제 기반 유지에 필수
	농지 소유와 이용의 합리적 조정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 미래 소유 중심과 이용 중심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해법 - (찬성) 불법임대차, 위장경작 관행 문제 해소 위한 농지 농용 차원 접근 필요, 고령농 증가로 경자유전 원칙 재고 - (반대) 경자유전의 공익적 가치 유지 및 식량안보 차원 농업보호 필요, 대규모 자본 농지 독점 및 투기 우려
농수산식품팀 (수산특위)	낙시문화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시 인구 증가에 따라 남획과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TAC 등 수산자원보호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 (찬성) 낙시면허제(허가제) 도입을 통해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보호, 상업적 어업과의 형평성 확보 - (반대) 국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규제조치, 낙시 산업 위축의 문제

